

연구보고서 2005-08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

《研究陣》

연구위원 : 최응렬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	4
제2장 지역경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제1절 지역경찰제의 개념	5
제2절 지역경찰제의 운영취지	6
제3절 지역경찰제의 운영체계	19
제3장 외국의 지역경찰제	23
제1절 영국	23
제2절 미국	25
제3절 일본	27
제4절 독일	29
제4장 지역경찰제에 관한 조사 결과 분석	30
제1절 조사설계 및 방법	30
제2절 경찰관 대상 조사 결과 분석	40
제3절 지역주민 대상 조사 결과 분석	110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134

제5장 결 론 -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제언	139
제1절 효율적인 인력배치	139
제2절 순찰지구대의 적정 배치 및 치안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141
제3절 시설 및 장비확충	143
제4절 다양한 순찰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적극적인 시행	144
제5절 지역경찰제를 통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148
제6절 지역경찰제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152
참 고 문 헌	15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혁신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혁신 작업의 하나로 2003년 8월 1일¹⁾부터 전국적으로 기존의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재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경찰제는 인구, 면적,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4개 파출소를 통합하여 순찰지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방법능력의 개선 및 순찰효과의 증진, 인력·재정·시설 및 장비 등 방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기동성 있고 집단적인 범죄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제도이다. 그리고 기존의 파출소에는 민원담당관이라는 봉사전담 경찰관을 배치시켜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안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866개 순찰지구대, 1,865개 치안센터, 214개 특수파출소가 있으며, 근무인원은 39,790명이다(경찰위원회, 2005: 99).

지역경찰제의 전면 실시에 앞서 2003년 6월부터 일부 경찰서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공무집행방해가 크게 감소하였고, 강력범죄를 조기에 진압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보였다.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이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안팎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http://www.npa.go.kr/2003>. 8.

1) 지역경찰제의 운영기간과 관련하여 '지역경찰 운영체계 혁신 시범운영 세부계획'에서는 지역경찰제의 운영기간을 2003년 6월 1일부터 본청 지시기간까지로 하고 있고(대구 달서 경찰서, 2003: 5), 2003년 8월 1일부터는 예비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다(경찰청, 2003: 6). 이와는 달리 지역경찰제의 근거규정인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 관한규칙(2003년 9월 17일 경찰청훈령 제409호)' 부칙 제1조에는 2003년 10월 15일부터 지역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찰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경찰법의 관련 조문(경찰법 제17조 제3항에는 "경찰서장 소속 하에 지서 또는 파출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도 개정하지 않은 채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크나큰 법적 흠결로 볼 수도 있다.

10). 이러한 설문조사의 긍정적인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범죄예방활동 강화로 주요 4대범죄가 순찰지구대 시행 전 1년에 498,649건이 발생하였으나 시행 후 1년에 457,437건이 발생하여 8.3% 감소하였고, 공무집행방해사범도 시행 전 1년에 6,329건 발생하였으나 시행 후 1년에 5,943건이 발생하여 6.1%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경찰위원회, 2005: 99).

하지만 경찰관 대상의 긍정적인 설문조사결과와는 달리 지역경찰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범운영기간동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번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전국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찰제 시행 후 그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의 불편사항들을 경찰관이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경찰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정착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경찰제는 강력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범죄예방활동이나 지역주민과의 접촉기회 부족 등의 단점도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경찰제의 정착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경찰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한다. 우선 지역경찰제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근거로써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지역경찰제의 시행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지역경찰제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찰관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찰제의 시행 배경, 지역경찰제의 운영취지,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업무만족도, 순찰지구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 범죠풂신고 및 사건처리 효과에 대한 만족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지역경찰제의 적합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경찰관 및 지역주민의 설문조사결과를 지역경찰제의 이론적 배경과 결부시켜 지역경찰제의 보완 및 정착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역경찰제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찰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순찰지구대²⁾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과 감독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지역경찰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논의된 연구는 극소수이며,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논문 또한 적다. 기존 논문에서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³⁾를 실시하였고, 그 설문문항에 지역주민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 경찰관대상 설문문항에 포함되어 있어 설문조사방법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서울(2개 순찰지구대), 부산, 대구(2개 순찰지구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전국에서 경찰관서의 등급을 고려하여 순찰지구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강원의 연구(2004: 118-180)에서는 2003년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실무자, 경찰서 방법과 계장 및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순찰지구대 사무소장과 지역경찰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선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순찰지구대의 사정을 순찰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 비해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순찰지구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순찰지구대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석청호의 연구(2003: 93-122)에서도 일반시민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경찰관에게 시민의 의견을 묻고 있다. 조사대상 선정의 문제는 곧 조사결과를 잘못 이끌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일반시민을 조사하는 것은 경찰관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인력, 시간,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지역경찰제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설문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10.0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설문문항의 응답에 대해 적절한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을 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방법과 교차분석(Crosstab)을 사용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응답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사용하였다.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

기존 파출소의 운영실태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많이 제시되었다(노호래, 2000; 박병식·주희중, 1997; 이상안 외, 1995; 이상원·최응렬, 1996; 임준태, 2002; 최응렬, 2000).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경찰제의 추진방향이나 세부지침사항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지역경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도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경찰제에 대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경찰제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일천하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해 보는 것은 지역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순찰지구대에 관한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경찰제의 정착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단순히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비율(%)의 차이로 인지도를 살펴보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있어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설문문항에 응한 대상자들만이 느끼는 인지도이므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큰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산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전체 국민들의 인지도의 차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지역경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역경찰제의 개념

범죄예방활동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파출소는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예방이라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파출소가 그동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기존의 파출소제도에서는 배치상의 문제, 인근파출소의 지원 부족, 각종 조사 및 행정업무수행으로 인한 본래 방범기능이 약화되는 등 외근경찰관 근무여건상의 문제, 순찰자원 및 장비부족, 파출소 중심의 소모적 경력운용 등의 문제점이 속출되어 국민의 안전욕구와 치안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쳤다. 이와 같은 파출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것이다.

실제 기존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각종 봉사활동, 지역의 안전활동 등 폭넓은 파출소 경찰활동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등장한 것이 지역경찰제라 할 수 있다(석청호, 2003: 95). 또한 순찰팀에서는 기동성을 살려 범죄예방순찰과 현장신고출동에 전념하고, 치안센터에서는 지역성에 무게를 두어 협력치안활동과 대민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지역경찰제로 정의하고 있다(조강원, 2004: 121). 그러나 지역경찰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에서는 “지역경찰관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관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찰제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경찰제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인구·면적, 범죄율 등 치안수요,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순찰지구대를

편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파출소 3~4개를 통합하여 관할범위를 넓혀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는 기본형(도시형), 농촌형, 특수형 등 3가지 형태가 있다.⁴⁾

기본 편제를 살펴보면,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아래 순찰지구대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한 지구대에 약 50~60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의 지구대장 아래 3명의 사무소장을 두며, 순찰요원, 관리요원, 민원담당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순찰반을 편성하여 도시지역 경찰활동을 전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지역경찰제는 독일의 ‘지구경찰서제도’와 상당히 흡사하다. 독일의 경우 하나의 경찰서 내에 파출소 조직을 가진 다수의 지구경찰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 파출소에서는 순찰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일반 민원업무만 처리하며 순찰 등 방법활동은 지구경찰서가 별도로 운영하는 순찰반이 담당한다. 즉 독일의 지구경찰서는 우리나라의 순찰지구대에 해당하고, 파출소는 일반 민원업무만 처리하고 있다(석청호, 2003: 101-102; 김정근, 2003: 19). 경찰청 관계자들도 제도개혁을 연구하는 단계에서 독일식을 많이 참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제2절 지역경찰제의 운영취지

1. 기존 파출소제도의 문제점

기존의 파출소는 경찰서 관할구역의 일부분을 담당하여 소속 경찰관이 담당구역의 범죄예방활동 및 경찰관업무 전반에 걸친 초기적 범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외근경찰관의 기본적인 활동단위이며, 우리나라 외근경찰관의 최일선 조직이었다(경찰대학, 2000: 66-67). 그러나 민생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파출소가 아래와 같은 문제로 제 기능을 제

4) 농촌형과 특수형의 경우 농촌지역 2, 3급지 경찰서와 기존의 특수파출소를 대상으로 구성되는 순찰지구대로 특수형의 경우 종전 파출소와 큰 차이가 없으며, 농촌형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지구대장을, 파출소장이 지구대사무소장을 겸직하고 있다(조강원, 2004: 125-126).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안으로 지역경찰제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배치상의 문제

우리나라의 파출소는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인구가 분산되어 경찰서의 설치가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인구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파출소마다 지역별 면적과 관할인구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파출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파출소는 관할구역이 치안수요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설정되어 있어 파출소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이상안 외, 1995: 66). 이러한 환경에서 파출소는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었으며, 그 효과 또한 적게 나타났다.

2) 외근경찰관 근무여건상의 문제

기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여러 가지 근무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근무여건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인근지역 파출소와의 지원 및 협조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파출소와 파출소간 경계지역에 대해 관할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인접파출소간 공조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상원, 2001: 193).

둘째, 파출소는 지역치안의 거점, 민경협력 치안체제의 구심점, 대민접촉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업무, 최일선 치안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파출소에서 복잡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해 방법 및 대민친절의 봉사업무수행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부가적인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만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연의 순찰활동에 전념하지 못하였고 파출소의 방범 능력은 약화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경찰관에 대한 신뢰는 낮으며, 경찰관이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진재구, 2002: 229-230; 이상안 외, 1995: 66). 따라서 우리나라의 파출소는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하나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셋째, 3교대 근무제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존의 파출소제도가 1일 6~7인 근무를 하였는데 휴가나 교육 등으로 실질적으로 5~6인 근무가 대부분이고, 치안수요가 적은 파출소는 4~5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인원에서 소내 근무 및 대기, 112순찰근무를 제외하면 1명이 파출소 관내를 순찰하게 되어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3교대 근무제로 인해 업무 연속성 부족, 지나친 야간근무로 인한 경찰관의 건강과 사기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이상원, 2001: 194).

3) 순찰자원 및 장비상의 문제

기존의 파출소는 인력과 장비 등 순찰자원을 효율적·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순찰 및 장비보급의 결정은 경찰의 수에 의존하였으며, 범죄발생율과 치안수요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외적으로는 생활권의 광역화·국제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고, 내적으로는 첨단기술을 응용한 전자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도 경찰장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범죄의 양상은 흉포화·지능화·광역화·기동화 추세에 있어 경찰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한데도 장비의 노후로 성능이 떨어지고 낙후되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출소는 순찰활동에 전념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간의 기능적 연계가 미흡하였다(이상안 외, 1995: 66).

2.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

지역경찰제는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토록 현장대응역량과 봉사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따뜻하고 든든한 지역경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찰제는 광역화·초스피드화·집단화·홍포화되고 있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현장대응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찰제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등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개편하였다.

둘째, 지역경찰제는 기존의 파출소가 치안수요와 상관없이 행정구역별 동 단위 위주로 배치·운영됨에 따른 경찰력의 과도한 분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3개의 파출소를 1개의 순찰지구대로 운영하여 소내 근무 및 대기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순찰 및 방범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지고, 근무시간도 적정화됨으로써 경찰관도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셋째, 치안수요 및 지역실정을 고루 반영하여 순찰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유동인구와 범죄율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순찰지구대의 순찰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파출소제도에서는 일제단속이나 검거 등에 있어 지역경찰관의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지역경찰제로 인해 각종 문서처리와 보고 등 행정업무부담에서 탈피하여 순찰활동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석청호, 2003: 104).

넷째, 지역경찰제는 외근경찰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외근경찰관의 높은 근무강도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특별휴무제 실시 등 적정한 휴게를 보장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적의 지역경찰관 운영시스템을 개발·보완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추어 중·장기 과제로 주당 40시간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부단히 여론을 수렴하고 주기적(1년 단위)으로

분석·평가·환류 순으로 종합하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지역경찰관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찰제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oriented policing),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찰활동(community-based policing),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Liou & Savage, 1996: 164).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또한 다양하다. Goldstein(1990: 26-27)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과 관련되는 것이며, 경찰은 스스로를 지역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또한 이것은 경찰과 주민이 자주 접촉하여 함께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경찰활동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내의 범죄문제와 무질서 등을 해결하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으로 불려지고 있다. Leighton(1991: 489-497)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에 평화, 질서, 친절, 지역사회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공공의 안전 등의 요소를 포함시켜 그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법무부에서 운영하는 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연구·교육협회인 지역사회 경찰활동 컨소시엄(The Community Policing Consortium)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경찰과 지역의 공동노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노호래, 2001: 147).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과 지역의 협력 및 참여를 조장시키고, 지역주민의 협력 또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찰체제를 핵심요소로 하는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첫째,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경찰활동으로서 구체적인 전술이나 기법이 아닌 일종의 경찰철학이며,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의 효과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Yates & Pillal, 1996: 193). 둘째, 지역사회의 범죄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예방과 치유책을 찾아내는 적극적이며 지방분권적인 접근법으로서 범죄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 그 원인을 측정하고, 해결책을 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찰의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Radelet & Carter, 1994: 60; Trojanowicz & Cater, 1988: 17).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범죄와 범죄두려움, 지역사회 무질서 등의 문제를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해결하여 경찰활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향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지는 새로운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선 경찰관의 분권화, 지역주민과의 친절한 상호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경찰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특 징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의 측면에서 경찰-지역사회 관계개선활동, 도보순찰의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이로 인해 경찰은 범죄대처보다는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경찰의 협력자로서 지역주민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지역사회 문제에 책임을 갖는 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게 되었다(Walker, 1992: 179; 최인섭, 1994: 88-89).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기본적인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목표는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가, 지역사회내 범죄문제의 재조명을 위한 기술적 발전 등이며, 원칙은 지역사회의 재건설,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신뢰 및 협조라 할 수 있다(Peak, Bradshaw & Glensor, 1992: 25-40).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요 특징으로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범죄통제전략의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감 증진, 범죄예방기술의 확대, 지역사회 개념의 재확

인, 지역주민의 준경찰로서의 역할수행 등이 있다(Champion & Rush, 1997: 3). 그리고 그 핵심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이 경찰의 정책에 상호작용하고 협조적인 관계로 지역의 무질서와 범죄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Liou & Savage, 1996: 165). 대표적으로 국가이웃도보순찰센터(National Neighborhood Foot Patrol Center)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Trojanowicz, Kappeler, Gaines & Bucqueroux, 1998: xi - x iii).

-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범죄 및 범죄두려움,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 등의 문제를 경찰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철학이며 전략이다.
-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모든 경찰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 ③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과 지역사회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지역사회 담당 경찰관(CPO : Community Policing Officer)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해진 담당구역의 주민과 매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해야 한다.
- ④ 지역사회 담당경찰관(CPO)은 지역주민과 함께 범죄문제, 범죄두려움, 무질서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 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경찰은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촉매역할을 하며, 지역주민 또한 공공질서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 ⑥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수동적인 사후 범죄대응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전 범죄 예방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범죄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⑦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피해에 취약한 청소년, 노인, 극빈자 등을 보호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⑧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기술 및 장비의 혁신을 병행한다.
- ⑨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의 내부적 결합에 기초한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지원, 내부의 원활한 의사교환 등을 통하여 지역의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⑩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분권화·개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위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전통적인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의 정의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	범죄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고용된 사람
경찰활동의 주체	경 찰	경찰과 지역주민 :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에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의 파트너로써 지역주민을 참여시킴.
지역주민의 참여형태	수동적·소극적인 참여	능동적·자발적인 참여
경찰의 역할 및 업무	· 범죄문제해결 · 주로 사건을 목표로 업무 수행	· 범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역문제 해결 · 대민서비스 업무
업무의 우선순위	범죄, 폭력 퇴치	지역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 해결
능률성 측정	수사율, 체포율, 범죄발생율	범죄와 지역의 무질서 제거 정도
효과성 결정요인	대응시간	지역주민과의 협조관계
경찰책임성	경직되고 집권화된 구조	분권화된 구조
기타 공공부서와의 관계	우선 순위로 인한 갈등관계	다른 부서와의 협력관계

※ 자료 : 이황우, 1996: 106; 이상원, 1997: 416-417; Miller & Hess, 1998: 18.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

(1) 경찰활동의 변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의 업무실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도 경찰관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경찰의 업무실행개선,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접촉 시 관계향상,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Liou & Savage, 1996: 163-179).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경찰활동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활동형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 순찰체제의 개편⁵⁾, 경찰의 책임성 강화⁶⁾, 명령체계의 분권화⁷⁾ 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전제조건으로 중간관리층으로의 분권화된 명령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며, 과거 소수의 고위직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던 중앙집권적인 명령체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경찰은 지역사회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며,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만이 경찰의 유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온 경찰의 의식에도 변화가

5) 범죄의 효율적인 진압을 목표로 운영되던 C³제도와 같은 기존의 순찰활동이 경찰관과 지역주민간의 심도 있는 접촉을 통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차량순찰보다는 지역주민과 친밀하게 접촉하여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경찰관의 존재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도보순찰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로 C³제도란 범죄의 광역화·신속화·강력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시간(response time)을 단축시킨 대범죄대응체제를 지칭한다. C³I는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Intelligence의 약어이다. C³제도의 기본요소는 무전기를 갖춘 기동력, 양질의 통신시스템, 컴퓨터화 된 지령시스템, 112신고접수에서 현장도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확인과 관리 등 4가지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지휘, 통제, 통신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다(박길환, 1990: 58).

6) 경찰활동이 법집행 위주에서 지역사회 지향적 활동으로 전환된다면 개개 경찰의 이해가 증진되고,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불만과 비판이 감소되어 경찰의 부정적인 직업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7) 각각의 경찰관이 근무하는 지역사회는 서로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할 우선 순위도 서로 다르므로 경찰활동도 이에 알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일어날 것이다. 즉 경찰은 지역사회 문제점의 내부를 깊숙하게 관찰하여 내재되어 있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범죄 및 범죄두려움 감소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지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율이나 발생률이 낮아지는 등 범죄감소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자 지역주민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시행지역의 범죄율이 다른 근접 지역보다 줄었다고 인식하여 각 가정을 안전하게 하는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이를 더욱 장려하였다(Garofalo & McLeod, 1989: 329).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의 범죄를 감소시키고, 이웃감시 프로그램이란 집단적 과정에 의해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osenbaum, 1987: 103-106; 이성식, 2000: 148-150).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지역사회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수준이 향상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최인섭, 1994: 106). 이와 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범죄예방효과

오늘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 차원의 범죄기회 차단과 환경개선의 노력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요전략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된 효과로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의 강화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주민간에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이 강화되면서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Garofalo & McLeod, 1989: 334; Ganapathy, 2000: 281)이 우세하다.

서울시내 경찰서 근무 경찰관 300명과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범죄감시활동의 범죄예방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지원 하에 주민끼리 감시체제를 구성하여

개별 회원 등 상호간에 보살펴주고, 동네를 감시하며 수상한 자나 방범취약점 발견 시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역주민(79%)과 경찰관(81%)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용관, 2000: 1237-1238).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는 특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주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Shapland & Nuttall, 1993: 164-165; 守山正, 1993: 107).

(4)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오늘날 경찰업무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살아나게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증가하는 범죄현상에 대처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친밀함이나 결속력에 영향을 받아 지역주민과 친근한 관계에서 문제 해결의 중재인으로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지역주민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철학적인 치안활동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Torres & Vogel, 2001: 40-55). 따라서 오늘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의 범죄통제 및 예방,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써 존재하고 있다(Yates & Pillal, 1996: 193). 그리고 이는 경찰의 범죄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친밀한 관계유지 및 긴밀한 협력관계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Trojanowicz & Bucqueroux, 1998: 184; Friedmann, 1992: 11-39; 이황우, 1996: 100-106). 즉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Garofalo & McLeod, 1989: 335; 진수명, 1995: 27; 이건종·전영실, 1994: 43-44; Kessler, 1999: 333-334).

특히 지역주민의 경찰관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범죄통제 및 예방프로그램의 시행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찰관의 능률적인 업무활동과 경찰활동에의 주민참여를 지적하여(Webb & Marshall, 1995: 45-66),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를 위해 유사한 전략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범죄 및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찰은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주사회에서 주민을 그들의 협동자로 발전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Gramckow & Jacoby, 1993: 36).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등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과 지역주민의 일대일 대면접촉과 만남 등을 장려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경찰과의 접촉으로 인해 지역주민은 경찰에 대해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서 생겨난 것이므로 우리에게 유익한 경찰활동이며 여러 면에서 성공적일 것이다(Yates & Pillal, 1996: 193).

미국의 미시간주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서 경찰을 지역사회에 결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도보순찰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도보순찰 후, 그 지역의 주민은 도보순찰을 통해 경찰관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함을 느끼게 되었다.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도보순찰시 관할지역 내의 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순찰지역에 익숙해질수록 그들도 범죄로부터 안전함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Trojanowicz & Bucqueroux, 1998: 214-224).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범죄 및 범죄두려움의 감소효과와 더불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혁신적인 효과라 할 수 있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에 주목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즉각적으로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긍정적인 효과, 특히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등의 효과를 보여준 국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orres와 Vogel(2001: 40-55)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의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경찰에 대한 태도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시행 전과는 달리 시행 후 경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Liou와

Savage(1996: 176-177)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지하기 위해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역시,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감소,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개선 등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긍정적인 발견은 앞으로 경찰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특히 경찰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Kessler(1999: 333-338)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 중 하나인 경찰관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보다 경찰에 대한 불평이 적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 경험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시행지역과 시행되지 않는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불평의 정도를 비교하여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정도를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시행 후 경찰에 대한 불평의 정도는 상당히 감소되었으며, 지역주민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해 더욱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시행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오히려 경찰에 대한 불평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같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가치 있는 도구이며, 훌륭한 통로(channel)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태도를 이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Garofalo & Mcleod, 1989: 341-342).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식 강화,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책임감 강화,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및 범죄두려움 감소, 지역의 무질서 감소, 이웃간의 결속력 강화, 거주지역에 대한 주민의 애착심 강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Rosenbaum, 1987: 110).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찰활동의 추세이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강조하면서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 것이 지역경찰제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근본취지로 하여 시행된 지역경찰제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탈피한 적극

적인 경찰활동으로의 변화, 지역 내 범죄문제 및 범죄두려움의 감소, 지역 내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 등의 효과를 위한 사전 예방적 범죄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 기관의 규모, 지역사회의 특징, 그리고 경찰부서의 유형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경찰부서의 형태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에 적절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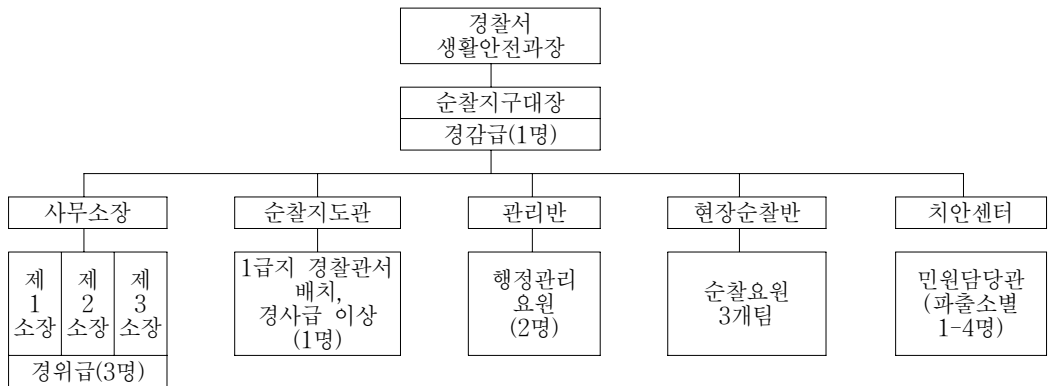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경찰제는 사후대응적인 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과거의 경찰활동과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제도라는 본래 취지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3절 지역경찰제의 운영체제

2003년 10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순찰지구대의 조직편성, 근무자의 선발 및 주요업무를 살펴보고, 기존의 파출소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조직편성

관할구역을 인구, 면적, 치안수요,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4개 파출소를 묶어 1개 순찰지구대(PD: Patrol Division)로 편성하며, 조직편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역경찰제의 편성 및 근무자

2. 근무자 선발 및 업무

순찰지구대장은 경감급으로 배치하며, 지구대를 총괄 지휘·감독,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순찰지구대 사무소장(Patrol Chief)은 순찰지구대장 아래 3개소에 각 1명씩 선발하여 제1·2·3소장으로 임명한다. 주요업무로는 권역 내 각종 사건·사고발생시 현장지휘 및 조치, 해당근무시간대 권역 내 근무상황 감독, 담당구역(파출소)에 지역경찰활동 및 협력활동(자율방범대 순회관리),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자의 근무지정 등이 있다. 그리고 사무소장별 담당업무는 제1소장은 경무, 장비, 통신 기타 제2·3소장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2소장은 방법, 수사, 형사업무, 제3소장은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업무 등이다.

순찰지도관(Assistant Chief)은 각 지구대 사무소별 1명씩 배치한다. 순찰지도관은 사무소장 차하위 계급자(경위 또는 경사급)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순찰지도관은 사무소장을 보좌하여 관리요원, 순찰요원, 파출소 민원담당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권역내 지구대 근무장소를 수시로 지도 방문하여 업무지도를 하며 기획, 행정 등 관리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반장직을 겸직한다.⁸⁾

관리요원은 각 지구대 사무소별 2명을 배치하되 장기근속 경사급을 우선 선발하여 배치하며 여경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경리업무 유경험자 및 행정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배치한다. 순찰팀별 1명을 관리보조요원으로 지정하여 팀별 서무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관리요원은 권역별 범죄분석 및 대책수립 등 기획, 관서운영경비 관련업무 전담, 지구대 행정업무 일체 및 등서, 기타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주간시간대 지구대 상황근무를 수행한다.

순찰요원(Patrol Officer)으로는 현재의 파출소 요원 중 소장, 순찰지도관, 관리요원, 민원담당관을 제외한 인원을 甲, 乙, 丙부(인원을 1/3씩 분할)별로 혼합·편성하고, 순찰 1, 2, 3팀으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순찰요원의 업무로는 우선 2인 1조, 2~3시간 단위로

8) 지역경찰계의 구성은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10조(구성)에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순찰지도관은 2003년 하반기에 순찰지구대 현장 인력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전면 중단하였고,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14조에 그 근거만 남겨두고 있다.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한다. 순찰활동 이외에도 취약지 거점근무 및 파출소 거점근무, 상황근무, 사건·사고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순찰활동은 112기동순찰, 도보순찰, 오토바이 순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12기동순찰 시 순찰차는 지구대 소속 각 파출소 구역별 1-2대 배치되어 있으며, 구역 내 범죄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교차 순찰한다. 취약시간대에는 집중·교차순찰 및 순찰차 1-2대 합동순찰 실시 등 가시적 방법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둘째, 도보순찰은 사건·사고 다발 등 취약지를 3-5개 선정하여 취약시간대 집중 배치한다. 셋째, 오토바이 순찰은 승용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 등 주택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한다. 교통혼잡 시간대 및 교통체증으로 112순찰차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오토바이 순찰을 적극 활용한다.

치안센터의 민원담당관은 장기근속 경사(경장)급 중 경찰업무 전반에 능통하고 민원응대에 친절한 자를 각 파출소별 2명씩 우선 배치한다. 이 곳에서는 경찰민원 접수 및 처리, 대민 봉사활동 전개, 타 기관 협조 및 협력방법활동 등 지역경찰활동, 소재수사 및 우범자 관찰업무, 공기총 등 개인소지 총기류 점검, 치안모니터링 활동, 치안센터 청사 환경정비 및 자율방범대 관리, 기타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한다.

3. 근무방법

순찰지구대 근무자들의 근무방법은 A형[주·야 교대제(주간 09:00-19:00, 야간 19:00-09:00)], B형[주간(9:00-19:00) 1개조로 고정, 야간 당·비번 교대제], C형[변형 3교대제(당·비·일, 당·비·휴 순환)]으로 나뉜다. 지방경찰청별로 A, B, C형을 고루 운영하되, 도시권 경찰서는 A형 또는 B형, 농촌형 경찰서는 B형 또는 C형을 실시한다. C형의 경우 일근일근무는 시차 출·퇴근, 치안수요 밀집시간대 경력집중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4. 기존 파출소제도와 지역경찰제 운영체계의 비교

파출소제도와 지역경찰제의 운영체계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파출소제도와 지역경찰제의 운영체계

	파출소제도	지역경찰제
관할범위	소규모	2~3개의 파출소 통합
방법단위	파출소	순찰지구대(기존 파출소 → 치안센터)
근무방법	3교대제 근무 : 12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체제	3교대제 근무 - 주·야 교대제 (주간 9:00-19:00, 야간 19:00-9:00) - 주간(9:00-19:00) 1개조로 고정 야간 당·비번 교대제 - 변형 3교대제 (당·비·일, 당·비·휴 순환)
순찰유형	도보 > 차량	도보 < 차량
자원활용(신축성/효율성)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순찰책임	개인구역 책임	광역공동 책임, 개인구역 책임
지역중심의 전략적 순찰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지역주민과의 접촉	상대적으로 많음	상대적으로 적음
지역사회 경찰활동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 자료 : 최응렬, 2004: 74.

제3장 외국의 지역경찰제

제1절 영국

오늘날 영국의 경찰체제는 민간화와 전문화 정도가 높고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봉사기능을 중시하는 자치경찰제로 운영(현재 북아일랜드는 국가경찰임)되고 있다.⁹⁾ 따라서 영국식 경찰제도의 이념은 주민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그 지역의 치안정책이 결정되고 그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거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하여 최종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경찰업무 및 경찰기관간의 협조를 요하는 업무 등에 관해서는 내무부로부터 직접 조정·통제를 받고 있다.

영국의 자치경찰은 방범·교통·경비·수사 등 모든 경찰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들의 임무로는 범질서 유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범죄예방, 범죄자의 추적 및 검거, 피의자의 기소 여부 결정, 교통통제 및 지방정부에 대한 교통관련 조언, 국민에 대한 긴급구조 등이 확립되어 있다.

특히 영국 경찰의 일반적인 임무로 간주되는 순찰활동에 있어서 도보순찰은 지난 1970년대 초 차량순찰을 선호하면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던 것이 최근에 다시 부활되었다. 런던수도경찰(London Metropolitan Police)은 경찰인력의 5%를 '지역사회경찰'로서 '가정순찰'(home beats)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상세한 근무지식을 갖추고, 범죄예방과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경찰간의

9) 영국에서는 1835년에 「지방자치단체법(Municipal Corporation Act)」에 의해 공안위원회(Watch Committee)가 조직되었으며, 이 공안위원회제도를 계기로 영국의 지방경찰도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 후 중앙정부는 1856년 「군 및 자치시 경찰법(County and Borough Police Act)」을 제정하여 국고보조를 조건으로 지방경찰의 창설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런던자치정부수립안이 런던시민 투표에서 65% 지지를 얻음으로써 2000년 7월 기점으로 수도경찰관청마저 자치경찰관으로 전환되었다(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4: 140).

밀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요구되고 있다(최선우, 2001: 72-73).

영국의 자치시로서 리버풀(Liverpool) 경찰기구를 예로 들어 그들의 순찰활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리버풀시경의 순찰과는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리버풀시를 7개의 경찰구(police division)로 분할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순찰의무를 수행한다. 순찰과에는 7개의 경찰구 분소(Division Officer)와 기동대(Task Force)¹⁰로 편성되어 있는데 각 경찰구 분소에는 다시 도보순찰대, 펜다카(panda car)순찰대, 지구CID¹¹가 있다. 순찰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자기의 순찰구역에서 거주함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CID 요원은 본부 수사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수사와 범인체포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기동대는 범인체포에 있어 경찰구역에 구애받지 않음을 특색으로 하며, 그 외에도 수시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정진환, 2001: 85).

영국경찰의 운용제도에서는 무엇보다 경찰서비스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제도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주민 경찰자문단(Police and Community Consultative Groups)을 들 수 있다. 각 지방경찰위원회에서 지방경찰청장과의 합의하에 각 경찰관서 단위별로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주민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주민 경찰자문단을 설치, 운영토록 법으로 정하였다. 이 경찰자문단은 각 지역주민대표, 지역의회의원, 지역방법위원회위원, 주민유치장방문단, 교사, 종교인, 청년회 및 노인회 대표들로 이루어진다.

둘째, 특별자원경찰(Special Constabulary)을 두고 있다.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할애하여 경찰과 함께 지역 내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각 지방경찰청장이 임명하여 소정의 훈련을 마치고 제복을 착용하고 부여받은 임무 내에서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순찰, 혼잡경비지원, 대 주민 방범의식고양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

10) 기동대는 범죄를 추적하고 돌발사고나 집단범죄에 대처한다.

11) CID(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는 흔히 수사과로 불리워지며, 형사계, 정보계, 특별계의 3개로 편성되어 있다. 형사계에서는 기록·일반범죄·타 경찰구와의 수사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계에서는 공안에 관한 정보, 정치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특별계는 수사본부로서 범죄에 관련된 모든 특수업무를 총괄한다. 특별계의 업무 중에서 특기할 것은 경찰의 기소업무이다. 기소업무는 오늘날 경찰수요의 증가로, 경찰로서는 과중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영국경찰의 전통적인 고유 업무이다. 즉 대다수의 기소는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정진환, 2001: 83).

고 교통비 등 소정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셋째, 마을방범경찰(Neighbourhood Watch 또는 Home Watch)이 있다. 영국 내무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기구로 이웃간의 공동체의식(community spirit)을 고취시켜 이웃간 범죄의 대상이 될 요소를 극소화시키고 지역 내 경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제도이다. 1997년 3월부터 현재 까지 활동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전사회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넷째, 경찰민원고충처리위원회(Police Complaints Authority, PCA)는 공공재정의 후원으로 조직되어 경찰행정에 대한 불평사항을 처리해 준다. 어떤 경찰관에 대한 불평이 기록되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경찰관을 임명하여 계속 조사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심각한 주민의 고충사항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검찰청이 피의자인 경찰관의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주기도 한다. 경찰관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경찰관을 징계처분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2절 미 국

미국의 경찰은 크게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누어지나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지역경찰운영에 관한 획일적인 기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도시경찰(metropolitan police)의 일반적인 조직구조를 보면 수사부서, 운영부서, 행정지원부서로 되어 있고, 이 중 운영부서(operation bureau) 하의 순찰지구대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긴급신고시의 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석청호, 2003: 100).

미국의 경찰행정조직 중에서 순찰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조직은 지방경찰(municipal and local police)이다.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일반적으로 경찰국의 한 부서인 순찰부(patrol division, patrol bureau)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순찰부에서 근무하는 순찰경찰관은 교통,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순찰기능에만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순찰체제는 경찰서 중심의 광역순찰활동인 점에서 파출소를 기본 단위로 하

여 비교적 작은 구역을 순찰하는 우리나라의 순찰활동체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차량순찰을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보순찰은 대도시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상가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차량순찰은 1명이나 2명의 경찰관이 탑승하여 순찰활동을 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1명의 경찰관이 순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는 인건비를 절감하여 더 많은 지역을 순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시민이나 순찰경찰관에게 안정감을 심어주지는 못하고 주민들과의 유대형성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60년대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 경찰은 도보순찰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범인 체포 등의 전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임에 참석하여 지역사회문제와 수요파악, 시민들의 범죄두려움 감소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경찰기관에서 CPOP(Community Policing Officer Program)라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각 경찰서에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1명의 경사(sergeant)와 10명의 CPO(Community Policing Officer)를 두고, 각각의 CPO는 16-60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순찰구역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경찰활동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양문승, 2001: 332). CPO들은 관할구역의 치안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가정이나 상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법상 필요한 상황을 조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였다. 또한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등을 조직하고 반사회나 각종 지역모임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범죄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상급자들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시적 순찰과는 성질이 다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담경찰관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방법체제 중 하나로 포트랜드(Portland)시의 지구경찰관(District Officer: DO)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및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관계 발전, 사건이나 범죄에 대한 문제해결, 시민과 경찰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책임, 시민과 경찰에 대한 서비스에 관해 고객지향의 우선 등의 목

표 하에서 개혁된 조직으로 지구경찰관이 있다. 이들의 역할은 일정한 순찰지구의 순찰과 서비스 요청전화에 대응하는 임무로 하며, 지역사회와의 제휴에 의한 문제해결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정진환, 2001: 160-161).

따라서 과거 미국 경찰의 역할이 주로 상급기관이나 상부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법을 피동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자의 역할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주민을 위한 조언자, 조정자, 촉진자 그리고 문제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정진환, 2001: 157).

제3절 일 본

일본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자치경찰인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자치경찰인 도도부현 경찰은 당해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경찰행정을 수행하고, 지방재정법상 국고에서 지원해오는 일정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비를 해당 도도부현에서 자급하는 자치경찰이다. 단, 도쿄(東京)경시청은 자치경찰이면서도 국가경찰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무엇보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찰부서는 가장 소규모 경찰조직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범죄수사를 제외한 모든 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즉 고소·고발사건의 접수, 서비스요청에 대한 대응, 정보제공 및 자문·조언, 도보 및 자전거순찰,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조직화, 대민접촉의 지향 등을 주요 임무로 행하고 있다(최선우, 2001: 32).

지역경찰의 조직은 경찰청에 지역과, 각 관구경찰국(管區警察局)에 생활안전과, 각 도도부현 경찰에 지역과가 있고, 각 경찰서에도 지역과가 있다(석청호, 2003: 102). 경찰서 또는 경찰본부에는 자동차 순찰대를 두고 전체 순찰차를 통합하여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순찰활동은 주로 2인 순찰제이고 경찰서를 출발하여 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심야시간에는 3시간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 지역과에는 우리나라의 파출소보다 소규모 형태의 고방(交番) 및 주재소가 설치되어 있다. 고방(交番)은 지역경찰의 강화를 위해 일본에서 지역경찰활동의 핵을 이루는 파출소 제도이다. 이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역주민에게 방법지도·순회연락·안전교육·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의 일선 경찰관은 서구의 긴급 대응을 위한 기동순찰보다는 도보순찰,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순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¹²⁾ 이렇게 시민에게 보이고 알리는 순찰을 강조하여 주간에는 시민에게 ‘보이는 순찰’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순찰카드를 이용하여 ‘알리는 순찰’을 하고 있다.¹³⁾ 그리고 고방(交番)은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치안수요에 따라 경찰관이 3교대로 근무하며, 주민의 접촉점으로서 범죄신고, 경찰관 지원요청, 방법심방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적인 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고방(交番)별로 작성되는 근무기준에 따라서 통상 1시간 단위로 입번(立番)¹⁴⁾·견장(見張)¹⁵⁾·순라(巡邏)¹⁶⁾·순회연락(巡廻連絡)¹⁷⁾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주재소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이 부속되어 순사 단독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서의 하부기구이다. 이와 같이 고방(交番)과 주재소는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치안상황 파악, 범죄예방 및 지역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범죄신고 접수 및 급박한 도움 요청에의 반응, 고민상담, 피해자 조연 등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12) ‘지역경찰운영규칙’에서는 종래의 외근경찰관운영규칙과 마찬가지로 도보순찰과 자전거순찰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순찰도 함께 하는데, 자동차 순찰은 종래부터 면적과 지형과 같이 관할구역의 정황이나 치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왔었다. 최근에 개정된 지역경찰운영규칙에서는 순찰용 무선 자동차에 의한 순찰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찰은 넓은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고방(交番)에서의 보완적 대처일 뿐이며, 오히려 종래보다 더욱 도보순찰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순찰차를 특정한 장소에 주차시킨 후, 그 일대를 도보로 순찰하는 방식을 도입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정진환, 2001: 221).

13) 이러한 순찰은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에게 안도감을 줄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접촉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14) 입번(立番)이란 입초(立哨)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고방(交番) 건물 밖의 적당한 위치에서 주위를 경계하는 업무로서, 4부제 근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계력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어진 것이다. 입번 근무를 통하여 범죄의 예방·검거, 교통 지도단속, 소년 지도, 주취자 및 미아의 보호 수배 등의 활동을 한다.

15) 견장(見張)이란 파수(把守)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16) 순라(巡邏)는 우리나라의 순찰에 해당한다. 순라를 통해서 고방(交番)에 근무하는 외근경찰관이 관내를 순시하게 함으로서, 범죄의 예방·검거, 교통 지도단속, 시민 보호·조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7) 순회연락(巡廻連絡)은 우리나라의 방법심방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일본경찰은 고방(交番)이 변화된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1992년 4월 1일 종전의 '외근경찰관'의 명칭을 '지역경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어 6월 1일 '지역경찰관 쇄신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지역경찰관이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외근경찰관체제를 대폭적으로 개혁하였다.

일본의 지역경찰제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2~3개의 고방(交番)을 통합하여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블록내의 근무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상호보완적인 근무시간의 책정, 합동순찰 등을 통해 블록내의 치안수요에 따라 일체적·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블록운영체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한 사건 혹은 특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복수의 고방(交番) 등의 근무자를 1개소에 모아 운영하는 집중 운영체제가 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경찰제는 치안수요의 발생상황에 따라 인원 및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시에 주민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이상안 외, 1995: 85-86).

독일의 경찰조직은 각 주마다 다른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의 기본적인 조직편제는 내무부 직속의 상급관청조직·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경찰서·파출소 순의 피라미드식으로 편성되어 있다(임준태, 2002: 160).

지구경찰서(Polizeirevier: PR)는 우리나라의 경찰서와 파출소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경찰조직이다. 지구경찰서 순찰과(Steifendienst)에서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전담 수행하며, 경찰서마다 2~6개소 정도로 설치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 경찰서의 경우 5개소의 지구경찰서 및 읍·면·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별(Gemeinde) 33개소의 파출소(Polizeiposten)가, 에스링엔(Esslingen) 경찰서에는 6개소의 지구경찰서 및 38개소의 파출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파출소는 지구경찰서 소속이다. 독일의 파출소 규모는 한국식으로 보면 대부분 10명 전후의 경찰관이 근무하는 미니파출소급에 해당한다.

지구경찰서 순찰과는 24시간 순찰근무를, 파출소에서는 월-금요일까지만 주간근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지구경찰서 순찰과 업무스타일은 과거 우리나라 경찰에서 시범 운영

하였던 ‘경찰서 집중순찰제’ 당시의 ‘순찰계’ 기능과 유사한 면이 있다. 지구경찰서의 경찰관은 일반예방경찰(치안경찰, Schutzpolizei)에 속한다(임준태, 2002: 134-135).

경찰서에서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되는 부서는 교통외근순찰, 교통사고조사반, 상황실, 형사당직반(KDD), 지구경찰서 순찰과 등이다. 교통외근 순찰부서와 지구경찰서 순찰과의 근무방식은 5교대제이며, 나머지 부서들은 4교대제이다.

제4장 지역경찰제에 관한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조사설계 및 방법

지역경찰제 시행 후 효과적인 치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효과성과 국민의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해 경찰관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경찰제의 현장대응력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사항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살펴보고, 경찰관이 인지하고 있는 지역경찰제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얻고자 하였다.

1. 조사설계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존 파출소제도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경찰제에 관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설계는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경찰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성 연 학 직 근 무 경 역 사 명 별 령 력 급 역 할 감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 지역경찰제가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의 여부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만족도 112신고 출동 개선 업무에 대한 만족도 근무형태에 대한 만족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 치안센터에 대한 만족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정도 지역경찰제의 적합성 지역경찰제의 개선사항

<지역주민>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성 연 직 학 월 수 별 령 업 력 입	지역경찰제 및 치안센터에 대한 인지 지역의 치안여건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정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정도 지역경찰제의 적합성 지역경찰제의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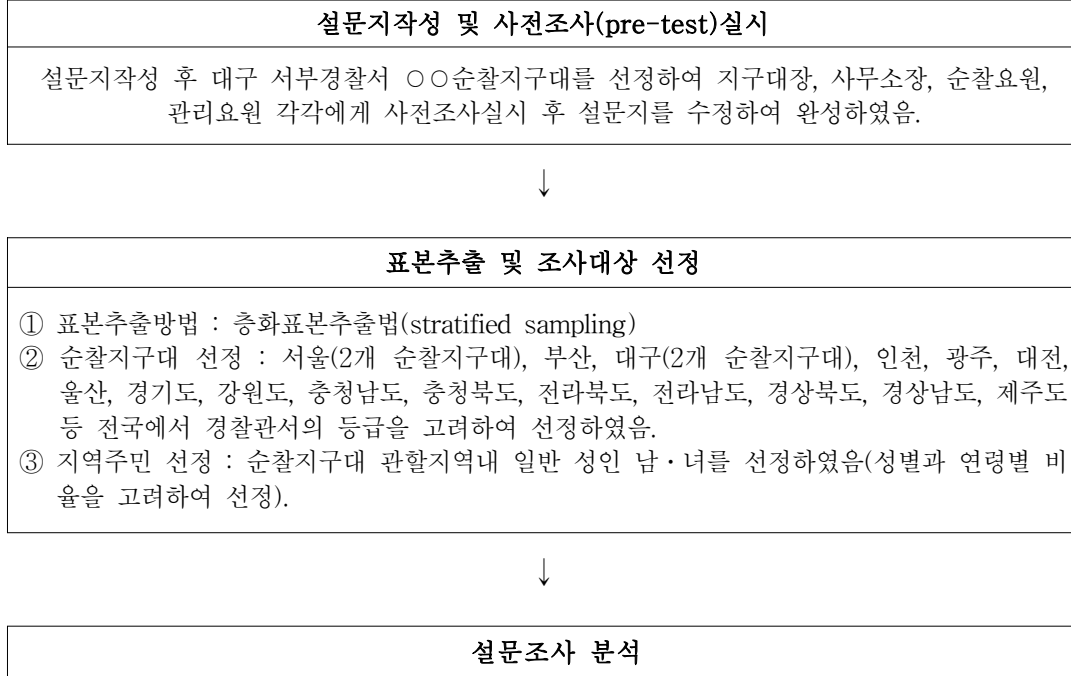
<그림 2> 조사설계

2. 조사방법 및 변수측정

지금까지 지역경찰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소수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찰관이나 경찰학교 교육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논문에서도 지역을 협소하게 한정해 두었고, 설문대상자 수 또한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4년 경찰청에서 실시한 ‘지역경찰제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는 전국 13개 지방경찰청 관할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조사에 비해 규모가 커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 또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의 비율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비율을 비교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한 인식의 차이 등을 비교하였다면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지역경찰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문들과는 달리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에서 16개 순찰지구대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관과 지역주민을 설문조사하였다. 지역경찰제가 경찰 내부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은 이에 대한 인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경찰관의 치안에 대한 고객이면서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지역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정우열·이정훈, 2004: 164). 그러므로 지역경찰제에 대한 인지 및 그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율의 차이를 보고 인식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응답한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여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므로 전 국민들의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들의 분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 조사방법



<그림 3> 연구과정

먼저 조사대상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총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순찰지구대와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했을 때,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므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¹⁸⁾을 추출하여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표본추출방법으로 확률표본추출 중 층화표본추출법(stratified

18) 표본이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선정된 모집단의 부분집단으로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연구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표본은 모집단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본이며, 연구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요소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동등해야 할 것이다.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 소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단순무작위 표본추출¹⁹⁾을 하였다. 확률표본추출방법은 연구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무작위적 표본추출과 표본분석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무작위 추출된 순찰지구대 경찰관 511명과 그 순찰지구대 관할 지역주민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지역주민은 전문직, 사무직, 공무원, 자영업(서비스직), 농어민, 생산직, 주부, 학생, 기타 공무원 등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직업별로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는 순찰지구대에 대한 평가가 직업마다 다를 수 있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지역경찰제로의 개편에 대해 가장 불만을 느끼는지를 파악하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그들의 인식과 견해를 경찰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치안유지활동의 주역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의견을 중시할 필요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4년 7월 23일부터 동년 8월 27까지 약 36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관할 순찰지구대 경찰관의 협조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표 3> 조사대상 순찰지구대

지역	설문대상 순찰지구대	지역	설문대상 순찰지구대
1 서울	서초경찰서 ○○지구대	10 경기	과천경찰서 ○○지구대
2 서울	성북경찰서 ○○지구대	11 강원	횡성경찰서 ○○지구대
3 부산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12 충남	논산경찰서 ○○○지구대
4 대구	서부경찰서 ○○지구대	13 충북	청주 동부경찰서 ○○지구대
5 대구	남부경찰서 ○○지구대	14 전북	익산경찰서 ○○지구대
6 인천	남동경찰서 ○○지구대	15 전남	순천경찰서 ○○지구대
7 광주	광산경찰서 ○○지구대	16 경북	김천경찰서 ○○지구대
8 대전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17 경남	남해경찰서 ○○지구대
9 울산	동부경찰서 ○○지구대	18 제주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19)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알려져 있고 그 확률이 동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초보적인 조사이며, 난수표 등을 이용한다. 이것만으로 설문대상을 추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변수측정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역경찰제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 지역경찰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의 여부,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만족도, 112신고 출동의 개선여부, 업무에 관한 만족도, 근무형태에 대한 만족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 경찰의 서비스 정도, 치안센터에 대한 만족도,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정도, 지역경찰제의 적합성, 지역경찰제의 개선사항 등 12개 변수로 측정하였다. 즉 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지역경찰제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변수측정을 위한 질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둘째, 지역경찰제가 운영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측정함에 있어 인력소진문제의 해결, 경찰력 분산문제의 해결, 범죄예방활동, 특히 순찰활동의 강화, 문서처리와 보고 등 행정업무수행의 감소, 국민의 신뢰도 향상 등 다섯 가지의 운영취지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위의 질문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다섯 문항으로 응답하는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셋째, 지역경찰제 시행 후 관할지역내의 범죄예방효과와 112신고 출동의 개선여부를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넷째, 지역경찰제 시행 후 근무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전반적인 업무관련요인의 만족도, 업무상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과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전반적인 업무관련요인의 개선여부를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개선부분과 문제점은 여러 가지를 제시하여 복수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역경찰제 시행 후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전반적인 근무교대에 대한 만족도, 바람직한 근무교대방식,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

도, 바람직한 근무교대시간 등을 질문하였다.

여섯째, 지역경찰제 시행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만족도, 앞으로 확충되어야 할 시설, 전반적인 장비에 대한 만족도, 앞으로 확충되어야 할 장비, 파출소를 통합한 후 사용되지 않는 파출소와 방범초소의 시설관리 상황, 방치되고 있는 파출소 건물의 활용도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일곱째,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경찰관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지역주민이 만족하는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치안서비스가 친절하게 시행되는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다섯 문항으로 응답하는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여덟째, 순찰지구대에 소속된 치안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치안센터의 존속여부, 치안센터의 심야시간 폐쇄에 관한 의견, 치안센터의 근무인원으로 적정 인원, 치안센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홉째,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를 측정함에 있어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대민접촉의 기회, 지역주민이 경찰기관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열째, 지역경찰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측정함에 있어 전반적인 지역경찰제의 효과, 기존 파출소제도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의견, 지역경찰제의 개선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또 다른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역할, 사명감을 질문하였다. 성별은 남자경찰인지, 여자경찰인지를 통해,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등 다섯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대재), 대학원졸(대학원 재학) 등 다섯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직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으로 나누었으며, 근무경력은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등 네 항목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은 지구대장, 사무소장, 민원담당관, 순찰요원, 행정관리요원,

생활안전과장, 경찰서장 등 일곱 항목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경찰관의 사명감은 “매우 낮다”, “대체로 낮다”, “보통이다”, “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의 다섯 문항으로 응답하는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변수들의 측정을 위한 경찰관 대상 설문지의 구성 개요는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 구성 개요(경찰관 대상)

변 수		문 항 번 호	문 항 수	척 도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		1.	1	서열척도
지역경찰제가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의 여부		2. (1), (2), (3), (4), (5)	5	5점 척도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만족도		2. (6)	1	5점 척도
112신고 출동의 개선		2. (7)	1	5점 척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		3. (1), (2), (3)	3	5점 척도 다중응답
근무형태에 대한 만족도		4. (1), (2), (3), (4)	4	5점 척도 명목척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	시설만족도	5. (1), (1)-1	2	5점 척도 명목척도
	장비만족도	5. (2), (2)-1	2	5점 척도 명목척도
	기존 파출소건물 활용도	5. (3), (4)	2	명목척도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		6. (1) (2)	2	5점 척도
치안센터에 대한 만족도		7. (1), (2), (3), (4)	4	5점 척도 명목척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정도		8. (1), (2), (3)	3	5점 척도
지역경찰제의 적합성 및 개선사항		9 (1), (2), (3)	3	5점 척도 명목척도 개 방 형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10. (1)	1	명목척도
	연령	10. (2)	1	명목척도
	학력	10. (3)	1	명목척도
	직급	10. (4)	1	명목척도
	근무경력	10. (5)	1	명목척도
	역할	10. (6)	1	명목척도
	사명감	10. (7)	1	5점 척도

다음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찰제²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에 대한 인지, 지역경찰제 시행 후 지역의 치안여건 변화,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정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정도, 지역경찰제의 적합성 및 개선사항 등 7개 변수로 측정하였다. 즉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지역경찰제에 대한 인식 및 그 평가가 어떠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변수측정을 위한 질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찰제 및 치안센터의 인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내 순찰지구대 위치를 알고 있는지, 기존의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변경된 것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지역경찰제 시행 후 지역의 치안여건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인 지역의 치안여건이 어떠한지, 경찰관의 순찰활동을 얼마나 자주 목격하는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셋째, 지역경찰제 시행 후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112신고 출동이 개선되었는지, 범죄사건·사고발생시 현장도착시간이 감소되었는지를 질문하였고,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넷째,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경찰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경찰의 친절도를 질문하였고,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섯째, 지역경찰제 시행 후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고,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여섯째,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경찰과의 접촉기회,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각종 경찰활동에의 참여여부,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경찰의 이미지 등을 질문문항으로 하였고, 리커트식

20) 각 지역의 순찰지구대 사무실 앞에는 '○○지구대'라는 용어가 적혀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순찰지구대'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변수명에서는 '지역경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지역주민 대상 설문지에서는 좀 더 익숙한 '순찰지구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곱째, 현재 시행되는 지역경찰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 다른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을 질문하였다.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통해,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여섯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직업은 전문직, 사무직, 공무원, 자영업, 농어민, 생산직, 주부, 학생, 기타 등 9가지 나누어 질문하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대제), 대학원졸(대학원제) 등 다섯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 100만원~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만원 이상 등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변수들의 측정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지의 구성 개요는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지 구성 개요(지역주민 대상)

변 수		문항번호	문항수	척 도
지역경찰제 및 치안센터에 대한 인지		1. (1), (2), (3)	3	서열척도 명목척도
지역의 치안여건에 대한 인식		2. (1), (2), (3)	3	5점 척도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		3. (1), (2)	2	5점 척도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		4. (1), (2)	2	5점 척도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정도		5.	1	5점 척도
경찰과 지역주민의 관계 정도		6. (1), (2), (3)	3	5점 척도
지역경찰제의 적합성		7.	1	5점 척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8. (1)	1	명목척도
	연령	8. (2)	1	명목척도
	직업	8. (3)	1	명목척도
	학력	8. (4)	1	명목척도
	월수입	8. (5)	1	명목척도

제2절 경찰관 대상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결과의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²¹⁾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497명(97.3%), 여자는 14명(2.7%)으로 남자가 월등히 많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242명(47.4%)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40대는 166명(32.5%), 50대 이상은 75명(14.7%), 20대는 28명(5.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 225명(44.0%)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졸(대재)은 179명(35.0%), 전문대졸은 101명(19.8%), 대학원졸(대학원 재학)은 6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경장이 186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사는 160명(31.3%), 순경은 110명(21.5%), 경위는 32명(6.3%), 경감은 14명(2.7%), 경정은 5명(1.0%), 총경은 4명(0.8%)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15년 미만은 155명(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은 동일하게 134명(26.2%), 5년 미만은 63명(12.3%), 20년 이상은 13명(2.5%) 순으로 나타났다.

21) 분석결과를 제시함에 앞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학력, 직급, 근무경력, 역할, 사망감의 분포가 앞의 전체 응답자에서 나타난 빈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학력에서는 대학원졸(대학원 재학)의 분포가 낮아 대졸(대재)과 합쳐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경정, 총경의 분포가 낮아 이를 경감 이상으로 하여 합쳤다. 근무경력에서는 20년 이상의 분포가 낮아 15년 이상과 합쳐서 분석하였다. 역할에서는 분포가 너무 낮아 지구대장과 사무소장을 합쳤고,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을 합쳐 분석하였다. 지구대장과 사무소장은 순찰지구대의 지휘·감독권한이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은 일선이 아닌 경찰서에서 순찰지구대를 지휘하는 입장이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각각 합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력, 직급, 근무경력, 역할 등의 특성이 상이하여 이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따라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것끼리 합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 목	범 주	빈 도	퍼센트(%)
성 별	남자	497	97.3
	여자	14	2.7
연 령	20대	28	5.5
	30대	242	47.4
	40대	166	32.5
	50대 이상	75	14.7
학 력	고졸	225	44.0
	전문대졸	101	19.8
	대졸(대재)	179	35.0
	대학원졸(대학원재학)	6	1.2
직 급	순경	110	21.5
	경장	186	36.4
	경사	160	31.3
	경위	32	6.3
	경감	14	2.7
	경정	5	1.0
	총경	4	0.8
근무경력	5년 미만	63	12.3
	5년 이상~10년 미만	134	26.2
	10년 이상~15년 미만	155	30.3
	15년 이상~20년 미만	134	26.2
	20년 이상	13	2.5
	무응답	12	2.3
역 할	지구대장	13	2.5
	사무소장	33	6.5
	민원담당관	33	6.5
	순찰요원	398	77.9
	행정관리요원	24	4.7
	경찰서장	4	0.8
	생활안전과장	6	1.2
사명감	매우 낮다	15	2.9
	대체로 낮다	34	6.7
	보통이다	176	34.4
	대체로 높다	227	44.4
	매우 높다	58	11.4
	무응답	1	0.2
	합 계	511	100.0

역할별로 살펴보면, 순찰요원이 398명(7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무소장과 민원담당관이 33명(6.5%)으로 동일하였고, 행정관리요원은 24명(4.7%), 지구대장은 13명(2.5%), 생활안전과장은 6명(1.2%), 경찰서장은 4명(0.8%)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높다”는 응답이 227명(4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는 176명(34.4%), “매우 높다”는 58명(11.4%), “대체로 낮다”는 34명(6.7%), “매우 낮다”는 15명(2.9%) 순으로 나타났다.

2.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

경찰관이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여부

	전혀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무응답	합 계
빈 도	12	279	214	6	511
비율(%)	2.3	54.6	41.9	1.2	100.0

경찰관이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41.9%, ‘전혀 모른다’는 2.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행배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원(2004: 136-13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8.80%의 경찰관이 지역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면접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관이 많았다. 이와 같은 조강원의 연구결과는 지역경찰제의 시행 초기에 이루어진 면접조사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지역경찰제 시행배경의 인지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다.

<표 8>에서는 경찰관의 연령, 직급, 근무경력, 역할, 사명감의 p-value를 살펴보면 각각 0.002, 0.001, 0.039, 0.000, 0.001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 직급, 근무경력, 역할, 사명감에 따라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네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정²²⁾을 한 결과, 연령에서는 50대 이상이 20-30대에 비해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을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경위 이상의 간부급 경찰관이 순경, 경장, 경사 등 비간부급 경찰관보다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서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찰관이 5년 미만이나 5-10년 정도의 근무경력자보다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을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경찰관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일수록 경찰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역할에서는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이 다른 경찰관에 비해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경찰제도 하에서 지시나 명령이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사명감에 따른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를 살펴보면, 사명감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찰관은 사명감이 낮거나 보통인 사람들보다 시행배경을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명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므로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해서 더욱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둘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ANOVA를 실시한 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사후검정(Post Hoc test)을 실시한다. 사후검정은 여러 집단 중 어느 집단의 조합이 이질성을 띠는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사후검정방법은 Duncan이다.

<표 8>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	p-value
성 별	남자	492	2.41	.54	2.816	.094
	여자	13	2.15	.55		
	합계	505	2.40	.54		
연 령	20대	26	2.31	.47	4.982	.002
	30대	239	2.33	.53		
	40대	166	2.44	.53		
	50대 이상	74	2.58	.55		
	합계	505	2.40	.54		
학 력	고졸	223	2.41	.54	1.268	.282
	전문대졸	101	2.33	.53		
	대졸 이상	181	2.43	.53		
	합계	505	2.40	.54		
직 급	순경	107	2.30	.48	5.004	.001
	경장	184	2.36	.56		
	경사	159	2.42	.53		
	경위	32	2.66	.48		
	경감 이상	23	2.70	.47		
	합계	505	2.40	.54		
근무경력	5년 미만	61	2.36	.48	2.815	.039
	5년~10년	132	2.30	.54		
	10년~15년	154	2.40	.54		
	15년 이상	146	2.49	.54		
	합계	493	2.39	.54		
역 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6	2.63	.49	7.040	.000
	민원담당관	33	2.61	.50		
	순찰요원	393	2.34	.53		
	행정관리요원	23	2.43	.59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2.90	.32		
	합계	505	2.40	.54		
사명감	낮다	49	2.27	.60	5.393	.001
	보통이다	172	2.31	.52		
	대체로 높다	225	2.46	.53		
	매우 높다	58	2.55	.50		
	합계	504	2.40	.54		

3. 지역경찰제가 본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경찰관은 지역경찰제가 본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지역경찰제가 본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인력소진문제의 해결	빈도	44	85	160	193	24	5	511
	비율(%)	8.6	16.6	31.3	37.8	4.7	1.0	100.0
경찰력분산문제의 해결	빈도	38	104	165	178	20	6	511
	비율(%)	7.4	20.4	32.3	34.8	3.9	1.2	100.0
예방순찰활동의 강화	빈도	82	140	163	106	16	4	511
	비율(%)	16.0	27.4	31.9	20.7	3.1	0.8	100.0
행정업무과중의 해결	빈도	51	121	171	143	21	4	511
	비율(%)	10.0	23.7	33.5	28.0	4.1	0.8	100.0
국민의 신뢰도 개선	빈도	53	115	207	120	12	4	511
	비율(%)	10.4	22.5	40.5	23.5	2.3	0.8	100.0

경찰관이 지역경찰제가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인력소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력 분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4.8%, ‘예방순찰활동을 개선하려는 의도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31.9%, ‘행정업무무수행에 대한 과중함을 해결하려는 의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33.5%, ‘국민신뢰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의 질문에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40.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찰제가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나, 두드러지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역경찰제의 운영취지를 살리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우열·이정훈(2004: 167)의 연구에서는 지역경찰제의 제도운영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전반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방범대와의 연대가 과거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강원(2004: 135-136)의 연구결과에서는 “현재 지역경찰제가 의도한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결과와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경찰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정착화되는데 있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지역경찰제가 본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역할, 사명감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34, 0.024, 0.004, 0.017, 0.023, 0.033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성별을 제외한 여섯 가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본래 의도대로 지역경찰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인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여섯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연령에서는 20대가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찰관에 비해 지역경찰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직급에서는 경감이상의 간부급 경찰관이, 근무경력에서는 5년 미만, 5-10년, 10-15년인 경찰관이, 그리고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등이 지역경찰제가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사명감이 높다고 느끼는 경찰관이 사명감이 낮은 경찰관에 비해 지역경찰제가 의도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지역경찰제가 본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	p-value
성 별	남자	494	2.92	.84	1.407	.236
	여자	13	3.20	.59		
	합계	507	2.93	.83		
연 령	20대	26	3.26	.58	2.906	.034
	30대	241	2.99	.80		
	40대	166	2.82	.87		
	50대 이상	74	2.87	.89		
	합계	507	2.93	.83		
학 력	고졸	224	2.85	.86	3.744	.024
	전문대졸	101	2.87	.86		
	대졸 이상	182	3.06	.77		
	합계	507	2.93	.83		
직 급	순경	108	2.99	.77	3.838	.004
	경장	184	2.96	.81		
	경사	160	2.81	.89		
	경위	32	2.76	.81		
	경감 이상	23	3.47	.63		
	합계	507	2.93	.83		
근무경력	5년 미만	61	3.08	.76	3.413	.017
	5년~10년	133	2.97	.74		
	10년~15년	155	2.99	.84		
	15년 이상	146	2.75	.92		
	합계	495	2.93	.84		
역 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6	2.94	.82	2.863	.023
	민원담당관	33	3.02	1.02		
	순찰요원	395	2.92	.82		
	행정관리요원	23	2.64	.75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3.68	.47		
	합계	507	2.93	.83		
사명감	낮다	49	2.61	.89	2.946	.033
	보통이다	174	2.93	.77		
	대체로 높다	225	2.97	.82		
	매우 높다	58	3.03	.96		
	합계	506	2.93	.83		

4.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경찰관은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만족여부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별 차이가 없다	대체로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무응답	합 계
빈도	25	62	228	164	27	5	511
비율(%)	4.9	12.1	44.6	32.1	5.3	1.0	100

경찰관은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32.1%로 나타났다.

조강원(2004: 135)의 연구결과에서는 “기존 파출소제도와 비교해서 범죄대응, 대민활동 등 종합적 경찰외근활동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9.67%의 응답자가 대체로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여 종합적 경찰외근활동은 파출소체제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 스스로의 평가만으로 시민의 의견을 도출한 것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석청호(2003: 112)의 연구에서도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근무경력, 역할, 사명감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22, 0.046, 0.019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근무경력, 역할, 사명감에 따라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지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 별	남자	493	3.21	.91	.287	.592
	여자	13	3.08	.49		
	합계	506	3.21	.90		
연 령	20대	26	3.27	.67	1.184	.315
	30대	241	3.28	.86		
	40대	165	3.13	.97		
	50대 이상	74	3.12	.96		
	합계	506	3.21	.90		
학 력	고졸	223	3.16	.94	1.025	.360
	전문대졸	101	3.18	.96		
	대졸 이상	182	3.29	.82		
	합계	506	3.21	.90		
직 급	순경	108	3.22	.80	2.084	.082
	경장	183	3.26	.92		
	경사	160	3.13	.95		
	경위	32	3.00	.95		
	경감이상	23	3.61	.66		
	합계	506	3.21	.90		
근무경력	5년 미만	61	3.18	.70	3.225	.022
	5년~10년	133	3.32	.76		
	10년~15년	154	3.29	.97		
	15년 이상	146	3.02	1.01		
	합계	494	3.20	.91		
역 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6	3.15	.92	2.442	.046
	민원담당관	33	3.06	1.17		
	순찰요원	394	3.24	.88		
	행정관리요원	23	2.78	.8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3.70	.48		
	합계	506	3.21	.90		
사명감	낮다	49	3.06	1.07	3.340	.019
	보통이다	173	3.10	.89		
	대체로 높다	225	3.26	.87		
	매우 높다	58	3.48	.86		
	합계	505	3.21	.90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세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5년-10년, 10년-15년 근무경력을 가진 경찰관이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보다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역할에서는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이, 그리고 사명감이 높은 경찰관일수록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5. 112신고 출동의 개선에 대한 인식

경찰관은 112신고 출동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112신고 출동의 개선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빈도	26	59	150	217	55	4	511
비율(%)	5.1	11.5	29.4	42.5	10.8	0.8	100.0

경찰관이 112신고 출동의 개선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 즉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즉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찰관이 2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조강원(2004: 139)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역경찰제의 시행 후 현장대응력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경찰제의 시행 후 가장 눈에 띄는 효과는 112순찰차의 현장출동의 개선으로 현장대응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석청호(2003: 112)의 연구에서도 현장대응력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112신고 출동의 개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

(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다.

<표 14> 112신고 출동의 개선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 별	남자	494	3.42	1.00	.168	.682
	여자	13	3.54	1.05		
	합계	507	3.43	1.00		
연 령	20대	26	3.58	.81	1.796	.147
	30대	241	3.48	.94		
	40대	166	3.43	1.08		
	50대 이상	74	3.19	1.08		
	합계	507	3.43	1.00		
학 력	고졸	224	3.36	1.02	1.185	.307
	전문대졸	101	3.43	.96		
	대졸이상	182	3.51	1.00		
	합계	507	3.43	1.00		
직 급	순경	108	3.44	.88	2.412	.048
	경장	184	3.46	1.03		
	경사	160	3.29	1.04		
	경위	32	3.47	1.05		
	경감 이상	23	3.96	.82		
	합계	507	3.43	1.00		
근무경력	5년 미만	61	3.46	.89	2.212	.086
	5년~10년	133	3.50	.91		
	10년~15년	155	3.52	1.02		
	15년 이상	146	3.25	1.11		
	합계	495	3.42	1.01		
역 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6	3.61	1.02	3.222	.013
	민원담당관	33	3.06	1.17		
	순찰요원	395	3.44	.96		
	행정관리요원	23	3.04	1.26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4.00	.67		
	합계	507	3.43	1.00		
사명감	낮다	49	3.41	1.04	4.373	.005
	보통이다	174	3.27	.92		
	대체로 높다	225	3.45	1.02		
	매우 높다	58	3.81	1.07		
	합계	506	3.42	1.00		

<표 14>에서 직급, 역할, 사명감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48, 0.013, 0.005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직급, 역할, 사명감에 따라 112신고 출동의 개선여부의 인지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 시행 후 112신고의 출동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인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세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직급과 역할에 있어서 경감 이상의 경찰관, 그리고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이 민원담당관이나 행정관리요원에 비해 112신고의 출동이 더욱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사명감이 높은 경찰관이 112신고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6. 지역경찰제의 시행에 따른 업무 만족도

1) 업무에 대한 만족도

경찰관 자신은 업무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경찰관의 업무만족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 계
빈 도	42	100	161	169	36	3	511
비율(%)	8.2	19.6	31.5	33.1	7.0	0.6	100.0

경찰관이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보통이다’는 의견은 31.5% 나타났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업무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16>과 같다.

<표 16>에서 학력과 근무경험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48과 0.035로 0.05보다 작

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학력과 근무경력에 따라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업무에 대한 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 별	남자	494	3.11	1.07	.382	.537
	여자	14	3.29	.91		
	합계	508	3.11	1.06		
연 령	20대	28	3.14	.76	2.461	.062
	30대	242	3.24	1.02		
	40대	163	2.99	1.10		
	50대 이상	75	2.95	1.18		
	합계	508	3.11	1.06		
학 력	고졸	224	3.03	1.06	3.061	.048
	전문대졸	100	3.01	1.06		
	대졸 이상	184	3.27	1.06		
	합계	508	3.11	1.06		
직 급	순경	110	3.15	1.04	2.349	.053
	경장	185	3.15	1.01		
	경사	158	3.03	1.12		
	경위	32	2.84	1.17		
	경감 이상	23	3.65	.93		
	합계	508	3.11	1.06		
근무경력	5년 미만	63	3.17	.93	2.893	.035
	5년~10년	134	3.25	1.00		
	10년~15년	154	3.14	1.05		
	15년 이상	146	2.90	1.17		
	합계	497	3.10	1.06		
역 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6	3.04	1.13	1.711	.146
	민원담당관	33	3.27	1.13		
	순찰요원	395	3.09	1.05		
	행정관리요원	24	3.00	1.14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3.90	.88		
	합계	508	3.11	1.06		
사명감	낮다	49	2.94	1.20	1.284	.279
	보통이다	175	3.05	.96		
	대체로 높다	226	3.16	1.05		
	매우 높다	57	3.28	1.29		
	합계	507	3.11	1.07		

지역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관의 업무만족도에 대해 차이가 나타나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대졸 이상의 경찰관일수록, 근무경력이 5년-10년인 경찰관이 15년 이상의 경찰관보다 업무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졸자들이 공무원에 응시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찰관으로 채용되기를 바라는 취업생들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경찰관이 되기를 바라고, 입직동기가 뚜렷해지면서 채용된 후 경찰관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졸 이상의 경찰관, 특히 근무경력이 짧은 신입경찰관은 그들의 업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업무 관련 개선사항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지역경찰제로 변경된 후 업무에 있어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이 무엇인지 다중응답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이 근무시간 및 휴무일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찰상호간 협조체제의 증대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현재 지역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업무면에 있어 가장 개선된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역할, 사명감의 정도 등에 따라 모두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근무시간 및 휴무일 보장’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찰상호간의 협조체제 증대’, ‘순찰활동의 강화’와 ‘행정업무량의 감소’ 순으로 업무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개선부분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은 ‘지역사정파악의 용이’로, 이는 다음에 제시한 분석결과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강원(2004: 139)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역경찰제의 운영을 통한 개선사항으로 지역경찰관 과반수가 현장대처능력향상과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순찰요원들이 집중적으로 순찰근무를 수행하였고, 관리요원은 행정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결국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17> 업무 관련 개선사항

구 분		행정 업무량 감소	근무시간 및 휴무일 보장	지역사정 파악의 용이	경찰상호간 협조체제 증대	순찰 활동 강화	합 계	
성별	남자	빈도	59	280	8	107	62	491
		행%	12.0	57.0	1.6	21.8	12.6	100.0
	여자	빈도	1	11		3		14
		행%	7.1	78.6		21.4		100.0
	합계	빈도	60	291	8	110	62	505
		행%	11.9	57.6	1.6	21.8	12.3	100.0
연령	20대	빈도	1	18	1	7	3	28
		행%	3.6	64.3	3.6	25.0	10.7	100.0
	30대	빈도	35	129	5	61	28	242
		행%	14.5	53.3	2.1	25.2	11.6	100.0
	40대	빈도	16	97	1	34	18	162
		행%	9.9	59.9	.6	21.0	11.1	100.0
	50대 이상	빈도	8	47	1	8	13	73
		행%	11.0	64.4	1.4	11.0	17.8	100.0
	합계	빈도	60	291	8	110	62	505
		행%	11.9	57.6	1.6	21.8	12.3	100.0
학력	고졸	빈도	28	129	4	41	33	222
		행%	12.6	58.1	1.8	18.5	14.9	100.0
	전문대졸	빈도	8	59	1	19	14	99
		행%	8.1	59.6	1.0	19.2	14.1	100.0
	대졸 이상	빈도	24	103	3	50	15	184
		행%	13.0	56.0	1.6	27.2	8.2	100.0
	합계	빈도	60	291	8	110	62	505
		행%	11.9	57.6	1.6	21.8	12.3	100.0
직급	순경	빈도	18	56	2	29	11	110
		행%	16.4	50.9	1.8	26.4	10.0	100.0
	경장	빈도	24	107	2	40	23	185
		행%	13.0	57.8	1.1	21.6	12.4	100.0
	경사	빈도	16	85	4	33	24	155
		행%	10.3	54.8	2.6	21.3	15.5	100.0
	경위	빈도	1	29		3		32
		행%	3.1	90.6		9.4		100.0
	경감 이상	빈도	1	14		5	4	23
		행%	4.3	60.9		21.7	17.4	100.0
	합계	빈도	60	291	8	110	62	505
		행%	11.9	57.6	1.6	21.8	12.3	100.0

구 분		행정 업무량 감소	근무시간 및 휴무일 보장	지역사정과 악의 용이	경찰상호간 협조체제 증대	순찰 활동 강화	합계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5	33	1	19	7	63	
		행%	7.9	52.4	1.6	30.2	11.1	100.0	
	5년~10년	빈도	19	76	4	31	14	134	
		행%	14.2	56.7	3.0	23.1	10.4	100.0	
	10년~15년	빈도	20	78	1	45	19	154	
		행%	13.0	50.6	.6	29.2	12.3	100.0	
	15년 이상	빈도	15	95	2	14	22	143	
		행%	10.5	66.4	1.4	9.8	15.4	100.0	
	합계	빈도	59	282	8	109	62	494	
		행%	11.9	57.1	1.6	22.1	12.6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2	37		7	2	46
			행%	4.3	80.4		15.2	4.3	100.0
민원담당관		빈도	2	22	1	4	6	33	
		행%	6.1	66.7	3.0	12.1	18.2	100.0	
순찰요원		빈도	54	207	7	95	51	392	
		행%	13.8	52.8	1.8	24.2	13.0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2	18		3	1	24	
		행%	8.3	75.0		12.5	4.2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7		1	2	10	
		행%		70.0		10.0	20.0	100.0	
합계		빈도	60	291	8	110	62	505	
		행%	11.9	57.6	1.6	21.8	12.3	100.0	
사 명 감	낮다	빈도	8	28	2	11	9	49	
		행%	16.3	57.1	4.1	22.4	18.4	100.0	
	보통이다	빈도	25	108	2	31	13	172	
		행%	14.5	62.8	1.2	18.0	7.6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21	128	4	51	32	226	
		행%	9.3	56.6	1.8	22.6	14.2	100.0	
	매우 높다	빈도	6	27		16	8	57	
		행%	10.5	47.4		28.1	14.0	100.0	
	합계	빈도	60	291	8	109	62	504	
		행%	11.9	57.7	1.6	21.6	12.3	100.0	

3) 업무상 문제점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지역경찰제로 변경된 후 업무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중응답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18>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지역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업무면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지역사정과악의 곤란과 치안정보수집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이는 지역경찰제가 원래 의도했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취지에 어긋나며, 소규모의 파출소를 3-4개 통합한 순찰지구대가 신설되면서 광범위한 관할구역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과 관련시킬 수 있다. 즉 과거보다 관할구역이 넓어져 지역실정의 파악이 어려워진 것이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찰제로 재편되면서 치안정보수집의 어려움이 크다고 답변하여 경찰관과 지역주민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확보하여 치안정보의 수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조강원(2004: 140)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역경찰제 시행 후 업무상 문제점으로 ‘지역사정 파악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지역정보가 취약해졌다든가, 협력방법체제가 약화되었고, 주민들의 저항이 많은 것을 지적하여 순찰지구대 운영에 있어 치안센터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재 지역경찰제에서는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순찰팀으로 기울어져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순찰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대다수이고, 치안센터는 한두 명의 민원담당관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석청호(2003: 113-114)의 연구에서도 경찰관들이 지역경찰제의 운영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협력치안의 어려움과 치안정보수집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파출소제도 하에서는 좁은 관할구역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통한 자율방범대 등과의 협력치안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순찰지구대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로는 관할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이 사라져 협력치안이 힘들어진 것이다.

<표 18> 업무상 문제점

구 분		치안정보 수집의 어려움	지역사정 파악 곤란	경찰의 책임감 결여	근무시간 및 휴무일 보장 미흡	업무 불확실성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합계	
성별	남자	빈도	160	167	55	56	46	54	482
		행%	33.2	34.6	11.4	11.6	9.5	11.2	100.0
	여자	빈도	5	6	4			1	14
		행%	35.7	42.9	28.6			7.1	100.0
	합계	빈도	165	173	59	56	46	55	496
		행%	33.3	34.9	11.9	11.3	9.3	11.1	100.0
연령	20대	빈도	12	9	6	1	1	2	28
		행%	42.9	32.1	21.4	3.6	3.6	7.1	100.0
	30대	빈도	74	75	33	26	30	26	232
		행%	31.9	32.3	14.2	11.2	12.9	11.2	100.0
	40대	빈도	54	54	18	21	12	21	162
		행%	33.3	33.3	11.1	13.0	7.4	13.0	100.0
	50대 이상	빈도	25	35	2	8	3	6	74
		행%	33.8	47.3	2.7	10.8	4.1	8.1	100.0
	합계	빈도	165	173	59	56	46	55	496
		행%	33.3	34.9	11.9	11.3	9.3	11.1	100.0
학력	고졸	빈도	76	82	25	18	18	24	220
		행%	34.5	37.3	11.4	8.2	8.2	10.9	100.0
	전문대졸	빈도	29	38	11	13	13	11	99
		행%	29.3	38.4	11.1	13.1	13.1	11.1	100.0
	대졸 이상	빈도	60	53	23	25	15	20	177
		행%	33.9	29.9	13.0	14.1	8.5	11.3	100.0
	합계	빈도	165	173	59	56	46	55	496
		행%	33.3	34.9	11.9	11.3	9.3	11.1	100.0
직급	순경	빈도	33	30	13	13	13	10	105
		행%	31.4	28.6	12.4	12.4	12.4	9.5	100.0
	경장	빈도	59	59	27	22	17	25	181
		행%	32.6	32.6	14.9	12.2	9.4	13.8	100.0
	경사	빈도	54	54	19	19	15	17	157
		행%	34.4	34.4	12.1	12.1	9.6	10.8	100.0
	경위	빈도	10	19		1		1	30
		행%	33.3	63.3		3.3		3.3	100.0
	경감 이상	빈도	9	11		1	1	2	23
		행%	39.1	47.8		4.3	4.3	8.7	100.0
	합계	빈도	165	173	59	56	46	55	496
		행%	33.3	34.9	11.9	11.3	9.3	11.1	100.0

구 분		치안정보 수집의 어려움	지역사정 파악 곤란	경찰의 책임감 결여	근무시간 및 휴무일 보장 미흡	업무 불확실성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합계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21	14	10	8	9	6	62	
		행%	33.9	22.6	16.1	12.9	14.5	9.7	100.0	
	5년~10년	빈도	41	45	16	14	10	12	127	
		행%	32.3	35.4	12.6	11.0	7.9	9.4	100.0	
	10년~15년	빈도	49	48	23	22	17	20	151	
		행%	32.5	31.8	15.2	14.6	11.3	13.2	100.0	
	15년 이상	빈도	51	58	10	12	8	17	145	
		행%	35.2	40.0	6.9	8.3	5.5	11.7	100.0	
	합계	빈도	162	165	59	56	44	55	485	
		행%	33.4	34.0	12.2	11.5	9.1	11.3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16	24		2	2	3	44
			행%	36.4	54.5		4.5	4.5	6.8	100.0
민원담당관		빈도	13	11	3	5	2	3	33	
		행%	39.4	33.3	9.1	15.2	6.1	9.1	100.0	
순찰요원		빈도	125	124	52	47	38	44	385	
		행%	32.5	32.2	13.5	12.2	9.9	11.4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8	8	4	1	4	5	24	
		행%	33.3	33.3	16.7	4.2	16.7	20.8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3	6		1			10	
		행%	30.0	60.0		10.0			100.0	
합계		빈도	165	173	59	56	46	55	496	
		행%	33.3	34.9	11.9	11.3	9.3	11.1	100.0	
사 명 감	낮다	빈도	18	10	12	6	4	9	47	
		행%	38.3	21.3	25.5	12.8	8.5	19.1	100.0	
	보통이다	빈도	63	50	22	28	15	10	171	
		행%	36.8	29.2	12.9	16.4	8.8	5.8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66	95	22	15	15	30	222	
		행%	29.7	42.8	9.9	6.8	6.8	13.5	100.0	
	매우 높다	빈도	17	18	3	7	12	6	55	
		행%	30.9	32.7	5.5	12.7	21.8	10.9	100.0	
	합계	빈도	164	173	59	56	46	55	495	
		행%	33.1	34.9	11.9	11.3	9.3	11.1	100.0	

7. 지역경찰제의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에 대한 만족도

1) 근무교대에 대한 만족도

경찰관이 지역경찰제의 시행으로 근무교대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19>와 같다.

<표 19> 경찰관의 근무교대에 대한 만족여부

	완전히 개선되어 야 한다	다소 개선되어야 한다	보통이다	문제는 있으나 개선할 필요까지는 없다	매우 만족한다	무응답	합계
빈도	82	241	105	49	31	3	511
비율(%)	16.0	47.2	20.5	9.6	6.1	0.6	100.0

경찰관들이 근무교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현재 교대 형태가 다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2%로 가장 많았고, ‘완전히 개선되어야 한다’ 16.0%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3.2%를 나타내어 % 정도의 경찰관이 근무교대방식의 개선을 원하고 있었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근무교대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20>과 같다.

<표 20>에서 연령, 학력, 직급, 역할, 사명감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36, 0.013, 0.000, 0.000, 0.006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 학력, 직급, 역할, 사명감에 따라 근무교대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관의 근무교대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그 차이가 나타나는 다섯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20대 일수록, 고졸, 즉 학력이 낮을수록 근무교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위 이상의 간부급 경찰관은 근무교대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순찰요원보다 사무소장 및 지

구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관이, 사명감이 낮은 경찰관보다 대체로 높거나 매우 높은 경찰관이 근무교대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근무교대에 대한 만족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494	2.41	1.07	1.096	.296
	여자	14	2.71	.91		
	합계	508	2.42	1.06		
연령	20대	28	2.68	.77	2.874	.036
	30대	242	2.28	.98		
	40대	163	2.53	1.17		
	50대 이상	75	2.53	1.13		
	합계	508	2.42	1.06		
학력	고졸	224	2.58	1.09	4.411	.013
	전문대졸	100	2.26	1.02		
	대졸 이상	184	2.32	1.03		
	합계	508	2.42	1.06		
직급	순경	110	2.18	.93	10.568	.000
	경장	185	2.36	.95		
	경사	158	2.38	1.10		
	경위	32	3.31	1.12		
	경감 이상	23	3.13	1.32		
	합계	508	2.42	1.06		
근무경력	5년 미만	63	2.29	.96	2.206	.087
	5년~10년	134	2.35	.94		
	10년~15년	154	2.36	1.03		
	15년 이상	146	2.61	1.23		
	합계	497	2.42	1.07		
역할	사무소장과 지구대장	46	3.24	1.20	10.179	.000
	민원담당관	33	2.45	1.12		
	순찰요원	395	2.29	.97		
	행정관리요원	24	2.71	1.23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3.00	1.41		
	합계	508	2.42	1.06		
사명감	낮다	49	2.20	.89	4.171	.006
	보통이다	175	2.25	.92		
	대체로 높다	226	2.57	1.15		
	매우 높다	57	2.56	1.15		
	합계	507	2.42	1.06		

2) 선호하는 근무교대방식

순찰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일근자와 교대근무자로 나뉜다. 관리요원과 민원담당관이 일근근무를 하고 있다. 지구대장은 전일제근무처럼 당번·비번·일근·일근(9:00~21:00) 순서로 근무를 순환한다. 사무소장과 순찰요원은 3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무소장의 경우 3명의 소장이 3교대로 근무하고, 순찰요원은 사무소장 소속 팀 별로 편성되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조강원, 2004: 130-131).

순찰지구대에서의 근무교대방식은 A형(주간·야간·비번 순서로 3개조 1일 2교대 방식), B형(주간 5일 고정근무, 야간근무, 비번), 변형 B형(주간 3일 고정근무, 야간근무, 비번)²³⁾, C형(당번-비번-일근-당번-비번-휴무) 등이 있다. 순찰요원의 경우 위의 A, B, C형 근무교대방식 중 하나를 해당 경찰서장이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지역경찰제의 근무교대방식은 A형과 B형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무교대방식은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 큰 문제였으며, 특히 B형의 경우는 주간 5일 고정근무를 한 뒤 야간 5일 고정근무(휴무와 합치면 10일 정도 야간근무를 하게 됨)를 하다보면 업무인수인계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관할구역의 야간치안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10일 정도 야간근무를 하다가 다시 주간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공백기가 심해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알맞은 근무교대방식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차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21>과 같이 변형 B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에서 연령, 직급, 근무경력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00, 0.003, 0.000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 직급, 근무경력에 따라 근무교대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변형 B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 직급, 근무경험에 따라 선호하는 근무교대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23) 변형 B형은 09:00-21:00까지 주간 3일간 일근근무를 하고, 21:00-07:00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1일은 비번근무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서 20대, 30대, 40대는 대부분 변형 B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은 A형을 더 선호하고 있다. 직급에서는 모두 변형 B형을 선호하나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변형 B형이 43.5%로 더 선호하고 있으며, A형 또한 39.1%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다른 직급의 사람들보다 A형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대근무를 하는 경위 이하 순찰요원과 그렇지 않은 경감 이상의 간부급간의 근무교대방식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실제로 관리감독자의 경우 근무교대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근무경력에서도 1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경찰관의 응답율을 보면 변형 B형이 45.1%, A형이 29.9%로 나타나 다른 근무경력자들보다 A형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간부급 경찰관일수록,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변형 B형 다음으로 A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무교대방식을 경찰관이 가장 선호하는 변형 B형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근무교대방식에 대한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무’, ‘4부 3교대제’나 ‘4교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근무교대방식으로는 ‘주간, 비번, 야간, 비번’, ‘주당 40시간 근무’, ‘4조 3교대’ 등을 제시하였고, ‘주5일 근무제에 맞게 순찰지구대에서도 이와 상응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표 21> 근무교대방식

구 분		A형	B형	변형 B형	C형	기타	합계	χ^2	p-value				
성별	남자	빈도	87	66	277	40	18	488	5.292	.259			
		행%	17.8	13.5	56.8	8.2	3.7	100.0					
	여자	빈도	1	1	9	1	2	14					
		행%	7.1	7.1	64.3	7.1	14.3	100.0					
	합계	빈도	88	67	286	41	20	502					
		행%	17.5	13.3	57.0	8.2	4.0	100.0					
연령	20대	빈도	2	4	18	2	2	28	38.415	.000			
		행%	7.1	14.3	64.3	7.1	7.1	100.0					
	30대	빈도	29	30	150	19	10	238					
		행%	12.2	12.6	63.0	8.0	4.2	100.0					
	40대	빈도	28	21	92	12	8	161					
		행%	17.4	13.0	57.1	7.5	5.0	100.0					
	50대 이상	빈도	29	12	26	8		75					
		행%	38.7	16.0	34.7	10.7		100.0					
	합계	빈도	88	67	286	41	20	502					
		행%	17.5	13.3	57.0	8.2	4.0	100.0					
	학력	고졸	빈도	50	31	119	14	7			221	12.753	.121
			행%	22.6	14.0	53.8	6.3	3.2			100.0		
전문대졸		빈도	13	11	63	11	2	100					
		행%	13.0	11.0	63.0	11.0	2.0	100.0					
대졸 이상		빈도	25	25	104	16	11	181					
		행%	13.8	13.8	57.5	8.8	6.1	100.0					
합계		빈도	88	67	286	41	20	502					
		행%	17.5	13.3	57.0	8.2	4.0	100.0					
직급	순경	빈도	9	11	69	11	9	109	35.857	.003			
		행%	8.3	10.1	63.3	10.1	8.3	100.0					
	경장	빈도	22	28	111	14	6	181					
		행%	12.2	15.5	61.3	7.7	3.3	100.0					
	경사	빈도	40	21	78	13	5	157					
		행%	25.5	13.4	49.7	8.3	3.2	100.0					
	경위	빈도	8	5	18	1		32					
		행%	25.0	15.6	56.3	3.1		100.0					
	경감 이상	빈도	9	2	10	2		23					
		행%	39.1	8.7	43.5	8.7		100.0					
	합계	빈도	88	67	286	41	20	502					
		행%	17.5	13.3	57.0	8.2	4.0	100.0					

구 분		A형	B형	변형 B형	C형	기타	합계	χ^2	p-value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4	5	42	5	7	63	46.876	.000
		행%	6.3	7.9	66.7	7.9	11.1	100.0		
	5년~10년	빈도	18	11	91	10	2	132		
		행%	13.6	8.3	68.9	7.6	1.5	100.0		
	10년~15년	빈도	18	28	85	15	6	152		
		행%	11.8	18.4	55.9	9.9	3.9	100.0		
	15년 이상	빈도	43	20	65	11	5	144		
		행%	29.9	13.9	45.1	7.6	3.5	100.0		
	합계	빈도	83	64	283	41	20	491		
		행%	16.9	13.0	57.6	8.4	4.1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12	7	24	2	1	46	17.858	.332
		행%	26.1	15.2	52.2	4.3	2.2	100.0		
	민원담당관	빈도	9	5	15	3	1	33		
		행%	27.3	15.2	45.5	9.1	3.0	100.0		
	순찰요원	빈도	57	51	232	33	17	390		
		행%	14.6	13.1	59.5	8.5	4.4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5	4	11	2	1	23		
		행%	21.7	17.4	47.8	8.7	4.3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5		4	1		10		
		행%	50.0		40.0	10.0		100.0		
	합계	빈도	88	67	286	41	20	502		
		행%	17.5	13.3	57.0	8.2	4.0	100.0		
사 명 감	낮다	빈도	8	5	28	3	3	47	10.092	.608
		행%	17.0	10.6	59.6	6.4	6.4	100.0		
	보통이다	빈도	32	19	97	16	11	175		
		행%	18.3	10.9	55.4	9.1	6.3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40	32	127	19	4	222		
		행%	18.0	14.4	57.2	8.6	1.8	100.0		
	매우 높다	빈도	8	11	33	3	2	57		
		행%	14.0	19.3	57.9	5.3	3.5	100.0		
	합계	빈도	88	67	285	41	20	501		
		행%	17.6	13.4	56.9	8.2	4.0	100.0		

3)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경찰관의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여부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로 과중하다	다른 보직의 업무보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무응답	합계
빈 도	54	319	105	28	5	511
비율(%)	10.6	62.4	20.5	5.5	1.0	100.0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른 보직의 업무보다 많은 편이다’는 의견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로 과중하다’는 의견까지 합치면 73%로 3/4 정도의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역할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11, 0.020, 0.000, 0.012, 0.003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역할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관의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그 차이가 나타나는 다섯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연령에서는 50대 이상이 30대보다 근무시간에 더욱 만족하고 있으며, 학력에서는 고졸이 근무시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위 이상의 간부급 경찰관과 경찰서장 및 생활안전과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관이 순찰요원보다 근무시간에 대해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야간근무를 하는 순찰요원과 주간근무만 하는 경감 이상의 간부들간의 근무시간 만족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주·야간 근무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

른 결과로 보여진다. 비간부급 경찰관들이 근무교대방식이나 근무시간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근무형태를 모색하여 그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표 23>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492	2.21	.71	.138	.711
	여자	14	2.14	.36		
	합계	506	2.21	.70		
연령	20대	28	2.29	.66	3.754	.011
	30대	242	2.11	.64		
	40대	162	2.27	.74		
	50대 이상	74	2.39	.79		
	합계	506	2.21	.70		
학력	고졸	223	2.31	.73	3.936	.020
	전문대졸	99	2.13	.60		
	대졸 이상	184	2.14	.70		
	합계	506	2.21	.70		
직급	순경	110	2.03	.63	5.685	.000
	경장	184	2.19	.69		
	경사	157	2.24	.68		
	경위	32	2.56	.88		
	경감 이상	23	2.57	.73		
	합계	506	2.21	.70		
근무경력	5년 미만	63	1.97	.59	3.689	.012
	5년~10년	134	2.18	.65		
	10년~15년	153	2.20	.73		
	15년 이상	145	2.31	.71		
	합계	495	2.20	.69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6	2.54	.81	4.109	.003
	민원담당관	32	2.28	.77		
	순찰요원	394	2.16	.67		
	행정관리요원	24	2.21	.59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2.60	.84		
	합계	506	2.21	.70		
사명감	낮다	49	2.14	.61	.216	.885
	보통이다	174	2.21	.73		
	대체로 높다	225	2.23	.67		
	매우 높다	57	2.21	.82		
	합계	505	2.21	.70		

4) 선호하는 근무교대시간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적합한 근무교대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차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24>와 같이 19-9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4> 근무교대시간

구 분		19~9	20~9	21~9	기타	합계	χ^2	p-value	
성별	남자	빈도	245	102	114	25	486	1.407	.704
		행%	50.4	21.0	23.5	5.1	100.0		
	여자	빈도	9	2	2	1	14		
		행%	64.3	14.3	14.3	7.1	100.0		
	합계	빈도	254	104	116	26	500		
		행%	50.8	20.8	23.2	5.2	100.0		
연령	20대	빈도	19	3	6		28	12.235	.200
		행%	67.9	10.7	21.4		100.0		
	30대	빈도	128	51	45	12	236		
		행%	54.2	21.6	19.1	5.1	100.0		
	40대	빈도	69	35	48	10	162		
		행%	42.6	21.6	29.6	6.2	100.0		
	50대 이상	빈도	38	15	17	4	74		
		행%	51.4	20.3	23.0	5.4	100.0		
	합계	빈도	254	104	116	26	500		
		행%	50.8	20.8	23.2	5.2	100.0		
학력	고졸	빈도	105	49	54	13	221	4.764	.574
		행%	47.5	22.2	24.4	5.9	100.0		
	전문대졸	빈도	45	22	25	5	97		
		행%	46.4	22.7	25.8	5.2	100.0		
	대졸 이상	빈도	104	33	37	8	182		
		행%	57.1	18.1	20.3	4.4	100.0		
	합계	빈도	254	104	116	26	500		
		행%	50.8	20.8	23.2	5.2	100.0		
직급	순경	빈도	67	15	20	6	108	26.153	.010
		행%	62.0	13.9	18.5	5.6	100.0		
	경장	빈도	87	48	40	6	181		
		행%	48.1	26.5	22.1	3.3	100.0		
	경사	빈도	67	33	48	9	157		
		행%	42.7	21.0	30.6	5.7	100.0		
	경위	빈도	20	7	3	2	32		
		행%	62.5	21.9	9.4	6.3	100.0		
	경감 이상	빈도	13	1	5	3	22		
		행%	59.1	4.5	22.7	13.6	100.0		
	합계	빈도	254	104	116	26	500		
		행%	50.8	20.8	23.2	5.2	100.0		

구 분		19~9	20~9	21~9	기타	합계	χ^2	p-value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42	7	10	4	63	15.635	.075
		행%	66.7	11.1	15.9	6.3	100.0		
	5년~10년	빈도	70	32	28	2	132		
		행%	53.0	24.2	21.2	1.5	100.0		
	10년~15년	빈도	68	32	39	10	149		
		행%	45.6	21.5	26.2	6.7	100.0		
	15년 이상	빈도	68	30	37	10	145		
		행%	46.9	20.7	25.5	6.9	100.0		
합계	빈도	248	101	114	26	489			
	행%	50.7	20.7	23.3	5.3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27	8	5	5	45	14.589	.265
		행%	60.0	17.8	11.1	11.1	100.0		
	민원담당관	빈도	17	5	9	1	32		
		행%	53.1	15.6	28.1	3.1	100.0		
	순찰요원	빈도	189	86	96	18	389		
		행%	48.6	22.1	24.7	4.6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14	5	3	2	24		
		행%	58.3	20.8	12.5	8.3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7		3		10		
		행%	70.0		30.0		100.0		
합계	빈도	254	104	116	26	500			
	행%	50.8	20.8	23.2	5.2	100.0			
사 명 감	낮다	빈도	18	9	17	3	47	13.327	.148
		행%	38.3	19.1	36.2	6.4	100.0		
	보통이다	빈도	84	45	34	9	172		
		행%	48.8	26.2	19.8	5.2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125	38	52	9	224		
		행%	55.8	17.0	23.2	4.0	100.0		
	매우 높다	빈도	27	11	13	5	56		
		행%	48.2	19.6	23.2	8.9	100.0		
	합 계	빈도	254	103	116	26	499		
		행%	50.9	20.6	23.2	5.2	100.0		

<표 24>에서 직급의 p-value를 보면 0.010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직급에 따라 선호하는 근무교대시간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사의 경우 19시-9시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7%이며, 21시-9시에 대한 응답율은 30.6%로 나타났다.

근무교대시간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19:00-8:00'가 적합하고, '하계에는 19:00-8:00, 동계에는 19:00-9:00'로 하여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여 계절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 휴게 없이 12시간 근무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18:00-8:00', '20:00-8:00', '19:00-7:30', '19:00-2:00(1개조) 2:00-7:00(1개조) 2개조 교대근무', '야간근무개선' 등 여러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현행(19:00~9:00) 시차제 근무형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침 및 저녁 교대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눠 시차제 근무를 하는 것이 현재의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근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8. 순찰지구대 시설에 대한 만족도

1) 시설에 대한 만족도

경찰관들이 순찰지구대의 시설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25>와 같다.

<표 25> 경찰관의 순찰지구대 시설에 대한 만족여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무응답	합계
빈도	157	185	111	41	7	10	511
비율(%)	30.7	36.2	21.7	8.0	1.4	2.0	100.0

경찰관들이 순찰지구대의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6.2%로 가장 많았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30.7%로 나타나 ⅔이상(66.9%)의 경찰관이 시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청호(2003: 113)의 연구에서도 지역경찰제의 운영에 따른 순찰지구대 사무소의 협소함을 호소하는 것이 높게 나타나 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26>과 같다.

<표 26>에서 연령, 직급, 근무경력, 역할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05, 0.019, 0.011, 0.001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 직급, 근무경력, 역할에 따라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찰지구대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그 차이가 나타나는 네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연령에서는 20대일수록 시설에 더 만족하고 있으며, 직급에서는 순경, 경장이 경위보다 시설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년 미만, 5년-10년, 10년-15년의 근무경력을 가진 경찰관이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경찰관보다 시설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담당관, 순찰요원 등의 비간부 경찰관과 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 등 간부급 경찰관이 행정관리요원보다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순찰지구대 사무실의 협소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즉 연령이 높고 직급이 낮고 근무경력이 낮은 경찰관일수록 내근보다는 순찰근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순찰지구대 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26>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487	2.11	.99	.435	.510
	여자	14	2.29	.83		
	합계	501	2.11	.99		
연령	20대	27	2.56	.89	4.381	.005
	30대	239	2.21	.99		
	40대	163	1.96	.97		
	50대 이상	72	1.97	.99		
	합계	501	2.11	.99		
학력	고졸	222	2.03	1.01	1.395	.249
	전문대졸	99	2.19	.95		
	대졸 이상	180	2.17	.97		
	합계	501	2.11	.99		
직급	순경	107	2.27	1.00	2.966	.019
	경장	181	2.19	1.03		
	경사	159	2.03	.96		
	경위	32	1.69	.93		
	경감 이상	22	1.95	.65		
	합계	501	2.11	.99		
근무경력	5년 미만	61	2.21	.93	3.752	.011
	5년~10년	132	2.24	1.01		
	10년~15년	152	2.19	1.02		
	15년 이상	144	1.89	.95		
	합계	489	2.12	.99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5	1.71	.89	5.020	.001
	민원담당관	33	2.24	1.25		
	순찰요원	389	2.19	.98		
	행정관리요원	24	1.50	.66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2.10	.32		
	합계	501	2.11	.99		
사명감	낮다	48	1.94	.98	.612	.607
	보통이다	174	2.16	.95		
	대체로 높다	223	2.11	.99		
	매우 높다	55	2.13	1.11		
	합계	500	2.11	.99		

2) 확충되어야 할 시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확충되어야 할 시설이 무엇인지 다중응답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27>과 같다.

확충을 요구하는 시설로는 ‘샤워실 및 탈의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휴게시설’, ‘직원용 캐비닛’, ‘체력단련실’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시설로는 무엇보다 현재 지구대 사무실의 증축 및 신설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순찰차를 주차할 공간은 물론이고 직원들 차량의 주차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회의실’, ‘냉·온방시설’, ‘책상’, ‘주취자 보호실’ 등 여러 견해가 있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현재 순찰지구대에 더욱 확충되어야 할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자경찰관은 샤워실 및 탈의실, 휴게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경찰관은 위에 제시한 기타 의견이 많았으며, 직원용 캐비닛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중 직원용 캐비닛이나 체력단련실을 선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명감이 낮은 경찰관은 휴게시설을 선호하였고, 사명감이 높은 경찰관은 직원용 캐비닛이나 체력단련실을 선호하고 휴게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애착 정도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명감이 높은 경찰관은 업무와 관련된 캐비닛이나 체력단련실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7> 확충되어야 할 시설

구 분		휴게 시설	샤워실 및 탈의실	직원용 캐비닛	체력 단련실	기타	합계	
성별	남자	빈도	144	216	107	80	79	428
		행%	33.6	50.5	25.0	18.7	18.5	100.0
	여자	빈도	1	3	3	2	4	10
		행%	10.0	30.0	30.0	20.0	40.0	100.0
	합계	빈도	145	219	110	82	83	438
		행%	33.1	50.0	25.1	18.7	18.9	100.0
연령	20대	빈도	5	7	6	5	5	19
		행%	26.3	36.8	31.6	26.3	26.3	100.0
	30대	빈도	67	97	52	34	45	202
		행%	33.2	48.0	25.7	16.8	22.3	100.0
	40대	빈도	49	79	43	35	25	148
		행%	33.1	53.4	29.1	23.6	16.9	100.0
	50대 이상	빈도	24	36	9	8	8	69
		행%	34.8	52.2	13.0	11.6	11.6	100.0
	합계	빈도	145	219	110	82	83	438
		행%	33.1	50.0	25.1	18.7	18.9	100.0
학력	고졸	빈도	74	99	48	36	37	202
		행%	36.6	49.0	23.8	17.8	18.3	100.0
	전문대졸	빈도	27	41	26	18	17	85
		행%	31.8	48.2	30.6	21.2	20.0	100.0
	대졸 이상	빈도	44	79	36	28	29	151
		행%	29.1	52.3	23.8	18.5	19.2	100.0
	합계	빈도	145	219	110	82	83	438
		행%	33.1	50.0	25.1	18.7	18.9	100.0
직급	순경	빈도	25	46	23	17	16	89
		행%	28.1	51.7	25.8	19.1	18.0	100.0
	경장	빈도	58	78	44	36	24	151
		행%	38.4	51.7	29.1	23.8	15.9	100.0
	경사	빈도	46	76	36	21	23	147
		행%	31.3	51.7	24.5	14.3	15.6	100.0
	경위	빈도	10	12	6	6	13	31
		행%	32.3	38.7	19.4	19.4	41.9	100.0
	경감 이상	빈도	6	7	1	2	7	20
		행%	30.0	35.0	5.0	10.0	35.0	100.0
	합계	빈도	145	219	110	82	83	438
		행%	33.1	50.0	25.1	18.7	18.9	100.0

구 분		휴게 시설	샤워실 및 탈의실	직원용 캐비닛	체력 단련실	기타	합계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12	22	15	11	14	49
		행%	24.5	44.9	30.6	22.4	28.6	100.0
	5년~10년	빈도	36	55	26	17	20	110
		행%	32.7	50.0	23.6	15.5	18.2	100.0
	10년~15년	빈도	48	64	41	34	23	129
		행%	37.2	49.6	31.8	26.4	17.8	100.0
	15년 이상	빈도	44	74	28	19	21	138
		행%	31.9	53.6	20.3	13.8	15.2	100.0
	합계	빈도	140	215	110	81	78	426
		행%	32.9	50.5	25.8	19.0	18.3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14	16	8	9	18	43
		행%	32.6	37.2	18.6	20.9	41.9	100.0
	민원담당관	빈도	7	18	6	4	3	29
		행%	24.1	62.1	20.7	13.8	10.3	100.0
	순찰요원	빈도	117	169	89	62	51	334
		행%	35.0	50.6	26.6	18.6	15.3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4	12	7	7	9	23
		행%	17.4	52.2	30.4	30.4	39.1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3	4			2	9
		행%	33.3	44.4			22.2	100.0
	합계	빈도	145	219	110	82	83	438
		행%	33.1	50.0	25.1	18.7	18.9	100.0
사명 감	낮다	빈도	26	16	11	9	7	45
		행%	57.8	35.6	24.4	20.0	15.6	100.0
	보통이다	빈도	49	80	47	34	21	153
		행%	32.0	52.3	30.7	22.2	13.7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57	100	37	25	40	191
		행%	29.8	52.4	19.4	13.1	20.9	100.0
	매우 높다	빈도	13	23	15	14	15	49
		행%	26.5	46.9	30.6	28.6	30.6	100.0
	합계	빈도	145	219	110	82	83	438
		행%	33.1	50.0	25.1	18.7	18.9	100.0

3) 장비에 대한 만족도

경찰관들이 순찰지구대의 장비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28>과 같다.

<표 28> 경찰관의 순찰지구대 장비에 대한 만족여부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무응답	합 계
빈 도	91	272	103	17	1	27	511
비율(%)	17.8	53.2	20.2	3.3	0.2	5.3	100.0

경찰관이 순찰지구대의 장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이 53.2%로 가장 많았고,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17.8%로 71%의 경찰관들이 순찰지구대의 장비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장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29>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장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장비에 대한 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472	2.10	.75	.229	.633
	여자	12	2.00	.43		
	합계	484	2.10	.74		
연령	20대	26	2.15	.61	.444	.721
	30대	227	2.11	.69		
	40대	160	2.05	.80		
	50대 이상	71	2.15	.80		
	합계	484	2.10	.74		
학력	고졸	218	2.12	.82	.239	.787
	전문대졸	96	2.06	.71		
	대졸 이상	170	2.09	.65		
	합계	484	2.10	.74		
직급	순경	104	2.13	.72	1.280	.277
	경장	170	2.06	.71		
	경사	156	2.17	.83		
	경위	32	1.87	.61		
	경감 이상	22	2.18	.50		
	합계	484	2.10	.74		
근무경 력	5년 미만	58	2.14	.69	.500	.682
	5년~10년	125	2.11	.70		
	10년~15년	147	2.03	.73		
	15년 이상	142	2.13	.82		
	합계	472	2.10	.74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5	1.98	.62	1.154	.331
	민원담당관	32	2.03	.86		
	순찰요원	374	2.14	.76		
	행정관리요원	23	1.87	.63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2.10	.32		
	합계	484	2.10	.74		
사명감	낮다	47	2.09	.75	.578	.630
	보통이다	169	2.08	.71		
	대체로 높다	215	2.09	.74		
	매우 높다	53	2.23	.85		
	합계	484	2.10	.74		

4) 확충되어야 할 장비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확충되어야 할 장비가 무엇인지 다중응답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30>과 같다.

<표 30> 확충되어야 할 장비

구 분		순찰차 중차	범죄자 제압가능한 무기	호신용 장비	최첨단 무전기	기타	합계	
성별	남자	빈도	160	162	96	109	35	440
		행%	36.4	36.8	21.8	24.8	8.0	100.0
	여자	빈도	6	3	3	2		11
		행%	54.5	27.3	27.3	18.2		100.0
	합계	빈도	166	165	99	111	35	451
		행%	36.8	36.6	22.0	24.6	7.8	100.0
연령	20대	빈도	8	9	7	8		22
		행%	36.4	40.9	31.8	36.4		100.0
	30대	빈도	72	89	56	49	16	211
		행%	34.1	42.2	26.5	23.2	7.6	100.0
	40대	빈도	58	50	31	36	15	151
		행%	38.4	33.1	20.5	23.8	9.9	100.0
	50대 이상	빈도	28	17	5	18	4	67
		행%	41.8	25.4	7.5	26.9	6.0	100.0
	합계	빈도	166	165	99	111	35	451
		행%	36.8	36.6	22.0	24.6	7.8	100.0
학력	고졸	빈도	66	72	44	61	24	204
		행%	32.4	35.3	21.6	29.9	11.8	100.0
	전문대졸	빈도	34	37	20	21	4	93
		행%	36.6	39.8	21.5	22.6	4.3	100.0
	대졸 이상	빈도	66	56	35	29	7	154
		행%	42.9	36.4	22.7	18.8	4.5	100.0
	합계	빈도	166	165	99	111	35	451
		행%	36.8	36.6	22.0	24.6	7.8	100.0

구 분		순찰차 증차	범죄자 제압가능한 무기	호신용 장비	최첨단 무전기	기 타	합 계	
직급	순경	빈도	37	38	30	25	6	96
		행%	38.5	39.6	31.3	26.0	6.3	100.0
	경장	빈도	42	71	40	42	12	156
		행%	26.9	45.5	25.6	26.9	7.7	100.0
	경사	빈도	56	44	23	37	13	147
		행%	38.1	29.9	15.6	25.2	8.8	100.0
	경위	빈도	18	8	4	6	4	32
		행%	56.3	25.0	12.5	18.8	12.5	100.0
	경감 이상	빈도	13	4	2	1		20
		행%	65.0	20.0	10.0	5.0		100.0
	합계	빈도	166	165	99	111	35	451
		행%	36.8	36.6	22.0	24.6	7.8	100.0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22	25	13	16	3	53
		행%	41.5	47.2	24.5	30.2	5.7	100.0
	5년~10년	빈도	38	48	34	21	9	116
		행%	32.8	41.4	29.3	18.1	7.8	100.0
	10년~15년	빈도	40	55	34	37	11	136
		행%	29.4	40.4	25.0	27.2	8.1	100.0
	15년 이상	빈도	63	33	15	33	11	135
		행%	46.7	24.4	11.1	24.4	8.1	100.0
	합계	빈도	163	161	96	107	34	440
		행%	37.0	36.6	21.8	24.3	7.7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26	10	5	7	4	44
		행%	59.1	22.7	11.4	15.9	9.1	100.0
	민원담당관	빈도	12	10	2	6	3	28
		행%	42.9	35.7	7.1	21.4	10.7	100.0
	순찰요원	빈도	110	134	88	90	26	349
		행%	31.5	38.4	25.2	25.8	7.4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12	9	3	8	2	21
		행%	57.1	42.9	14.3	38.1	9.5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6	2	1			9
		행%	66.7	22.2	11.1			100.0
합계	빈도	166	165	99	111	35	451	
	행%	36.8	36.6	22.0	24.6	7.8	100.0	

구분		순찰차 증차	범죄자 제압가능한 무기	호신용 장비	최첨단 무전기	기 타	합 계	
사명감	낮다	빈도	14	17	13	14	4	47
		행%	29.8	36.2	27.7	29.8	8.5	100.0
	보통이다	빈도	57	58	40	36	14	162
		행%	35.2	35.8	24.7	22.2	8.6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80	77	30	45	11	196
		행%	40.8	39.3	15.3	23.0	5.6	100.0
	매우 높다	빈도	15	13	16	16	6	46
		행%	32.6	28.3	34.8	34.8	13.0	100.0
	합계	빈도	166	165	99	111	35	451
		행%	36.8	36.6	22.0	24.6	7.8	100.0

현재 순찰지구대에 더욱 확충되어야 할 장비가 무엇이냐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순찰차의 증차가 가장 많았다. 기타 응답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순찰차는 치안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고,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너무 노후하여 이들 장비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고, 순찰차의 중형화를 요구하였다. 범인검거를 위한 일반승용차 또한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범죄자 제압 가능한 무기’, ‘최첨단 무전기’, ‘호신용 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성능이 우수한 조회기(HDT), 무전기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타 장비로는 감식장비, 디지털카메라, 간편하고 휴대 가능한 지문감식 장비, 전자총이나 가스총, GPS 범죄지리지도, 경량화된 총기,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 등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장비를 더 확충시키기를 원하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 여자경찰관이 순찰차의 증차를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30대 경찰관은 범죄자 제압 가능한 무기를, 40~50대 경찰관은 순찰차의 증차를 선호하였다. 직급에서는 순경과 경장은 범죄자 제압 가능한 무기를 원하고 있으나, 경위 이상의 경찰관은 순찰차 증차를 원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고 역할에서는 순찰요원은 범죄자 제압 가능한 무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순찰차 증

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명감에서는 사명감이 매우 높은 경찰관은 호신용 장비와 최첨단 무전기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일선에서 순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대부분이 범죄자 제압이 가능한 무기와 같이 직접 업무와 연관된 장비의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존 파출소와 방범초소 등의 시설관리에 대한 인식

기존 파출소와 방범초소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경찰관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기존 파출소와 방범초소 등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빈도	33	134	239	81	2	22	511
비율(%)	6.5	26.2	46.8	15.9	0.4	4.3	100.0

경찰관들이 기존 파출소와 방범초소 등의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는 의견이 46.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6.2%로 나타나 시설관리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기존 파출소와 방범초소 등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3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기존 파출소와 방범초소의 관리여부에 대해 그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기존 파출소와 방범초소 등의 시설관리에 대한 인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476	2.77	.82	1.831	.177
	여자	13	2.46	.78		
	합계	489	2.76	.82		
연령	20대	26	2.73	.78	.273	.845
	30대	230	2.80	.81		
	40대	162	2.73	.81		
	50대 이상	71	2.75	.89		
	합계	489	2.76	.82		
학력	고졸	221	2.76	.83	.025	.975
	전문대졸	97	2.77	.74		
	대졸 이상	171	2.77	.85		
	합계	489	2.76	.82		
직급	순경	103	2.83	.79	1.434	.222
	경장	174	2.69	.86		
	경사	158	2.76	.79		
	경위	32	2.75	.84		
	경감 이상	22	3.09	.68		
	합계	489	2.76	.82		
근무경력	5년 미만	58	2.86	.80	1.417	.237
	5년~10년	125	2.85	.77		
	10년~15년	151	2.69	.87		
	15년 이상	143	2.70	.81		
	합계	477	2.75	.82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5	2.78	.77	1.186	.316
	민원담당관	32	2.72	.89		
	순찰요원	378	2.76	.82		
	행정관리요원	24	2.67	.82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3.30	.82		
	합계	489	2.76	.82		
사명감	낮다	48	2.79	.87	.041	.989
	보통이다	173	2.75	.86		
	대체로 높다	215	2.77	.78		
	매우 높다	53	2.75	.83		
	합계	489	2.76	.82		

6) 기존 파출소건물의 활용방안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기존 파출소건물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좋은지 다중응답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33>과 같다.

<표 33> 기존 파출소건물의 활용방안

구 분		청소년 공부방	노인들 사랑방	자율방법대 초소	지역주민회 의장	기 타	합 계	
성별	남자	빈도	71	13	222	44	113	457
		행%	15.5	2.8	48.6	9.6	24.7	100.0
	여자	빈도	1	2	4	2	4	13
		행%	7.7	15.4	30.8	15.4	30.8	100.0
	합계	빈도	72	15	226	46	117	470
		행%	15.3	3.2	48.1	9.8	24.9	100.0
연령	20대	빈도	3	2	8	5	7	25
		행%	12.0	8.0	32.0	20.0	28.0	100.0
	30대	빈도	35	8	95	19	64	218
		행%	16.1	3.7	43.6	8.7	29.4	100.0
	40대	빈도	30	3	74	13	39	157
		행%	19.1	1.9	47.1	8.3	24.8	100.0
	50대 이상	빈도	4	2	49	9	7	70
		행%	5.7	2.9	70.0	12.9	10.0	100.0
	합계	빈도	72	15	226	46	117	470
		행%	15.3	3.2	48.1	9.8	24.9	100.0
학력	고졸	빈도	25	7	113	20	51	214
		행%	11.7	3.3	52.8	9.3	23.8	100.0
	전문대졸	빈도	24	5	40	6	19	93
		행%	25.8	5.4	43.0	6.5	20.4	100.0
	대졸이상	빈도	23	3	73	20	47	163
		행%	14.1	1.8	44.8	12.3	28.8	100.0
	합계	빈도	72	15	226	46	117	470
		행%	15.3	3.2	48.1	9.8	24.9	100.0

구 분		청소년 공부방	노인들 사랑방	자율방범대 초소	지역주민 회의장	기 타	합 계	
직급	순경	빈도	13	6	31	13	35	96
		행%	13.5	6.3	32.3	13.5	36.5	100.0
	경장	빈도	34	3	77	17	39	168
		행%	20.2	1.8	45.8	10.1	23.2	100.0
	경사	빈도	23	6	84	14	29	154
		행%	14.9	3.9	54.5	9.1	18.8	100.0
	경위	빈도	2		20		9	31
		행%	6.5		64.5		29.0	100.0
	경감 이상	빈도			14	2	5	21
		행%			66.7	9.5	23.8	100.0
	합계	빈도	72	15	226	46	117	470
		행%	15.3	3.2	48.1	9.8	24.9	100.0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7	4	17	9	20	55
		행%	12.7	7.3	30.9	16.4	36.4	100.0
	5년~10년	빈도	19	3	53	9	34	118
		행%	16.1	2.5	44.9	7.6	28.8	100.0
	10년~15년	빈도	28	4	67	15	35	146
		행%	19.2	2.7	45.9	10.3	24.0	100.0
	15년 이상	빈도	17	4	81	13	25	139
		행%	12.2	2.9	58.3	9.4	18.0	100.0
	합계	빈도	71	15	218	46	114	458
		행%	15.5	3.3	47.6	10.0	24.9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2		27	1	13	43
		행%	4.7		62.8	2.3	30.2	100.0
	민원담당관	빈도	10	1	15	2	4	31
		행%	32.3	3.2	48.4	6.5	12.9	100.0
	순찰요원	빈도	58	14	164	39	92	362
		행%	16.0	3.9	45.3	10.8	25.4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2		12	3	7	24
		행%	8.3		50.0	12.5	29.2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8	1	1	10
		행%			80.0	10.0	10.0	100.0
합계	빈도	72	15	226	46	117	470	
	행%	15.3	3.2	48.1	9.8	24.9	100.0	

구 분		청소년 공부방	노인들 사랑방	자율방법 대초소	지역주민 회의장	기 타	합 계	
사명감	낮다	빈도	4	3	21	6	14	47
		행%	8.5	6.4	44.7	12.8	29.8	100.0
	보통이다	빈도	43	9	81	11	29	168
		행%	25.6	5.4	48.2	6.5	17.3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21	3	96	26	60	206
		행%	10.2	1.5	46.6	12.6	29.1	100.0
	매우 높다	빈도	4		28	3	14	49
		행%	8.2		57.1	6.1	28.6	100.0
	합계	빈도	72	15	226	46	117	470
		행%	15.3	3.2	48.1	9.8	24.9	100.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기존 파출소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장 많은 의견은 '자율방법대초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파출소 건물을 매각하거나 철거하여 매각한 돈으로 장비를 구입하거나 현재 순찰지구대 건물을 증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경찰관복지시설로 이용하거나, 특히 독신자나 원거리 근무자들의 숙소로 만들자는 의견도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간단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는 거점근무장소를 만들거나 더 많은 치안센터나 방법초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이지만 직원의 독서실로 활용하거나 직원을 배치하여 주민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9.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에 대한 인식

경찰관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지역주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경찰서비스에 대해 지역주민이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 계
치안서비스의 만족도	빈도	23	91	283	95	8	11	511
	비율(%)	4.5	17.8	55.4	18.6	1.6	2.2	100.0
친절도	빈도	8	32	205	216	26	24	511
	비율(%)	1.6	6.3	40.1	42.3	5.1	4.7	100.0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에 대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관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대해 주민이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친절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의견이 47.4%, ‘보통이다’는 의견이 4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관 스스로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친절 여부에 대해서도 50% 정도의 경찰관만이 친절하다고 느끼고 있어 여전히 경찰서비스의 만족도와 친절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경찰관 스스로의 서비스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35>와 같다.

<표 35>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492	3.19	.71	.206	.650
	여자	14	3.11	.45		
	합계	506	3.19	.71		
연령	20대	28	3.07	.68	1.847	.138
	30대	241	3.26	.68		
	40대	163	3.17	.70		
	50대 이상	74	3.06	.81		
	합계	506	3.19	.71		
학력	고졸	223	3.11	.72	4.199	.016
	전문대졸	101	3.17	.59		
	대졸 이상	182	3.31	.74		
	합계	506	3.19	.71		
직급	순경	110	3.24	.74	1.630	.165
	경장	183	3.19	.68		
	경사	159	3.17	.72		
	경위	31	2.97	.68		
	경감 이상	23	3.43	.66		
	합계	506	3.19	.71		
근무경 력	5년 미만	63	3.25	.79	1.216	.303
	5년~10년	133	3.25	.66		
	10년~15년	153	3.20	.64		
	15년 이상	146	3.11	.76		
	합계	495	3.19	.7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5	3.07	.70	2.346	.054
	민원담당관	33	3.35	.61		
	순찰요원	394	3.19	.71		
	행정관리요원	24	3.04	.83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3.70	.54		
	합계	506	3.19	.71		
사명감	낮다	48	2.91	.78	8.749	.000
	보통이다	175	3.09	.66		
	대체로 높다	225	3.25	.67		
	매우 높다	57	3.52	.78		
	합계	505	3.19	.71		

<표 35>에서 학력과 사명감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16과 0.000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학력과 사명감에 따라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그 차이가 나타나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대졸 이상의 경찰관이 고졸 경찰관보다 자신들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명감이 높은 경찰관일수록 자신들의 서비스 정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관의 자질향상과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치안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1) 치안센터의 존속여부에 대한 인식

경찰관은 치안센터의 존속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36>과 같다.

<표 36> 치안센터의 존속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무응답	합계
빈도	70	147	81	181	25	7	511
비율(%)	13.7	28.8	15.9	35.4	4.9	1.4	100.0

경찰관이 치안센터의 존속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40.3%,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42.5%로 나타나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치안센터의 존속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37>과 같다.

<표 37> 치안센터의 존속여부에 대한 인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490	2.88	1.19	.665	.415
	여자	14	3.14	.95		
	합계	504	2.89	1.18		
연령	20대	28	3.39	.92	2.460	.062
	30대	240	2.79	1.13		
	40대	161	2.91	1.19		
	50대 이상	75	2.97	1.38		
	합계	504	2.89	1.18		
학력	고졸	222	2.87	1.24	.058	.944
	전문대졸	99	2.88	1.12		
	대졸 이상	183	2.91	1.14		
	합계	504	2.89	1.18		
직급	순경	110	2.85	1.09	1.949	.101
	경장	182	2.82	1.18		
	경사	158	3.06	1.23		
	경위	31	2.48	1.15		
	경감 이상	23	2.91	1.24		
	합계	504	2.89	1.18		
근무경력	5년 미만	63	3.05	1.02	.787	.502
	5년~10년	133	2.88	1.16		
	10년~15년	152	2.78	1.15		
	15년 이상	144	2.90	1.28		
	합계	492	2.88	1.18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5	2.67	1.19	2.899	.022
	민원담당관	33	3.52	1.28		
	순찰요원	392	2.86	1.16		
	행정관리요원	24	3.00	1.22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2.80	1.32		
	합계	504	2.89	1.18		
사명감	낮다	48	2.69	1.21	.781	.505
	보통이다	176	2.95	1.11		
	대체로 높다	224	2.91	1.22		
	매우 높다	55	2.78	1.23		
	합계	503	2.89	1.18		

<표 37>에서 역할의 p-value를 보면 0.022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역할에 따라 치안센터의 존속여부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치안센터의 존속여부에 관한 견해에 있어 그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민원담당관들이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사무소장과 지구대장, 즉 간부급 경찰관보다 치안센터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담당관들이 치안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잘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2) 치안센터의 심야시간 폐쇄에 대한 인식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치안센터를 심야시간에 폐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차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38>과 같이 심야시간대 치안센터의 폐쇄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표 38>에서 연령의 p-value를 보면 0.050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에 따라 치안센터의 심야시간 폐쇄에 대한 의견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대, 40대, 50대 이상의 경찰관들은 폐쇄하여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4.7%, 68.1%, 77.3%로 월등히 높은 반면 20대 경찰관은 폐쇄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53.6%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의 경찰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38> 치안센터의 심야시간 폐쇄에 대한 인식

구 분		폐쇄해서안 된다	폐쇄하여도 괜찮다	합 계	χ^2	p-value	
성별	남자	빈도	137	353	490	.405	.525
		행%	28.0	72.0	100.0		
	여자	빈도	5	9	14		
		행%	35.7	64.3	100.0		
	합계	빈도	142	362	504		
		행%	28.2	71.8	100.0		
연령	20대	빈도	13	15	28	7.794	.050
		행%	46.4	53.6	100.0		
	30대	빈도	61	180	241		
		행%	25.3	74.7	100.0		
	40대	빈도	51	109	160		
		행%	31.9	68.1	100.0		
	50대 이상	빈도	17	58	75		
		행%	22.7	77.3	100.0		
	합계	빈도	142	362	504		
		행%	28.2	71.8	100.0		
학력	고졸	빈도	65	157	222	3.671	.160
		행%	29.3	70.7	100.0		
	전문대졸	빈도	34	66	100		
		행%	34.0	66.0	100.0		
	대졸 이상	빈도	43	139	182		
		행%	23.6	76.4	100.0		
	합계	빈도	142	362	504		
		행%	28.2	71.8	100.0		
직급	순경	빈도	34	75	109	5.152	.272
		행%	31.2	68.8	100.0		
	경장	빈도	49	134	183		
		행%	26.8	73.2	100.0		
	경사	빈도	50	108	158		
		행%	31.6	68.4	100.0		
	경위	빈도	5	26	31		
		행%	16.1	83.9	100.0		
	경감 이상	빈도	4	19	23		
		행%	17.4	82.6	100.0		
	합계	빈도	142	362	504		
		행%	28.2	71.8	100.0		

구 분		폐쇄해서는 안된다	폐쇄하여도 괜찮다	합계	χ^2	p-value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20	42	62	1.992	.574
		행%	32.3	67.7	100.0		
	5년~10년	빈도	40	93	133		
		행%	30.1	69.9	100.0		
	10년~15년	빈도	37	116	153		
		행%	24.2	75.8	100.0		
	15년 이상	빈도	39	105	144		
		행%	27.1	72.9	100.0		
	합계	빈도	136	356	492		
		행%	27.6	72.4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9	36	45	4.322	.364
		행%	20.0	80.0	100.0		
	민원담당관	빈도	9	24	33		
		행%	27.3	72.7	100.0		
	순찰요원	빈도	114	278	392		
		행%	29.1	70.9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9	15	24		
		행%	37.5	62.5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1	9	10		
		행%	10.0	90.0	100.0		
	합계	빈도	142	362	504		
		행%	28.2	71.8	100.0		
사명감	낮다	빈도	14	34	48	1.749	.626
		행%	29.2	70.8	100.0		
	보통이다	빈도	55	120	175		
		행%	31.4	68.6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60	165	225		
		행%	26.7	73.3	100.0		
	매우 높다	빈도	13	42	55		
		행%	23.6	76.4	100.0		
	합계	빈도	142	361	503		
		행%	28.2	71.8	100.0		

3) 적합한 치안센터의 근무인원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적합한 치안센터의 근무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차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39>와 같이 1~3명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치안센터의 근무인원

구 분		1-3명	4-6명	6명 이상	합계	χ^2	p-value	
성별	남자	빈도	381	41	24	446	2.376	.305
		행%	85.4	9.2	5.4	100.0		
	여자	빈도	14			14		
		행%	100.0			100.0		
	합계	빈도	395	41	24	460		
		행%	85.9	8.9	5.2	100.0		
연령	20대	빈도	27			27	12.935	.044
		행%	100.0			100.0		
	30대	빈도	174	28	14	216		
		행%	80.6	13.0	6.5	100.0		
	40대	빈도	129	10	6	145		
		행%	89.0	6.9	4.1	100.0		
	50대 이상	빈도	65	3	4	72		
		행%	90.3	4.2	5.6	100.0		
	합계	빈도	395	41	24	460		
		행%	85.9	8.9	5.2	100.0		
학력	고졸	빈도	172	17	8	197	1.375	.849
		행%	87.3	8.6	4.1	100.0		
	전문대졸	빈도	83	8	5	96		
		행%	86.5	8.3	5.2	100.0		
	대졸 이상	빈도	140	16	11	167		
		행%	83.8	9.6	6.6	100.0		
	합계	빈도	395	41	24	460		
		행%	85.9	8.9	5.2	100.0		
직급	순경	빈도	86	11	6	103	3.730	.811
		행%	83.5	10.7	5.8	100.0		
	경장	빈도	140	13	11	164		
		행%	85.4	7.9	6.7	100.0		
	경사	빈도	128	13	4	145		
		행%	88.3	9.0	2.8	100.0		
	경위	빈도	24	3	2	29		
		행%	82.8	10.3	6.9	100.0		
	경감 이상	빈도	17	1	1	19		
		행%	89.5	5.3	5.3	100.0		
	합계	빈도	395	41	24	460		
		행%	85.9	8.9	5.2	100.0		

구 분			1-3명	4-6명	6명 이상	합계	χ^2	p-value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45	7	4	56	3.677	.720
		행%	80.4	12.5	7.1	100.0		
	5년~10년	빈도	108	13	6	127		
		행%	85.0	10.2	4.7	100.0		
	10년-15년	빈도	113	9	9	131		
		행%	86.3	6.9	6.9	100.0		
	15년 이상	빈도	118	11	5	134		
		행%	88.1	8.2	3.7	100.0		
	합계	빈도	384	40	24	448		
		행%	85.7	8.9	5.4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35	4	3	42	5.917	.657
		행%	83.3	9.5	7.1	100.0		
	민원담당관	빈도	29	3		32		
		행%	90.6	9.4		100.0		
	순찰요원	빈도	302	34	20	356		
		행%	84.8	9.6	5.6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22		1	23		
		행%	95.7		4.3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7			7		
		행%	100.0			100.0		
	합계	빈도	395	41	24	460		
		행%	85.9	8.9	5.2	100.0		
사명감	낮다	빈도	34	7		41	15.316	.018
		행%	82.9	17.1		100.0		
	보통이다	빈도	137	13	16	166		
		행%	82.5	7.8	9.6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182	17	5	204		
		행%	89.2	8.3	2.5	100.0		
	매우 높다	빈도	41	4	3	48		
		행%	85.4	8.3	6.3	100.0		
	합계	빈도	394	41	24	459		
		행%	85.8	8.9	5.2	100.0		

<표 39>에서 연령과 사명감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44와 0.018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과 사명감에 따라 치안센터 근무인원에 관한 의견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서 20대는 치안센터의 근무인원으로 1~3명이 적절하다는데 100%의 응답률이 나왔다. 30대에서도 1~3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4~6명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연령의 경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명감이 낮은 경찰관의 4~6명에 대한 응답률이 17.1%로 나타나 사명감이 보통이거나 높은 경찰관에 비해 4~6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지역경찰제의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 인력증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업무 강도 및 곤란도가 높은 순찰팀의 경우 인력증원을 더욱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약한 치안센터의 근무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순찰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개선사항으로 바라는 것 중 치안센터를 없애고 그 인원을 순찰지구대로 환원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으므로 치안센터의 인원보강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일 것이다.

4) 치안센터 업무개선사항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치안센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것을 다중응답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0>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앞으로 치안센터의 업무에 있어 더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소재수사 및 통고서 등의 민원처리의 개선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민불편사항과약’, ‘경찰활동의 홍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치안센터가 기존 파출소와 같이 좀더 주민들 가까이에서 업무를 하고, 그들이 경찰관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립하기를 경찰관 또한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현재 순찰지구대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업무를 치안센터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기도 하다.

<표 40> 치안센터의 업무개선사항

구 분		소재수사 및 통고서 등의 민원처리	방법 요령 교육	협력 단체 관리	관내 행사 참석	경찰관 활동 홍보	범죄 정보 수집	주민 불편 사항 파악	기타	합계	
성별	남자	빈도	202	21	45	17	71	50	136	28	474
		행%	42.6	4.4	9.5	3.6	15.0	10.5	28.7	5.9	100.0
	여자	빈도	9	1				2	3	1	14
		행%	64.3	7.1				14.3	21.4	7.1	100.0
	합계	빈도	211	22	45	17	71	52	139	29	488
		행%	43.2	4.5	9.2	3.5	14.5	10.7	28.5	5.9	100.0
연령	20대	빈도	12	1			5	4	8	2	27
		행%	44.4	3.7			18.5	14.8	29.6	7.4	100.0
	30대	빈도	101	13	17	6	32	20	65	12	230
		행%	43.9	5.7	7.4	2.6	13.9	8.7	28.3	5.2	100.0
	40대	빈도	70	6	18	3	26	19	41	10	157
		행%	44.6	3.8	11.5	1.9	16.6	12.1	26.1	6.4	100.0
	50대 이상	빈도	28	2	10	8	8	9	25	5	74
		행%	37.8	2.7	13.5	10.8	10.8	12.2	33.8	6.8	100.0
	합계	빈도	211	22	45	17	71	52	139	29	488
		행%	43.2	4.5	9.2	3.5	14.5	10.7	28.5	5.9	100.0
학력	고졸	빈도	97	6	30	9	30	24	61	14	215
		행%	45.1	2.8	14.0	4.2	14.0	11.2	28.4	6.5	100.0
	전문대졸	빈도	49	4	2	1	13	12	24	5	99
		행%	49.5	4.0	2.0	1.0	13.1	12.1	24.2	5.1	100.0
	대졸 이상	빈도	65	12	13	7	28	16	54	10	174
		행%	37.4	6.9	7.5	4.0	16.1	9.2	31.0	5.7	100.0
	합계	빈도	211	22	45	17	71	52	139	29	488
		행%	43.2	4.5	9.2	3.5	14.5	10.7	28.5	5.9	100.0
직급	순경	빈도	48	7	5	3	15	8	31	6	106
		행%	45.3	6.6	4.7	2.8	14.2	7.5	29.2	5.7	100.0
	경장	빈도	77	7	12	3	33	21	41	12	175
		행%	44.0	4.0	6.9	1.7	18.9	12.0	23.4	6.9	100.0
	경사	빈도	73	8	20	10	16	16	48	8	155
		행%	47.1	5.2	12.9	6.5	10.3	10.3	31.0	5.2	100.0
	경위	빈도	10		4	1	2	4	9	3	29
		행%	34.5		13.8	3.4	6.9	13.8	31.0	10.3	100.0
	경감 이상	빈도	3		4		5	3	10		23
		행%	13.0		17.4		21.7	13.0	43.5		100.0
	합계	빈도	211	22	45	17	71	52	139	29	488
		행%	43.2	4.5	9.2	3.5	14.5	10.7	28.5	5.9	100.0

구 분		소재수사 및 통고서 등의 민원처리	방법 요령 교육	협력 단체 관리	관내 행사 참석	경찰관 활동 홍보	범죄 정보 수집	주민 불편 사항 파악	기타	합계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26	4	2	2	11	8	20	3	61
		행%	42.6	6.6	3.3	3.3	18.0	13.1	32.8	4.9	100.0
	5년~10년	빈도	57	7	10	1	15	7	32	6	126
		행%	45.2	5.6	7.9	.8	11.9	5.6	25.4	4.8	100.0
	10년~15년	빈도	65	6	12	4	27	18	34	10	148
		행%	43.9	4.1	8.1	2.7	18.2	12.2	23.0	6.8	100.0
	15년 이상	빈도	58	4	18	8	15	16	49	9	141
		행%	41.1	2.8	12.8	5.7	10.6	11.3	34.8	6.4	100.0
	합계	빈도	206	21	42	15	68	49	135	28	476
		행%	43.3	4.4	8.8	3.2	14.3	10.3	28.4	5.9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14		8	1	5	5	13	3	43
		행%	32.6		18.6	2.3	11.6	11.6	30.2	7.0	100.0
	민원담당관	빈도	14	1	5	3	4	6	11	2	33
		행%	42.4	3.0	15.2	9.1	12.1	18.2	33.3	6.1	100.0
	순찰요원	빈도	170	20	29	12	57	33	100	22	378
		행%	45.0	5.3	7.7	3.2	15.1	8.7	26.5	5.8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13	1	3	1	3	6	9	2	24
		행%	54.2	4.2	12.5	4.2	12.5	25.0	37.5	8.3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2	2	6		10
		행%					20.0	20.0	60.0		100.0
합계	빈도	211	22	45	17	71	52	139	29	488	
	행%	43.2	4.5	9.2	3.5	14.5	10.7	28.5	5.9	100.0	
사 명 감	낮다	빈도	32	2	4	1	4	4	8	4	45
		행%	71.1	4.4	8.9	2.2	8.9	8.9	17.8	8.9	100.0
	보통이다	빈도	69	12	11	8	23	21	44	8	170
		행%	40.6	7.1	6.5	4.7	13.5	12.4	25.9	4.7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87	5	25	7	36	24	66	14	219
		행%	39.7	2.3	11.4	3.2	16.4	11.0	30.1	6.4	100.0
	매우 높다	빈도	23	3	5	1	8	3	20	3	53
		행%	43.4	5.7	9.4	1.9	15.1	5.7	37.7	5.7	100.0
	합계	빈도	211	22	45	17	71	52	138	29	487
		행%	43.3	4.5	9.2	3.5	14.6	10.7	28.3	6.0	100.0

그러나 경감 이상 경찰관으로 순찰지구대장, 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은 주민불편사항 파악과 경찰활동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실제 근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치안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치안센터를 폐쇄하고 모든 업무를 순찰지구대 위주로 하며 남은 인력을 순찰지구대의 순찰요원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치안센터의 존재 자체가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순찰지구대의 폐쇄는 좀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업무에 있어서 지금처럼 고정근무하게 하지 않고, 112순찰요원으로 순환근무할 수 있게 하여 업무협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인근주변의 경미한 고소사건, 즉시 처리 가능한 교통사고와 같은 간단한 형사사건처리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경위들을 치안센터에 배치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정보수집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치안센터는 주민을 위해 활동하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11.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경찰관들이 지역경찰제의 시행으로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대민접촉기회의 변화	빈도	122	184	170	26	4	5	511
	비율(%)	23.9	36.0	33.3	5.1	0.8	1.0	100.0
지역주민의 참여도에 대한 변화	빈도	67	199	196	40	4	5	511
	비율(%)	13.1	38.9	38.4	7.8	0.8	1.0	100.0
경찰이미지의 변화	빈도	21	87	314	76	8	5	511
	비율(%)	4.1	17.0	61.4	14.9	1.6	1.0	100.0

경찰관들이 지역경찰제의 시행으로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민접촉기회의 증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9.9%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태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2.0%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관의 이미지변화에 있어서는 ‘보통이다’는 의견이 61.4%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경찰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우열·이정훈(2004: 168)의 연구결과에서는 지역경찰제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주민과의 협조관계를 원만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청호(2003: 112-117)의 연구에서는 지역경찰제 운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 답변이 높았다. 특히 지역경찰제의 운영으로 인해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치안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것이 높게 나타났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산분석(ANOVA)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2>와 같다.

<표 42>에서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역할의 p-value를 각각 보면 0.000, 0.031, 0.002, 0.000, 0.012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역할에 따라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여부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다섯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20대 경찰관이 50대 이상의 경찰관보다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경찰관일수록 경찰과 지역주민이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경위를 제외한 순경, 경장, 경사, 경감 이상이 경찰과 지역주민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무경력에서는 5년 미만, 5-10년, 10-15년까지, 역할에서는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이 사무소장과 지구대장, 행정관리요원에 비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42>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정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492	2.53	.70	.001	.980
	여자	14	2.52	.45		
	합계	506	2.53	.69		
연령	20대	28	2.76	.72	8.195	.000
	30대	242	2.64	.62		
	40대	161	2.43	.68		
	50대 이상	75	2.27	.83		
	합계	506	2.53	.69		
학력	고졸	223	2.44	.71	3.506	.031
	전문대졸	100	2.55	.71		
	대졸 이상	183	2.62	.65		
	합계	506	2.53	.69		
직급	순경	110	2.59	.62	4.314	.002
	경장	184	2.59	.71		
	경사	158	2.49	.72		
	경위	31	2.08	.64		
	경감 이상	23	2.67	.58		
	합계	506	2.53	.69		
근무경 력	5년 미만	63	2.64	.62	9.621	.000
	5년~10년	134	2.62	.62		
	10년~15년	153	2.66	.68		
	15년 이상	144	2.28	.75		
	합계	494	2.53	.7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5	2.23	.65	3.264	.012
	민원담당관	33	2.61	.79		
	순찰요원	394	2.56	.69		
	행정관리요원	24	2.36	.55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10	2.83	.55		
	합계	506	2.53	.69		
사명감	낮다	48	2.48	.84	.885	.449
	보통이다	176	2.47	.61		
	대체로 높다	226	2.57	.67		
	매우 높다	55	2.58	.87		
	합계	505	2.53	.69		

따라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나 위의 분석결과에서 모두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가 지역경찰제의 시행으로 인해 접촉기회가 부족해지면서 과거보다 오히려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지역경찰제의 순찰방식에 있어 도보순찰은 사라지고 신속한 출동에 중점을 두어 차량순찰이 주를 이루어 사건발생 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동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순찰방식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고 예전보다 안전감을 느끼지 못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게 되면서 이들의 관계개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2. 지역경찰제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1) 지역경찰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인식

경찰관은 지역경찰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지역경찰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매우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한 편이다	매우 적합하다	무응답	합계
빈도	49	101	171	164	24	2	511
비율(%)	9.6	19.8	33.5	32.1	4.7	0.4	100.0

경찰관은 지역경찰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의견이 33.5%로 나타났고, ‘적합한 편이다’는 의견이 36.8%로 나타나 크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지역경찰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4>와 같다.

<표 44> 지역경찰제의 적합성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495	3.02	1.05	.181	.671
	여자	14	3.14	.86		
	합계	509	3.03	1.05		
연령	20대	28	3.36	.87	7.164	.000
	30대	242	3.18	1.01		
	40대	164	2.92	1.06		
	50대 이상	75	2.63	1.08		
	합계	509	3.03	1.05		
학력	고졸	224	2.93	1.03	1.813	.164
	전문대졸	101	3.04	1.05		
	대졸 이상	184	3.13	1.06		
	합계	509	3.03	1.05		
직급	순경	110	3.23	1.02	4.598	.001
	경장	186	3.04	1.02		
	경사	160	2.93	1.05		
	경위	31	2.45	1.18		
	경감 이상	22	3.41	.85		
	합계	509	3.03	1.05		
근무경력	5년 미만	63	3.19	1.05	7.083	.000
	5년~10년	134	3.19	.98		
	10년~15년	155	3.12	1.02		
	15년 이상	145	2.70	1.09		
	합계	497	3.03	1.05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45	2.73	1.19	1.481	.207
	민원담당관	33	3.00	.97		
	순찰요원	398	3.06	1.04		
	행정관리요원	24	2.88	.99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9	3.44	.53		
	합계	509	3.03	1.05		
사명감	낮다	49	2.80	1.14	2.412	.066
	보통이다	176	2.94	.93		
	대체로 높다	225	3.08	1.07		
	매우 높다	58	3.26	1.16		
	합계	508	3.03	1.05		

<표 44>에서 연령, 직급, 근무경력에 대한 p-value를 각각 보면 0.000, 0.001, 0.000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 직급, 근무경력에 따라 지역경찰제가 우리 실정에 적합한가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경찰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견차이가 나타나는 세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20대 경찰관은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찰관에 비해 순찰지구대가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30대 경찰관은 50대 이상의 경찰관에 비해 적합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경찰관이 지역경찰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감 이상의 경찰관이 경사, 경위에 비해 지역경찰제의 적합성에 긍정적이며, 경사가 경위에 비해 긍정적이고, 순경과 경장은 경위에 비해 적합하다고 느끼고 있다. 근무경력이 5년 미만, 5-10년, 10-15년인 경찰관은 지역경찰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존 파출소제도로의 환원에 대한 인식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기존 파출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교차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5>와 같이 경위계급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파출소로 환원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이 나타나 지역경찰제에 대해 경찰관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45>에서 연령, 직급, 근무경력, 역할의 각각의 p-value를 보면 0.000과 0.003과 0.000과 0.004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 직급, 근무경력, 역할에 따라 기존 파출소제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기존의 파출소로 환원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경찰관은 지역경찰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서 20대, 30대, 40대는 기존 파출소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적극 반대하나, 50대 이상을 보면 찬성이 45.3%, 반대가 54.7%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연

령에 비해 파출소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기존 파출소제도로의 환원

구 분		찬성	반대	합계	χ^2	p-value	
성별	남자	빈도	125	364	489	.123	.726
		행%	25.6	74.4	100.0		
	여자	빈도	3	11	14		
		행%	21.4	78.6	100.0		
	합계	빈도	128	375	503		
		행%	25.4	74.6	100.0		
연령	20대	빈도	5	23	28	21.284	.000
		행%	17.9	82.1	100.0		
	30대	빈도	46	192	238		
		행%	19.3	80.7	100.0		
	40대	빈도	43	119	162		
		행%	26.5	73.5	100.0		
	50대 이상	빈도	34	41	75		
		행%	45.3	54.7	100.0		
	합계	빈도	128	375	503		
		행%	25.4	74.6	100.0		
학력	고졸	빈도	63	158	221	2.098	.350
		행%	28.5	71.5	100.0		
	전문대졸	빈도	21	76	97		
		행%	21.6	78.4	100.0		
	대졸 이상	빈도	44	141	185		
		행%	23.8	76.2	100.0		
	합계	빈도	128	375	503		
		행%	25.4	74.6	100.0		
직급	순경	빈도	21	89	110	15.885	.003
		행%	19.1	80.9	100.0		
	경장	빈도	40	141	181		
		행%	22.1	77.9	100.0		
	경사	빈도	46	112	158		
		행%	29.1	70.9	100.0		
	경위	빈도	16	15	31		
		행%	51.6	48.4	100.0		
	경감 이상	빈도	5	18	23		
		행%	21.7	78.3	100.0		
	합계	빈도	128	375	503		
		행%	25.4	74.6	100.0		

구 분		찬 성	반 대	합 계	χ^2	p-value	
근무경력	5년 미만	빈도	15	48	63	26.065	.000
		행%	23.8	76.2	100.0		
	5년~10년	빈도	23	105	128		
		행%	18.0	82.0	100.0		
	10년~15년	빈도	28	127	155		
		행%	18.1	81.9	100.0		
	15년 이상	빈도	59	86	145		
		행%	40.7	59.3	100.0		
	합계	빈도	125	366	491		
		행%	25.5	74.5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20	25	45	15.482	.004
		행%	44.4	55.6	100.0		
	민원담당관	빈도	13	20	33		
		행%	39.4	60.6	100.0		
	순찰요원	빈도	87	304	391		
		행%	22.3	77.7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7	17	24		
		행%	29.2	70.8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1	9	10		
		행%	10.0	90.0	100.0		
합계	빈도	128	375	503			
	행%	25.4	74.6	100.0			
사명감	낮다	빈도	12	37	49	.907	.824
		행%	24.5	75.5	100.0		
	보통이다	빈도	44	126	170		
		행%	25.9	74.1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60	165	225		
		행%	26.7	73.3	100.0		
	매우 높다	빈도	12	46	58		
		행%	20.7	79.3	100.0		
	합계	빈도	128	374	502		
		행%	25.5	74.5	100.0		

근무경력에서는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경찰관이 파출소제도로 돌아가는데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 40.7%, 반대하는 입장이 59.8%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높고, 근무경력이 많은 경찰관일수록 기존의 파출소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급에서는 경위 계급이 파출소제도로의 환원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출소장에서 사무소장으로의 위상의 상대적 실추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이처럼 파출소제도로의 환원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파출소 운영 시 사건이 2개 이상 접수될 때 출동이 지연되고, 파출소간 공조 또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강력범죄 발생 시 제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파출소제도로의 환원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역주민간의 친밀감, 현재 지역경찰제로 인해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의 저하, 인력 부족, 관할구역의 확대 등의 문제점을 들고 있어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경찰제의 개선사항

경찰관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 순찰지구대에서의 역할,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따라 지역경찰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다중응답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6>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지역경찰제의 개선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여경, 경위·경감 이상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행정관리요원을 제외하고는 인력충원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시설 및 장비확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기타 지역경찰제의 개선점으로는 사무공간의 확충 및 사무실 신축, 근무시간 및 교대방법 등 근무여건의 개선, 주차장 완비, 직원복지 향상, 휴가 및 병가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해결, 방법활동강화 및 도보순찰을 통한 대민정보수집활동 강화, 사무소장의 사무분담 및 구체적 업무부여, 직원간의 화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역경찰제의 개선점으로 제시한 것들이 위의 결과와 거의 흡사하다. 정우열·이정훈(2004: 173-17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찰제의 개선방향에 있어 경찰관은 인력의 보강 및 합리적 배치, 첨단장비 확보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제의 서비스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의 대응력 강화, 안전감 향상, 지역주민과의 접촉기회 증대 등의 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표 46> 지역경찰제의 개선사항

구 분		인력충원	시설 및 장비확충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마련	범죄예방 활동 강화	기타	합계	
성별	남자	빈도	290	198	18	21	17	486
		행%	59.7	40.7	3.7	4.3	3.5	100.0
	여자	빈도	7	9				14
		행%	50.0	64.3				100.0
	합계	빈도	297	207	18	21	17	500
		행%	59.4	41.4	3.6	4.2	3.4	100.0
연령	20대	빈도	15	16		3		28
		행%	53.6	57.1		10.7		100.0
	30대	빈도	151	93	11	8	11	239
		행%	63.2	38.9	4.6	3.3	4.6	100.0
	40대	빈도	88	69	5	4	5	158
		행%	55.7	43.7	3.2	2.5	3.2	100.0
	50대 이상	빈도	43	29	2	6	1	75
		행%	57.3	38.7	2.7	8.0	1.3	100.0
	합계	빈도	297	207	18	21	17	500
		행%	59.4	41.4	3.6	4.2	3.4	100.0
학력	고졸	빈도	131	85	7	10	11	220
		행%	59.5	38.6	3.2	4.5	5.0	100.0
	전문대졸	빈도	65	42	5	2	1	98
		행%	66.3	42.9	5.1	2.0	1.0	100.0
	대졸 이상	빈도	101	80	6	9	5	182
		행%	55.5	44.0	3.3	4.9	2.7	100.0
합계	빈도	297	207	18	21	17	500	
	행%	59.4	41.4	3.6	4.2	3.4	100.0	
직급	순경	빈도	71	44	4	4	1	110
		행%	64.5	40.0	3.6	3.6	.9	100.0
	경장	빈도	109	78	5	5	6	179
		행%	60.9	43.6	2.8	2.8	3.4	100.0
	경사	빈도	98	56	8	5	8	158
		행%	62.0	35.4	5.1	3.2	5.1	100.0
	경위	빈도	11	17	1	4	2	30
		행%	36.7	56.7	3.3	13.3	6.7	100.0
	경감 이상	빈도	8	12		3		23
		행%	34.8	52.2		13.0		100.0
합계	빈도	297	207	18	21	17	500	
	행%	59.4	41.4	3.6	4.2	3.4	100.0	

구 분		인력충원	시설 및 장비확충	지역주민 을 위한 공간마련	범죄예방활 동 강화	기타	합계	
근무 경력	5년 미만	빈도	38	28	2	4	2	63
		행%	60.3	44.4	3.2	6.3	3.2	100.0
	5년~10년	빈도	79	54	7	6	3	133
		행%	59.4	40.6	5.3	4.5	2.3	100.0
	10년~15년	빈도	94	63	2	2	6	148
		행%	63.5	42.6	1.4	1.4	4.1	100.0
	15년 이상	빈도	81	57	7	7	6	144
		행%	56.3	39.6	4.9	4.9	4.2	100.0
	합계	빈도	292	202	18	19	17	488
		행%	59.8	41.4	3.7	3.9	3.5	100.0
역할	지구대장과 사무소장	빈도	13	27	1	6	2	44
		행%	29.5	61.4	2.3	13.6	4.5	100.0
	민원담당관	빈도	18	15		1		33
		행%	54.5	45.5		3.0		100.0
	순찰요원	빈도	250	146	17	12	13	389
		행%	64.3	37.5	4.4	3.1	3.3	100.0
	행정관리요원	빈도	10	16		1	2	24
		행%	41.7	66.7		4.2	8.3	100.0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빈도	6	3		1		10
		행%	60.0	30.0		10.0		100.0
	합계	빈도	297	207	18	21	17	500
		행%	59.4	41.4	3.6	4.2	3.4	100.0
사 명 감	낮다	빈도	33	18		3	3	46
		행%	71.7	39.1		6.5	6.5	100.0
	보통이다	빈도	104	70	6	11	5	175
		행%	59.4	40.0	3.4	6.3	2.9	100.0
	대체로 높다	빈도	133	90	9	6	5	223
		행%	59.6	40.4	4.0	2.7	2.2	100.0
	매우 높다	빈도	26	29	3	1	4	55
		행%	47.3	52.7	5.5	1.8	7.3	100.0
	합계	빈도	296	207	18	21	17	499
		행%	59.3	41.5	3.6	4.2	3.4	100.0

조강원(2004: 136)의 연구결과에서는 지역경찰제의 개선사항으로 순찰지구대 사무실 개선과 순찰차 증차 및 성능향상 등을 꼽은 경찰관이 과반수를 넘었다. 이는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찰관이 관리자들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불편사항을 많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지역경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요망사항

지역경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첫째, 가장 많은 답변으로는 앞의 분석결과와 같이 인력확충을 들고 있다. 현재 순찰지구대에서는 최소 단위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발생사건이 없다는 사유로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치안수요가 많은 도심 지구대의 경우 인원이 부족하여 사건처리에 매달리다보면 순찰시간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3급지 경찰관서의 경우에는 인력부족으로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자가 없어 순찰차량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안센터의 인원을 순찰지구대로 복귀시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들 수 있고, 인원보강이 어렵다면 지구대장이나 사무소장이 근무여건에 맞춰 순찰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비확충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순찰차 증차 및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전기나 호신용 무기 등 장비가 경량화, 첨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순찰지구대의 건물 및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그 공간 또한 너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의 경우 15~20명이 근무하는 건물규모가 대지 300평인데 비해 순찰지구대는 대지 70평에 건평 60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60명의 직원이 생활을 해야 하므로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경찰관을 위한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공간, 주차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하루 빨리 순찰지구대 사무실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적 위주의 업무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음주단속이나 교통단속 등 교통관련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음주단속을 위해 순찰차와 인력을 배치

하고 나면 주민의 사건신고처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찰지구대간의 단속 및 실적경쟁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업무에 소홀해지고 단속실적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보고문서의 과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 부서에 보고하는 문서가 기존 파출소 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리요원에 대한 분서업무(경범죄심입력, 교통통고, 음주입력, 경리업무전가 등)의 순찰지구대로의 이양이 점점 늘어 예전보다 더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 교통단속 등은 교통지도계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방법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은 순찰지구대에서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찰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순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순찰지구대간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외국과 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담경찰관관과 순찰전담경찰관 등으로 업무를 전문화시켜야 할 것이다.

제3절 지역주민 대상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결과의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281명(64.7%), 여자는 153명(35.3%)으로 남자가 많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55명(35.7%)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대는 114명(26.3%), 50대 이상은 84명(19.4%), 20대는 62명(14.3%), 60대 이상은 19명(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 목	범 주	빈 도	퍼센트(%)
성별	남자	281	64.7
	여자	153	35.3
연령	20대	62	14.3
	30대	114	26.3
	40대	155	35.7
	50대	84	19.4
	60대 이상	19	4.4
	직업	전문직	19
	사무직	61	14.1
	공무원	45	10.4
	자영업(서비스업)	119	27.4
	농어민	38	8.8
	생산직	18	4.1
	주부	72	16.6
	학생	35	8.1
	기타	27	6.2
학력	중졸 이하	43	9.9
	고졸	175	40.3
	전문대졸	96	22.1
	대졸 이상	120	27.7
월수입	100만원 이하	69	15.9
	100만원~150만원	104	24.0
	150만원~200만원	92	21.2
	200만원~250만원	77	17.7
	250만원 이상	52	12.0
	무응답	40	9.2
	합계	434	100.0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이 119명(27.4%)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부는 72명(16.6%), 사무직은 61명(14.1%), 공무원은 45명(10.4%), 농어민은 38명(8.8%), 학생은 35명(8.1%), 기타는 27명(6.2%), 전문직은 19명(4.4%), 생산직은 18명(4.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 175명(40.3%)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졸 이상은 120명(27.7%), 전문대졸은 96명(22.1%), 중졸 이하는 43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100~150만원 이하는 104명(2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0~200만원은 92명(21.2%), 200~250만원은 77명(17.7%), 100만원 이하는 69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2. 지역경찰제에 대한 인지

지역주민은 지역경찰제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48>과 같다.

<표 48> 지역경찰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

	전혀 모른다	들어본 것 같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무응답	합계
빈도	46	101	213	72	2	434
비율(%)	10.6	23.3	49.1	16.6	0.5	100.0

지역주민은 지역경찰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들어본 것 같다’는 23.3%,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16.6%, ‘전혀 모른다’는 10.6%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찰제에 관해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에 따라 순찰지구대의 인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9>와 같다.

<표 49> 지역경찰제에 대한 인지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279	2.91	.79	43.478	.000
	여자	153	2.37	.89		
	합계	432	2.72	.87		
연령	20대	62	2.26	.89	7.989	.000
	30대	114	2.71	.77		
	40대	154	2.87	.81		
	50대 이상	102	2.78	.94		
	합계	432	2.72	.87		
직업	전문직	19	2.68	1.11	4.645	.000
	사무직	61	2.75	.70		
	공무원	45	3.02	.72		
	자영업(서비스업)	118	2.86	.85		
	농어민	37	3.03	.90		
	생산직	18	2.83	.38		
	주부	72	2.39	.90		
	학생	35	2.31	.96		
	기타	27	2.44	.85		
	합계	432	2.72	.87		
학력	중졸 이하	43	2.49	1.03	1.576	.194
	고졸	173	2.79	.84		
	전문대졸	96	2.67	.83		
	대졸 이상	120	2.74	.86		
	합계	432	2.72	.87		
월수입	100만원 이하	69	2.28	1.03	8.259	.000
	100만원~150만원	104	2.65	.93		
	150만원~200만원	91	2.92	.73		
	200만원~250만원	76	2.83	.74		
	250만원 이상	52	3.02	.67		
	합계	392	2.73	.87		

<표 49>에서 성별, 연령, 직업, 월수입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00, 0.000, 0.000, 0.000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성별, 연령, 직업, 월수입에 따라 지역경찰제의 인지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의 인지에 차이가 나타나는 네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지역경찰제를 더 인지하고 있으며, 20대보다는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다. 즉 젊은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지역경찰제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농어민이 주부나 학생보다는 지역경찰제를 더욱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2004: 38)이 실시한 ‘지역경찰제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2004: 38)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이 지역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2%로 나타난 반면, ‘모르고 있다’는 의견은 63.8%로 나타나 일반국민 3명 중 1명 정도가 지역경찰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분석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순찰지구대의 인지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6.0%), 40대(45.1%),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56.4%),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경찰제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성별과 연령에 있어서는 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 순찰지구대의 위치에 대한 인지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에 따라 순찰지구대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차분석방법(Crosstab)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50>과 같다.

<표 50>에서 성별, 연령, 직업, 월수입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00, 0.001, 0.001, 0.000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성별, 연령, 직업, 월수입에 따라 순찰지구대의 위치를 인지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자가 순찰지구대의 위치를 알고 있는 비율이 44.7%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순찰지구대 위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연령에서는 20대가 순찰지구대의 위치를 알고 있는 비율이 51.6%로 높게 나타났다.

<표 50> 순찰지구대 위치에 대한 인지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χ^2	p-value	
성별	남자	빈도	66	213	279	20.410	.000
		%	23.7	76.3	100.0		
	여자	빈도	68	84	152		
		%	44.7	55.3	100.0		
	합계	빈도	134	297	431		
		%	31.1	68.9	100.0		
연령	20대	빈도	32	30	62	15.438	.001
		%	51.6	48.4	100.0		
	30대	빈도	36	78	114		
		%	31.6	68.4	100.0		
	40대	빈도	39	113	152		
		%	25.7	74.3	100.0		
	50대 이상	빈도	27	76	103		
		%	26.2	73.8	100.0		
	합계	빈도	134	297	431		
		%	31.1	68.9	100.0		
직업	전문직	빈도	7	12	19	25.828	.001
		%	36.8	63.2	100.0		
	사무직	빈도	17	44	61		
		%	27.9	72.1	100.0		
	공무원	빈도	7	37	44		
		%	15.9	84.1	100.0		
	자영업 (서비스업)	빈도	36	81	117		
		%	30.8	69.2	100.0		
	농어민	빈도	6	32	38		
		%	15.8	84.2	100.0		
	생산직	빈도	2	16	18		
		%	11.1	88.9	100.0		
	주부	빈도	30	42	72		
		%	41.7	58.3	100.0		
	학생	빈도	19	16	35		
		%	54.3	45.7	100.0		
	기타	빈도	10	17	27		
		%	37.0	63.0	100.0		
합계	빈도	134	297	431			
	%	31.1	68.9	100.0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합 계	χ^2	p-value	
학력	중졸이하	빈도	17	25	42	2.722	.432
		%	40.5	59.5	100.0		
	고졸	빈도	52	122	174		
		%	29.9	70.1	100.0		
	전문대졸	빈도	26	70	96		
		%	27.1	72.9	100.0		
	대졸이상	빈도	39	80	119		
		%	32.8	67.2	100.0		
합계	빈도	134	297	431			
	%	31.1	68.9	100.0			
월수입	100만원 이하	빈도	38	31	69	32.031	.000
		%	55.1	44.9	100.0		
	100~150만원	빈도	38	66	104		
		%	36.5	63.5	100.0		
	150~200만원	빈도	20	70	90		
		%	22.2	77.8	100.0		
	200~250만원	빈도	17	59	76		
		%	22.4	77.6	100.0		
	250만원 이상	빈도	8	44	52		
		%	15.4	84.6	100.0		
	합계	빈도	121	270	391		
		%	30.9	69.1	100.0		

직업에서는 학생이 54.3%로 순찰지구대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찰지구대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좀 더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부는 41.7%가, 전문직은 36.8%가 위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월수입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월수입을 가진 사람이 순찰지구대의 위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대와 학생을 제외하고는 순찰지구대의 위치를 모르고 있어 순찰지구대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주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우열·이정훈(2004 : 167)의 연구결과에서도 시민들이 순찰지구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순찰지구대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찰제에 대한 시민대상 홍보활동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들이 순찰지구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과거보다 좋은 제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순찰지구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20~40대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위의 분석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4. 치안센터에 대한 인지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에 따라 치안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차분석방법(Crosstab)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51>과 같다.

<표 51> 치안센터에 대한 인지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χ^2	p-value	
성별	남자	빈도	92	187	279	23.852	.000
		%	33.0	67.0	100.0		
	여자	빈도	87	65	152		
		%	57.2	42.8	100.0		
	합계	빈도	179	252	431		
		%	41.5	58.5	100.0		
연령	20대	빈도	38	24	62	21.472	.000
		%	61.3	38.7	100.0		
	30대	빈도	57	57	114		
		%	50.0	50.0	100.0		
	40대	빈도	48	105	153		
		%	31.4	68.6	100.0		
	50대 이상	빈도	36	66	102		
		%	35.3	64.7	100.0		
	합계	빈도	179	252	431		
		%	41.5	58.5	100.0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χ^2	p-value	
직업	전문직	빈도	8	11	19	25.828	.001
		%	42.1	57.9	100.0		
	사무직	빈도	29	32	61		
		%	47.5	52.5	100.0		
	공무원	빈도	16	28	44		
		%	36.4	63.6	100.0		
	자영업 (서비스업)	빈도	43	75	118		
		%	36.4	63.6	100.0		
	농어민	빈도	5	32	37		
		%	13.5	86.5	100.0		
	생산직	빈도	6	12	18		
		%	33.3	66.7	100.0		
	주부	빈도	39	33	72		
		%	54.2	45.8	100.0		
학생	빈도	21	14	35			
	%	60.0	40.0	100.0			
기타	빈도	12	15	27			
	%	44.4	55.6	100.0			
합계	빈도	179	252	431			
	%	41.5	58.5	100.0			
학력	중졸 이하	빈도	19	24	43	1.911	.591
		%	44.2	55.8	100.0		
	고졸	빈도	67	106	173		
		%	38.7	61.3	100.0		
	전문대졸	빈도	38	58	96		
		%	39.6	60.4	100.0		
	대졸 이상	빈도	55	64	119		
		%	46.2	53.8	100.0		
합계	빈도	179	252	431			
	%	41.5	58.5	100.0			
월수입	100만원 이하	빈도	39	30	69	11.808	.019
		%	56.5	43.5	100.0		
	100~150만 원	빈도	45	59	104		
		%	43.3	56.7	100.0		
	150~200만 원	빈도	30	61	91		
		%	33.0	67.0	100.0		
	200~250만 원	빈도	30	45	75		
		%	40.0	60.0	100.0		
250만원 이상	빈도	16	36	52			
	%	30.8	69.2	100.0			
합계	빈도	160	231	391			
	%	40.9	59.1	100.0			

<표 51>에서 성별, 연령, 직업, 월수입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00, 0.000, 0.001, 0.019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성별, 연령, 직업, 월수입에 따라 치안센터의 인지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자가 치안센터를 더 인지하고 있으며, 연령에서는 20대가 치안센터를 더 잘 인지하고 있다. 직업에서는 순찰지구대의 위치 인지와 같이 주부와 학생이 치안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서도 순찰지구대의 위치 인지와 같이 100만원 이하의 월수입을 가진 사람이 치안센터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역의 치안여건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은 지역경찰제 시행 후 지역의 치안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52>와 같다.

<표 52> 지역 치안여건의 변화여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치안여건의 정도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	보통이다	양호하다	매우 양호하다	무응답	합계
빈도	14	63	225	108	21	3	434
비율(%)	3.2	14.5	51.8	24.9	4.8	0.7	100.0
순찰활동의 목격 정도							
	전혀 목격하지 못한다	목격하지 못한다	예전과 같다	목격한다	자주 목격한다	무응답	합계
빈도	11	70	141	127	82	3	434
비율(%)	2.5	16.1	32.5	29.3	18.9	0.7	100.0
범죄예방효과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별 차이가 없다	대체로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무응답	합계
빈도	9	66	209	124	23	3	434
비율(%)	2.1	15.2	48.2	28.6	5.3	0.7	100.0

<표 52>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치안여건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는 의견이 51.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호하다’는 의견이 29.7%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관의 순찰활동을 얼마나 목격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예전과 같다’는 응답이 32.5%였고, ‘목격한다’는 응답이 48.2%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할지역내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효과적이다’는 응답이 33.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찰제 시행 후 지역 치안여건의 변화에 대해 지역주민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의 ‘지역경찰제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찰제 시행 후 범죄 예방활동(순찰활동) 강화도에 대해 일반국민 10명 중 5명(47.8%) 정도가 ‘강화되었다’는 응답(매우 강화됨 3.2%, 다소 강화됨 44.6%)을 보인 반면, ‘약화되었다’는 응답은 6.6% (과거보다 매우 약화됨 0.2%, 과거보다 다소 약화됨 6.45%)에 불과해 경찰관의 범죄예방활동이 과거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경찰청, 2004: 51).

또한 지역경찰제 운영효과 및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범죄대응능력 향상도에 대해 과거보다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과거와 비슷하다’는 태도 유보적 의견 또한 높게 나타나 위의 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경찰청, 2004: 47).

이 연구결과와 경찰청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지역경찰제의 시행으로 지역의 치안여건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에 따라 순찰지구대 시행 후 지역의 치안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53>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지역의 치안여건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지역의 치안여건에 대한 인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279	3.30	.81	1.171	.280
	여자	153	3.21	.69		
	합계	432	3.27	.77		
연령	20대	62	3.13	.72	1.338	.261
	30대	114	3.22	.71		
	40대	154	3.35	.79		
	50대 이상	102	3.27	.82		
	합계	432	3.27	.77		
직업	전문직	19	3.46	.89	1.296	.244
	사무직	61	3.22	.74		
	공무원	45	3.41	.77		
	자영업(서비스업)	118	3.33	.76		
	농어민	37	3.38	1.00		
	생산직	18	3.35	.65		
	주부	72	3.13	.70		
	학생	35	3.05	.76		
	기타	27	3.17	.64		
	합계	432	3.27	.77		
학력	중졸 이하	43	3.26	.79	.541	.654
	고졸	173	3.21	.79		
	전문대졸	96	3.31	.73		
	대졸 이상	120	3.31	.77		
	합계	432	3.27	.77		
월수입	100만원 이하	69	3.26	.71	.645	.631
	100만원~150만원	104	3.32	.72		
	150만원~200만원	91	3.34	.72		
	200만원~250만원	76	3.18	.81		
	250만원 이상	52	3.34	.95		
	합계	392	3.29	.77		

6.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의 만족도

지역주민은 범죄신고 및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54>와 같다.

<표 54>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의 개선여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112신고의 개선여부	빈도	13	40	235	121	21	4	434
	비율(%)	3.0	9.2	54.1	27.9	4.8	0.9	100.0
현장도착시간 의 감소	빈도	21	41	208	136	23	5	434
	비율(%)	4.8	9.4	47.9	31.3	5.3	1.2	100.0

지역주민에게 112신고 출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는 응답이 32.7%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건·사고발생 후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감소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36.6%로 나타났다.

정우열·이정훈(2004: 168)의 연구결과에서도 사건·사고발생의 처리시간 감소, 사건·사고신고 후 현장도착시간 감소에 대한 시민의 입장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에 따라 순찰지구대 시행 후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에 만족하는지를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55>와 같다.

<표 55>에서 월수입의 p-value를 보면 0.041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월수입에 따라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5〉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의 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279	3.23	.83	.000	.991
	여자	151	3.23	.64		
	합계	430	3.23	.77		
연령	20대	61	3.13	.76	1.063	.364
	30대	113	3.16	.77		
	40대	154	3.29	.76		
	50대 이상	102	3.26	.79		
	합계	430	3.23	.77		
직업	전문직	19	3.53	1.05	1.638	.112
	사무직	61	3.05	.86		
	공무원	44	3.30	.82		
	자영업(서비스업)	117	3.33	.69		
	농어민	37	3.36	.99		
	생산직	18	3.22	.79		
	주부	72	3.13	.53		
	학생	35	3.07	.79		
	기타	27	3.15	.62		
합계	430	3.23	.77			
학력	중졸 이하	43	3.33	.61	.271	.847
	고졸	173	3.22	.77		
	전문대졸	95	3.21	.67		
	대졸 이상	119	3.23	.89		
	합계	430	3.23	.77		
월수입	100만원 이하	69	3.22	.64	2.510	.041
	100만원~150만원	104	3.33	.74		
	150만원~200만원	90	3.36	.71		
	200만원~250만원	76	3.01	.92		
	250만원 이상	51	3.23	.88		
	합계	390	3.24	.78		

지역경찰제 시행 후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에 대한 의견차이가 나타나는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150~200만원의 월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200~250만원의 월수입을 가진 사람보다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수입이 적은 사람들이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우열·이정훈(2004: 169-170)의 연구에서는 특히 사건, 사고발생의 처리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학력별 비교에서도 고졸과 대졸은 보통 이하로 답하였으나, 중졸은 긍정적으로 답하여 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7. 경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역주민은 경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56>과 같다.

<표 56> 경찰관 서비스의 만족여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치안서비스의 만족도	빈도	10	46	241	107	28	2	434
	비율(%)	2.3	10.6	55.5	24.7	6.5	0.5	100.0
친절도	빈도	12	50	203	139	27	3	434
	비율(%)	2.8	11.5	46.8	32.0	6.2	0.7	100.0

지역주민이 느끼는 경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는 의견은 31.2%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관의 친절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는 응답이 38.2% 나타났다.

경찰청의 ‘지역경찰제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찰제 시행 후 대민 봉사활동 향상 정도에 대해서 긍정적 견해가 31.3%, 부정적 견해가 6.3%로 나타나 긍정적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과거와 비슷하다’는 의견은 62.0%로 위의 분석결과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은 경찰관의 대민봉사활동의 향상도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경찰청, 2004: 53).

또한 경찰관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관의 근무태도의 변화에 대해 ‘좋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37.1%, ‘나빠졌다’는 부정적 평가가 4.1%로 나타나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과거와 비슷하다’는 태도인 유보적 응답은 58.1%로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경찰청, 2004: 65).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경찰관의 친절도 변화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슷하다’(54.0%)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절해졌다’는 평가가 42.0%,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3.1%로 나타나 친절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의 분석과 조금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경찰청, 2004: 67).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에 따라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관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57>과 같다.

<표 57>에서 연령, 직업, 월수입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19, 0.000 0.000으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 직업, 월수입에 따라 경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즉 치안서비스의 만족도와 경찰관의 친절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의견차이가 나타나는 세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연령에서는 40대가 30대보다 경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농어민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이 25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그 외 다른 사람들보다 경찰관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우열·이정훈(2004: 168)의 연구결과에서는 지역경찰제 도입 후 서비스 편익 및 개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경찰은 더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시민은 부정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지역경찰제의 도입이 지역경찰제의 목적 중 하나인 주민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경찰제의 본래 목적과 제대로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57> 경찰관의 서비스 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279	3.29	.81	2.031	.155
	여자	153	3.18	.69		
	합계	432	3.25	.77		
연령	20대	62	3.12	.72	3.350	.019
	30대	114	3.11	.73		
	40대	154	3.36	.80		
	50대 이상	102	3.33	.78		
	합계	432	3.25	.77		
직업	전문직	19	3.24	.98	4.361	.000
	사무직	61	3.10	.74		
	공무원	44	3.61	.79		
	자영업(서비스업)	119	3.24	.72		
	농어민	38	3.72	.87		
	생산직	18	3.14	.76		
	주부	72	3.15	.65		
	학생	35	3.00	.73		
	기타	26	3.10	.74		
합계	432	3.25	.77			
학력	중졸 이하	43	3.22	.71	.144	.933
	고졸	174	3.27	.83		
	전문대졸	96	3.21	.67		
	대졸 이상	119	3.26	.78		
	합계	432	3.25	.77		
월수입	100만원 이하	69	3.19	.63	7.064	.000
	100만원~150만원	104	3.15	.74		
	150만원~200만원	91	3.31	.67		
	200만원~250만원	77	3.10	.82		
	250만원 이상	51	3.75	.92		
	합계	392	3.26	.77		

7. 범죄두려움의 정도

지역주민은 얼마나 범죄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58>과 같다.

<표 58>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인식여부

	매우 두렵다	두렵다	보통이다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무응답	합계
빈도	10	62	244	97	18	3	434
비율(%)	2.3	14.3	56.2	22.4	4.1	0.7	100.0

<표 58>에서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다.

정우열·이정훈(2004: 169)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역경찰제 시행 후 시민들이 범죄두려움을 여전히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에 따라 지역경찰제 시행 후 범죄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59>와 같다.

<표 59>에서 성별, 연령, 직업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10, 0.032, 0.044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범죄두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 시행 후 지역에서 범죄두려움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에 대한 의견차이가 나타나는 세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20대 사람들보다 범죄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에서는 농어민들이 기타 직업의 사람들보다 범죄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우열·이정훈(2004: 169)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역경찰제 시행 후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생활의 빈도가 적은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표 59> 범죄두려움의 정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278	3.19	.83	6.735	.010
	여자	153	2.99	.68		
	합계	431	3.12	.78		
연령	20대	62	2.95	.73	2.960	.032
	30대	114	3.01	.70		
	40대	154	3.18	.80		
	50대 이상	101	3.25	.85		
	합계	431	3.12	.78		
직업	전문직	19	3.21	.79	2.008	.044
	사무직	61	2.97	.71		
	공무원	44	3.16	.75		
	자영업(서비스업)	118	3.25	.78		
	농어민	38	3.32	1.04		
	생산직	18	3.28	.57		
	주부	72	2.97	.67		
	학생	35	2.86	.81		
	기타	26	3.08	.89		
	합계	431	3.12	.78		
학력	중졸 이하	42	3.21	.87	.774	.509
	고졸	174	3.10	.84		
	전문대졸	96	3.19	.70		
	대졸 이상	119	3.05	.73		
	합계	431	3.12	.78		
월수입	100만원 이하	69	2.94	.78	1.734	.142
	100만원~150만원	103	3.14	.77		
	150만원~200만원	91	3.23	.76		
	200만원~250만원	77	3.09	.73		
	250만원 이상	51	3.25	.93		
	합계	391	3.13	.79		

8.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은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60>과 같다.

<표 60>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대민접촉기회의 변화	빈도	32	125	188	76	10	3	434
	비율(%)	7.4	28.8	43.3	17.5	2.3	0.7	100.0
지역주민의 참여도에 대한 변화	빈도	59	136	168	50	16	5	434
	비율(%)	13.6	31.3	38.7	11.5	3.7	1.2	100.0
경찰에 대한 이미지변화	빈도	15	46	240	116	13	4	434
	비율(%)	3.5	10.6	55.3	26.7	3.0	0.9	100.0

지역주민은 경찰과의 관계에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민접촉기회의 증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6.2%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태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의견이 38.7%,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4.9%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관의 이미지가 더욱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보통이다’는 의견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는 응답이 29.7%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에 따라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에 만족하는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61>과 같다.

<표 61>에서 성별, 연령의 p-value를 보면 각각 0.034, 0.005로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 성별, 연령에 따라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정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1>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정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279	2.90	.77	4.547	.034
	여자	153	2.75	.62		
	합계	432	2.85	.72		
연령	20대	62	2.70	.56	4.328	.005
	30대	114	2.70	.68		
	40대	154	2.96	.76		
	50대 이상	102	2.92	.76		
	합계	432	2.85	.72		
직업	전문직	19	2.91	.75	1.179	.310
	사무직	61	2.78	.73		
	공무원	44	2.89	.84		
	자영업(서비스업)	119	2.87	.74		
	농어민	38	3.11	.84		
	생산직	18	2.88	.64		
	주부	72	2.73	.62		
	학생	35	2.71	.64		
	기타	26	2.83	.55		
	합계	432	2.85	.72		
학력	중졸 이하	43	2.91	.69	.146	.932
	고졸	174	2.84	.77		
	전문대졸	96	2.84	.68		
	대졸 이상	119	2.84	.69		
	합계	432	2.85	.72		
월수입	100만원 이하	69	2.85	.60	.850	.494
	100만원~150만원	104	2.84	.71		
	150만원~200만원	91	2.90	.66		
	200만원~250만원	77	2.77	.77		
	250만원 이상	51	3.01	.94		
	합계	392	2.86	.73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의견차이가 나타나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40대, 50대 사람들이 20대, 30대 사람들보다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결과와는 반대로 정우열·이정훈(2004: 169)의 연구결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주민과의 협조, 경찰에 대한 친근감, 주민참여의 증대 등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신뢰관계가 증진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지역경찰제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은 지역경찰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62>와 같다.

<표 62> 지역경찰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매우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한 편이다	매우 적합하다	무응답	합계
빈도	26	90	199	95	21	3	434
비율(%)	6.0	20.7	45.9	21.9	4.8	0.7	100.0

지역주민은 지역경찰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의견이 45.9%로 나타났고, ‘적합한 편이다’는 의견이 26.7%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에 따라 지역경찰제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분산분석(ANOVA)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63>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지역경찰제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지역경찰제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에서는 “기존 파출소제도에 비해 현재의 지역경찰제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72.2%(매우 효율적 3.6%, 대체로 효율적인 편이 68.6%), ‘비효율적’이라는 지

적이 25.6%(전혀 효율적이지 못함 1.5%,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편 24.1%)로 나타나 효율적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경찰청, 2004: 45).

<표 63> 지역경찰제의 적합성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성별	남자	278	2.97	.99	.266	.606
	여자	153	3.02	.82		
	합계	431	2.99	.93		
연령	20대	62	3.06	.81	.759	.518
	30대	114	3.00	.89		
	40대	154	3.03	.97		
	50대 이상	101	2.87	.99		
	합계	431	2.99	.93		
직업	전문직	19	3.58	.90	1.833	.069
	사무직	61	2.92	1.05		
	공무원	44	2.86	1.11		
	자영업(서비스업)	118	3.06	.91		
	농어민	38	2.95	1.01		
	생산직	18	3.28	.75		
	주부	72	2.83	.69		
	학생	35	3.06	.97		
	기타	26	2.81	.80		
합계	431	2.99	.93			
학력	중졸 이하	42	2.81	.94	1.909	.127
	고졸	174	2.91	.94		
	전문대졸	96	3.15	.81		
	대졸 이상	119	3.03	1.00		
	합계	431	2.99	.93		
월수입	100만원 이하	69	3.14	.91	1.183	.318
	100만원~150만원	103	3.02	.85		
	150만원~200만원	91	3.10	.87		
	200만원~250만원	77	2.84	.95		
	250만원 이상	51	2.96	1.23		
	합계	391	3.02	.94		

10. 지역경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요망사항

지역경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입장에서 바라는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질문한 결과 첫째, 순찰강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지역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순찰해 줄 것을 바라며, 순찰횟수도 늘려 주었으면 하고 있었다.

둘째, 순찰활동과 더불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파출소 때보다 경찰관과의 접촉기회가 줄어들면서 경찰관과 지역주민간의 협조와 화합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쉽게 경찰활동에 협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접촉의 기회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응답률은 적었지만 매우 중요한 지적으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였다. 지역주민의 지역경찰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경찰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응답으로는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편리한 순찰지구대를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교통단속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안내경찰관을 배치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항상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경찰관의 봉사정신 강화라 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이든 자신이나 가족일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경찰상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었다.

정우열·이정훈(2004: 173)의 연구결과에서는 시민들이 안정감 있는 치안활동을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의 답변과 유사하게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접촉기회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먼저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41.9%, ‘전혀 모른다’는 2.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행배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0대 이상, 경위 이상의 경찰관,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경찰관,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경찰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경찰관이 시행배경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경찰제가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인력소진문제 해결하려는 의도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력 분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34.8%, ‘예방순찰활동을 개선하려는 의도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보통이다’는 응답이 31.9%, ‘행정업무수행에 대한 과중함을 해결하려는 의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보통이다’는 응답이 33.5%, ‘국민신뢰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의 질문에서 ‘보통이다’는 응답이 40.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순찰지구대의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아직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는 지역경찰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경감 이상의 경찰관, 근무경력이 15년 미만인 경찰관,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이 지역경찰제가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32.1%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5-10년, 10-15년 근무경력을 가진 경찰관,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사명감이 높은 경찰관이 지역경찰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112신고 출동의 개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 즉 개선되었다고 생

각하는 경찰관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즉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찰관이 29.4%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감 이상의 경찰관,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사명감이 높은 경찰관이 개선여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업무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보통이다’는 의견은 31.5%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경찰관, 근무경력이 5-10년인 경찰관이 업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근무시간 및 휴무일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업무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지역사회과의 곤란과 치안정보수집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여섯째, 근무형태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현재 교대형태에서 다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는 의견이 20.5%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고졸, 경위 이상의 경찰관, 사무소장 및 지구대장, 사명감이 대체로 높은 경찰관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근무교대방식으로는 변형 B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50대 이상, 고졸, 경위 이상의 경찰관, 경찰서장 및 생활안전과장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맞은 근무교대시간은 몇 시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현행(19:00-9:00) 시차제근무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곱째,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우선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6.2%로 가장 많았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30.7%로 나타나 시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순경과 경장 등 비간부급 경찰관, 5년 미만-15년 미만까지의 근무경력을 가진 경찰관, 민원담당관,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이 시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설로는 휴게시설, 샤워실이나 탈의실 등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이 5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는 의견이 20.2%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확충되어야 할 장비로는 순찰차의 증차, 범죄자 제압 가능한 무기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존 파출소와 방법초소 등의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통이다’는 의견이 46.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6.2%로 나타났다. 그 활용방안으로는 자율방법대 초소, 청소년공부방, 지역주민 회의장 등이 제시되었다.

여덟째,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친절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의견이 42.3%, ‘보통이다’는 의견이 40.1%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 사명감이 높은 경찰관이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홉째, 치안센터의 존속여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28.8%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담당관이 두드러지게 치안센터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심야시간대 치안센터의 폐쇄에 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찬성하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치안센터의 근무인원은 1~3명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치안센터의 업무개선사항으로는 소재수사 및 통고서 등의 민원처리, 주민불편사항과약, 경찰활동홍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열째,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민접촉기회의 증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는 의견이 33.3%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태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8.9%, ‘보통이다’는 의견이 38.4%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의 이미지변화에 있어서 ‘보통이다’는 의견이 61.4%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대졸 이상, 순경, 경장, 경사, 경감 이상, 근무경력 5년 미만~15년 미만까지,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열 하나째, 지역경찰제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는 의견이 33.5%로 나타났고, ‘적절한 편이다’는 의견이 32.1%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

이를 살펴보면 20대, 순경과 경장, 근무경력 5년 미만~15년 미만 경찰관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의 파출소제도로의 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경위계급을 제외하고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제의 개선사항으로는 인력충원과 시설 및 장비확충을 가장 많이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찰제의 인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의견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들어본 것 같다’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 즉 중장년층,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농어민이 지역경찰제를 더욱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찰지구대의 위치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자, 20대, 학생, 100만원 이하의 월수입을 가진 사람이 순찰지구대의 위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안센터의 인지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대, 주부와 학생, 100만원 이하의 월수입을 가진 사람이 치안센터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의 치안여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는 의견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호하다’는 의견이 24.9%로 나타났다. 순찰지구대 시행 후 경찰관의 순찰활동을 얼마나 목격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예전과 같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목격한다’는 응답이 29.3%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할지역내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효과적이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찰제 시행 후 지역의 치안여건에 대해 지역주민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지역의 치안여건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27.9%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건·사고발생 후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감소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31.3%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150-200만원의 월수입을 가

진 사람들이 그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은 24.7%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관의 친절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32.0%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40대, 농어민과 전문직 사람들, 월수입 25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범죄두려움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22.4%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50대, 농어민들이 범죄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민접촉기회의 증대에 대해서 ‘보통이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8.8%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태도에 대해서 ‘보통이다’는 의견이 38.7%,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1.3%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의 이미지가 더욱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보통이다’는 의견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26.7%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40-50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점이나 개선 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질문한 결과 순찰강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순찰활동과 더불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제5장 결론 -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제언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권과 자율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찰활동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지역경찰제가 기존의 파출소제도보다 범죄예방 및 진압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경찰관과 전문가 사이에서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 지역경찰제는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 바와 같이 실시 의도와는 달리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경찰관의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인식이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을 변경하는 것은 형식적인 변화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다(이상원·이승철, 2004: 129).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도의 변화만이 아닌 지역경찰제가 본래 의도했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제4장의 분석결과와 연계시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제1절 효율적인 인력배치

지역경찰의 인력이 전체 경찰인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²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경찰인력이 치안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회활동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이 일선 순찰활동에 두는 비중이 적은 것이며, 동시에 기능적 인력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진재구, 2002: 230).

순찰기능이 경찰업무의 중추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찰인력을 순찰기능에 좀더 많이 분배시켜야 하며, 현재 경찰조직도 이에 합당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내근경찰인력을 축소시켜 순찰지구대의 순찰요원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24) 전체 경찰인력 92,165명 중 39,790명(전체 경찰인력의 43.2%)이 순찰지구대, 치안센터, 특수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다.(경찰위원회, 2005: 99; 경찰청, 2004: 343)

이와 같이 순찰기능에 중점을 두는 경찰인력배치의 개선은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안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경찰실무자들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찰관 1인당 담당구역 및 주민책임량이 많으므로 무엇보다 경찰인력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경찰인력이 있다면 이를 조정된 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경찰인력의 충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원된 인력도 기획부서보다는 순찰지구대나 치안센터에 배치시켜 범죄억제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경찰인력을 확충한 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 본래의 목적달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인력이 충원된다면 순찰요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치안센터의 인력충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취약지대나 취약시간대에 인원을 더 보강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내의 최일선에서 외근경찰임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관은 관내의 지리적 상황, 관내 주민의 동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관내의 치안상황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여 그 지역사정에 밝아야 한다. 그러나 순찰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는 기존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배치순환주기가 너무 짧다는 점이었다(임준태, 2002: 163). 파출소 근무자의 인사이동주기는 평균 1년이 안 되었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인사발령은 자기업무에 대한 장인정신이나 책임의식을 갖기 어렵게 한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리에서 업무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에 정통하고 서비스정신에 투철한 경찰을 양성하는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잦은 인사발령은 지양해야 한다. 순찰지구대 근무자로 경찰경과를 두루 경험한 노련한 경찰관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신규임용자들이 대부분 순찰지구대에 배치되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순찰지구대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안정감과 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있는 경찰관을 배치시켜야 할 것이다(최응렬, 2000: 586-587).

제2절 순찰지구대의 적정 배치 및 치안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1. 순찰지구대의 적정 배치

도시화의 정도나 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파출소 운영에서 벗어나 파출소 유형을 다양화하고 전문화시키는 방안으로 지역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의 순찰지구대의 관할 구역 편성은 관할구역의 인구, 치안수요, 예산과 가용능력, 지역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파출소제도 때와 마찬가지로 편의상의 행정구역 단위를 중심으로 전국 모든 경찰서의 파출소를 아무런 기준 없이 인접 파출소 3~4개를 통합하여 하나의 순찰지구대로 편성함으로써 치안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대도시의 모델인 도시형의 경우에도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순찰지구대를 편성하다보니 업무의 가중 정도가 다르다(이상원·이승철, 2004: 123). 따라서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를 관할구역의 인구밀도, 유동인구, 범죄율 및 범죄다발지역, 교통상황 등과 같은 치안수요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도시형을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나누어 전자는 주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후자는 유흥가, 상가밀집지역이나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인력과 장비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균등화와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원·이승철, 2004: 126).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적정 배치를 논하면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3월부터 경찰청에서는 GIS도입을 추진, 기존의 사건수사시스템과 연계한 범죄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다. 범죄예측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찰은 범죄지도를 범죄분석과 치안활동에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범죄예측시스템의 지도분석은 범죄발생지점표시에 지나지 않으며, 통계분석도 빈도분석이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여 GIS를 경찰업무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이현희, 2001: 293).

GIS의 가장 큰 효과는 수사 및 방법활동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시간

범죄통계와 범죄다발지점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경찰서 단위의 범죄대책회의의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파출소의 주민서비스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GIS를 기초로 범죄다발지역이나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순찰지구대 사무소나 치안센터의 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제 지역경찰제의 운영에도 과학적 접근법이 필요한 때이다. 교통상황, 범죄발생빈도 등 기본적인 현황에서부터 거주인구와 유동인구의 변화, 주거·상업시설 분포에 따른 지역별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송형국·김정선, 2003: 17). 다시 말해, 종합 치안수요지표를 만들어 이에 따라 순찰지구대를 다시 편제하여 과학적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습 교통정체구간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은 순찰근무보다 거점근무를 강화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치안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심점이 되는 곳은 치안센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지역경찰제는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순찰팀으로 기울어져서 치안센터로 전환된 파출소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다. 따라서 치안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치안센터를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사례로는 오늘날 동사무소가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사무소에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파출소도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지역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이나 독서실 등 대민시설로 활용하거나 파출소 내부를 일부 개조하여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사용하거나 나머지 공간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원담당관의 일근근무체제를 24시간 근무체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는 순찰지구대나 경찰서의 소내 근무자들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치안센터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협력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치안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치안센터의 민원담당관은 경찰활동을 홍보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며, 경찰협력단체를 관리하는 등 경찰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제해결, 범죄예방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는 등 범죄 관련 정보 제공활동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다(조강원, 2004: 149).

제3절 시설 및 장비확충

지역경찰제는 관련 시설의 확충 없이 서둘러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지역경찰제는 기존 파출소에 비해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3~4개 파출소의 인력 및 시설들을 한 순찰지구대에서 관리하다보니 시설 및 장비의 확충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인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방범자원들의 관리 및 보관 등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즉 면적이 협소한 이전의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늘어난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출소 직원들이 집단조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 휴식 등을 하는데 있어 불편이 따르고 있다.

둘째, 파출소가 통폐합된 뒤 사용하지 않는 일부 파출소가 방치돼 국가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파출소의 통폐합으로 인해 현재 방치되고 있는 파출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어느 한 지구대에서는 관찰내에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의 전기세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폐쇄된 파출소를 매각한 돈으로 좁은 순찰지구대를 넓히는데 사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국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매각되면 우선 국가에 귀속돼버리기 때문에 처리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김장환, 2004: 21).

셋째, 지역경찰제가 운영되면서 기존에 파출소 경찰관이 방범활동을 하면서 이용하던 방범초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다. 탄탄한 방범력을 보여줘

야 할 방법초소에는 창문이 깨어져 있고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흉물로 변해 버려 그 지역의 구멍 난 방법활동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파출소의 시설이나 장비를 순찰지구대에 맞게 조정해 주지 않으면 직원들의 불평이 늘어나 지역경찰제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근무여건향상을 위해 시설들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지역경찰제의 시행을 위해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경찰관들이 효율적으로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4절 다양한 순찰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적극적인 시행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 범죄자의 검거를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 경찰활동을 지양하고, 범죄의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전적 경찰활동을 지향한다고 할 때 지역경찰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박철현, 2004: 21). 이상원·이승철(2004: 122)은 지역경찰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현재의 파출소제도의 틀만 바뀌었지 지역경찰제의 근본정신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순찰지구대 제도는 매우 전형적인 사후적인 경찰활동의 강화로 볼 수 있고, 특히 24시간 근무체제였던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한다는 지역경찰제는 범죄예방 및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범죄의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전적 경찰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찰관의 방법활동은 시민·관계기관·단체와 유기적인 연락·협조체제를 이루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추진되어야 한다(최응렬, 2000: 575).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오늘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해 지역경찰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경찰제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에 맞는 순찰활동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순찰지구대 업무의 경감

순찰지구대와 경찰서를 비교해 보면, 순찰지구대가 마치 경찰서의 하부기관처럼 되어 있다. 순찰지구대의 업무 중에는 실제로 경찰서에서 집행해야 할 업무나 보고 문서량이 많이 부과되어 있으며, 순찰지구대에서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종전의 파출소에서 수행하던 교통단속, 기소중지자 검거, 각종 보고의무 등과 교통, 수사, 정보 등 경찰서의 많은 제조사 업무가 그대로 순찰지구대로 이관되어 2명의 인원으로 처리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있다. 즉 경찰서에서 수행해야 하는 행정업무도 순찰지구대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순찰지구대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이 소홀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제의 도입 배경에서 파출소 본연의 기능 회복, 즉 예방순찰활동에 전념한다는 목적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이상원·이승철, 2004: 123).

따라서 경찰서 내에서 처리 가능한 행정업무는 순찰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관시켜 지역방범활동에 중점을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경찰서 생활안전계와 순찰지구대 관리반의 기능을 통합해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각 순찰지구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관리반 인원을 치안센터로 배치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조강원, 2004: 164). 이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순찰요원에게 제 조사 등 업무이관을 금지시켜 순찰활동에만 주력할 수 있게 하여 직무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된다면 순찰지구대의 경찰관은 순수한 범죄예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로, 순찰지구대의 사소한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경찰서와 순찰지구대를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화상회의시스템은 요즘 청소년

들 사이에 유행하는 인터넷 화상채팅과 같이 경찰서장실, 생활안전과장실, 통신계, 각 순찰지구대에 모니터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각종 실무교양과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소재 31개 경찰서 중 최초로 강동경찰서에서 운영 중에 있다. 그 동안 각 순찰지구대에 전달사항이 있을 경우 직원들이 일일이 경찰서까지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으며, 근무교대시간 등 직원들이 모여 있을 때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착안한 발상이다(김장환, 2004: 21).

그리고 지금까지 범죄예방 차원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해 왔고, 이에 대한 활동은 형식적인 데 그쳐 왔다. 지금도 경찰 내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된 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경찰서에 생활안전과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과로 만들거나 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순찰지구대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들의 활동을 계획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치안센터와 연계를 맺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부서가 새로운 상전이 되어 현장의 소리보다 상부의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전담부서의 증설이 의도적인 중간계급층의 증원을 위한 것으로 보여 하위계급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역사회경찰관 교육, 그리고 대주민 교육 및 홍보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http://www.prefecture-police-paris.interieur.gouv.fr/co-nnaitre/reforme/reportage.htm>).

2. 도보순찰과 차량순찰 등 다양한 순찰활동의 시행

범죄예방을 위한 최선의 수단인 순찰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며 지역주민에게 안도감을 준다. 정복차림으로 거리에 나섬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에게 안도

감을 주는 효과는 매우 크다. 그리고 외근경찰관이 주의력·관찰력을 가지고 왕성한 사명감으로 순찰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범죄예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찰을 통해 어떠한 사건이나 사안을 꼭 다루지 않더라도 그 잠재적인 효과는 높이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들이 방법 외적인 업무와 근무부담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순찰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경찰제는 방법순찰 강화에 목적을 두어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경찰행정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동력에 의한 광역적 경계와 범인 검거,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중심의 순찰과 함께 도보순찰 및 오토바이순찰, 방문순찰 등이 함께 행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범죄발생상황에서는 112순찰차량을 통한 활동이 더욱 효과적인 부분이 많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접촉이나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등을 위해 도보순찰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여 순찰지구대 순찰요원의 도보순찰근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도보순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도보순찰 근무시간 및 거리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보순찰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도보순찰에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미정, 2004: 67).

3. 범죄발생 시간대별·취약지대별 순찰활동의 강화

지역경찰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첫째, 순찰지구대의 업무량을 조정하여 그 기능을 순찰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와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둘째, 범죄발생상황의 분석을 토대로 범죄발생 시간대별·취약지대별 순찰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할지역내 주요 범죄발생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침입절도나 성범죄 등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범죄취약지대에 가로등을 좀

더 설치한다든지 유흥업소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별로, 그리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신고율이 높은 지역별로 방법활동의 횟수나 그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수를 다르게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지역경찰제를 통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경찰제가 지역실정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1.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의 중요성 인식

오늘날 경찰이 직면해 있는 과제는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긍정적이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로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역주민과 우호적인 관계유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경찰은 지역주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또한 경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윤성태, 1992: 3-4). 따라서 지역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하고,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들간의 관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것의 중요성을 지역주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은 지역주민에게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치안정보를 전달하여 이들의 도움을 구하려는 입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정진환, 1994: 108-111). 따라서 앞으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봉사, 곧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부서가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거나 지역주민과 유리된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지역주민은 서로 공존공영하며, 그 관계 속에서 언제나 공감대를 형성하여 애정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의 명령은 정의와 개인적인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해되어야 하며, 명령을 강요하는 경찰과 개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지역주민간의 관계는 종전의 민경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조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통목표를 나누어 가지려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송용선·이희선, 1999: 421).

2.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민·경 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치안은 전적으로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인식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독자적인 활동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게 되었다. 경찰서비스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까지 경찰 중심의 생산자 지향적인 공공관계로부터 벗어나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와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박영미, 2004: 233; 김용환, 1998: 126).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경찰활동에 협조하다가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지역주민이 경찰업무를 돕다가 다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 등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경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장이나 집회현장 등 인권보호가 취약한 곳을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인권보호 시민참관단제도’라든가 유괴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머니와 경찰관이 합동으로 검문검색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구혜영·박지연·이효연, 2003: 11).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민·경 협력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데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력활동이다. 이러한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 지역경찰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경찰제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위해 경찰관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해결하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범죄문제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다(이기현·임영철·기광도, 1995: 105; 이상원, 1997: 430; 채한수, 1997: 73). 또한 경찰은 지역주민 스스로 경찰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지 말고, 경찰활동 및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노호래, 2001: 166-167).

우선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과 신뢰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경찰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임창호, 2000: 237-239). 즉 경찰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여 올바른 기획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의 서비스 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치안활동을 위해 경찰은 봉사중심의 지역주민 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단속 및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조성호, 1998: 449). 또한 업무수행현장에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가 실현되도록 동기부여장치를 강구하여 바람직한 업무수행태도를 내면화하고 경찰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방법활동이나 범죄신고 등 경찰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이나 모범주민에게 수여되는 표창 등 적절한 보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보상체계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지역주민 스스로 모임을 가지고 접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웃 간의 화합과 결속만 갖추어져 있으면 지역사회내의 모든 활동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전대양, 1999: 228). 방법활동을 예로 들면, 효과적인 방법활동을 위해서는 주민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민경 간의 협력체제의 확립과 조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은 경찰 자체의 방법에 대한 개념을 시정하고, 지역주민에게 범죄예방과 피해방지가 경찰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협력이 절대적 요소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은 범죄자의 존재를 승인하고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로 이해시키고(김형청, 1991: 76), 지역주민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등의 의구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자위방법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주민의 책임의식이 전제되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때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3. 지역주민과의 긍정적인 접촉 강화

인간은 서로 접촉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소되고 호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지역주민과의 대민접촉을 통하여 상호간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긍정적인 접촉은 경찰의 친절성 및 지역주민의 협조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경찰은 민경관계에 있어 친절함을 통해 상호간의 문제나 오해 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에 중점을 두어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접촉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직은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남성의 직업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 우수한 여성들이 경찰관에 대거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수의 여경을 파출소에 배치시켜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김형청, 1991: 74-75). 이와 같이 여경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경찰관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지역주민에게 경찰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지역주민의 반경찰적 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노호래, 1998: 366).

결과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통한 민경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찰인원의 증원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6절 지역경찰제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은 경찰활동이나 제도 등에 관한 각종 시책이나 그 운영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실효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김충남, 2003: 72). 그러므로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경찰제에 대한 홍보활동은 평소 경찰활동에 개념치 않던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게 되며,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홍보활동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을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적극적인 관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민경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전용찬, 2000: 88-89). 따라서 앞으로 경찰서에서는 지역경찰제의 홍보활동을 통해 그것의 장점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이 경찰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찰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기본적으로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위치,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 등을 홍보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를 통해 직접 설명하거나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김충남, 2003: 72). 또한 지역 opinion leader에 대한 경찰관서장의 서한문 발송, 자치단체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반상회보, 지역에서 발간되는 소식지 등을 통해 경찰기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최종술, 2004: 562).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 강대형. (1991). 파출소단위 방법활동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5: 103-136.
- 경찰대학. (2000). 경찰방법론. 용인: 경찰대학.
- 경찰위원회. (2005. 1). 심의회보, 36. 서울: 경찰위원회.
- 경찰청. (2004. 7). 「지역경찰제」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 서울: 경찰청.
- . (2004).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 (2003. 7). 「참여정부」 경찰혁신의 성공을 위한 경찰계급별 인력구조 개선 방안. 서울: 경찰청.
- . (2003). 지역경찰 업무지침. 서울: 경찰청.
- 구혜영·박지연·이효연. (2003). 수평사회를 만들자 - 제3부 경찰과 시민: 경찰의 개선노력. 서울신문. 8. 19: 11.
- 김 렬. (2001).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정책연구의 원리-. 서울: 박영사.
- 김용관. (2000). 치안서비스의 효율적인 공동생산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주민의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제1기 경찰고위정책과정논문, 용인: 경찰대학.
- 김용환. (1998).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체적 활동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연구소.
- 김장환. (2004).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시간절약·효율 높여. 내일신문. 4. 21: 21.
- . (2004). 버려진 파출소 어떻게 활용할까 - 현황 폐쇄된 뒤 방치된 파출소 '계

- 특'. 내일신문. 1. 28: 21.
- 김정곤. (2003). 파출소 묶어 순찰지구대로 광역화 - 파출소 개혁사와 외국 사례. 한국일보. 7. 14: 16.
- 김충남. (2003).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41-76.
- 김형청. (1991).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호래. (200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1: 139-178.
- . (2000). 파출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37-74.
- . (1998). 경찰과 시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 337-371.
- 대구 달서경찰서. (2003. 5). 지역경찰 운영체계 혁신 시범운영 세부계획. 대구: 달서경찰서.
- 박길환. (1990). 첨단과학과 범죄수사. 형사정책연구, 3-4: 53-71.
- 박병식·주희중. (1997). 파출소 근무제도 및 순찰활동 개선 방안(연구보고서 97-05). 서울: 치안연구소.
- 박영미. (2004). 지역경찰활동의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217-236.
- 박은호·장세훈. (2003). 일반직 5·6급 정원 상향조정 안팎/하위직 인사적체 해소 '교육책'. 서울신문. 12. 26: 6.
- 박철현. (2004). 순찰지구대, 자치경찰, 그리고 수사권 독립. 형사정책연구소식, 85: 18-21.
- 석청호. (2003). 한국지역경찰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최근 바뀐 순찰지구대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6: 93-122.
- 송용선·이희선. (1999). 현대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공관계에 관한 연구. 논

- 문집, 36, 413-428.
- 송형국 · 김정선. (2003). 선택과 집중 - 취지 길도는 순찰지구대. 경향신문. 11. 3: 17.
- 유규창 · 남궁구. (1999). 경찰의 야간대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15: 2-111.
- 윤성태. (1992).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미시건주립대학.
- 이건중 · 전영실. (1994). 각 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기현 · 임영철 · 기광도. (1995). 미국경찰관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미정. (2004).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근거한 지역경찰제의 실행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47-73.
- 이상안 · 박범래 · 노승일 · 임학순 · 이은구. (1995). 파출소 방법활동체제 개선방안. 치안논총, 11: 55-119.
- 이상원 · 이승철. (2004). 지역경찰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8: 107-133.
- 이상원. (2000). 방법론. 서울: 대명출판사.
- 이상원. (1997). 한국경찰의 Community Policing(지역사회 경찰활동) 도입에 대한 전망. 경대 논문집, 17: 411-433.
- 이상원 · 최응렬. (1996).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법활동체제 연구(연구보고서 96-01). 서울: 치안연구소.
- 이성식. (2000).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133-159.
- 이현희. (2001). 경찰의 범죄분석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1: 291-322.
- 이황우. (1996).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 98-136.

- 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4). 경찰학개론.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준태. (2002). 파출소제도 개선과 순찰근무 효과성 강화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16: 126-175.
- 임창호. (2000). 한국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 223-250.
- 전대양. (1999). 새로운 치안수요와 경찰의 대시민서비스 전략. 사회과학논집, 4: 197-231.
- 전용찬. (2000). 경찰과 국민간의 관계개선에 관한 법정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정승민. (2002).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에 관한 연구: 이웃감시 프로그램의 운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정우열·이정훈. (2004). 순찰지구대 활동의 평가와 정책과제. 2004년 한국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57-176.
- 정진환. (2001). 비교경찰제도. 서울: 도서출판 책사랑.
- . (1994). 미국경찰론. 서울: 양영각.
- 조강원. (2004). 지역경찰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6: 118-180.
- 조성호. (1998). 경찰의 대국민 친절봉사상 저해요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 424-450.
- 진수명. (1995). 이웃감시활동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31: 19-20.
- 진재구. (2002). 경찰조직계층별 적정인력규모의 산정과 배분을 위한 기준의 설계. 국제문화연구, 20: 221-240.
- 채한수. (1997). 경찰과 국민간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인간관계적 고찰: 경찰의 임무수행을 중심으로. 한국인간관계학보, 2(1): 53-77.

- 최응렬. (2004). 순찰지구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지방자치, 195: 71-77.
- . (2000). 파출소방범활동체제의 개선방안. 추강 조용상박사 회갑기념논문집: 573-594.
- 최인섭·진수명. (1995).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회.
- 최인섭. (1994).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형사정책연구, 19: 81-130.
- 최종술. (2004). 광역적 순찰지구대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527-568.
- 최종태. (2000).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 293-317.
- 한국일보. (2003). 순찰지구대 도입 4개월. 11. 11: 19.
- 홍성삼. (1993a). 대단위 파출소 운영의 허와 실. 치안정책정보, 2: 1-4.
- . (1993b). 대범죄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관조직구조 개선방안. 치안논총, 10: 281-321.
- Skolnick, J. H., & Bayley, D. H. (2001). 지역사회 경찰활동: 각 국의 이슈 및 현황 (최선우 역). 서울: 집문당. (원서 1988년 발행)

II. 국외문헌

- Champion, D. J. & Rush, G. E. (1997). Policing in the Communit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Friedmann, R. R. (1992). Community Policing: Comparative Perspective and Prospects. New York: St. Martin's Press.
- Ganapathy, N. (2000). Conceptualising Community Polic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ology: A Singapore Perspective. Australian and New Zealand

- Journal of Criminology, 33(3): 266-286.
- Garofalo, J. & McLeod, M. (1989). The Structure and Operations of Neighborhood Watch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Crime and Delinquency*, 35(3): 326-344.
- Goldstein, Herman (1990). *Problem-Oriented Policing*.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 Gramckow, H. & Jacoby, J. (1993). *Community Policing: A Model for Local Government*. Holzkirchen/Obb.: Felix.
- Kessler, David A. (1999). The Effects of Community Policing on Complaints Against Officer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3): 333-372.
- Leighton, B. N. (1991) Visions of Community Policing: Rhetoric and Reality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3(July/October): 485-522.
- Liou, K. T. & Savage, E. G. (1996). Citizen Perception of Community Policing Impact. *PAQ Summer*: 163-179.
- Miller, L. S. & Hess, K. M. (1998). *Police in the community: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2nd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Peak, Kenneth J., Bradshaw, R. V. & Glensor, Ronald W. (1992). Improving citizen perceptions of the police: "Back to the basics" with a community policing strateg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 25-40.
- Radelet, L. A. & Cater, D. L. (1994). *The Police and The Community*(5th ed.).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 Rosenbaum, D. P. (1987). The Theory and Research Behind Neighborhood Watch: Is It a Sound Fear and Crime Reduction Strategy?. *Crime and Delinquency*, 33: 103-134.

- Shapland, J. & Nuttall, C. (1993). The State of Knowledge in the United Kingdom. In Philippe Robert(ed.), Crime and Prevention Policy, Max-Planck Institute.
- Torres, S. & Vogel, R. E. (2001). Pre and Post-test Differences between Vietnamese and Latino Residents involved in a Community Policing Experiment: Reducing Fear of Crime and Improving Attitudes towards the Polic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24: 40-55.
- Trojanowicz, R. C. & Bucqueroux, B. (1998). *Community Policing: How to Get Started*(2nd ed.). Cincinnati, Ohio: Anderson Publishing Company.
- Trojanowicz, R. C. & Carter, D. L. (1988). *The Philosophy and Role of Community Policing*.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 Trojanowicz, R. C., Kappeler, V. E., Gaines, L. K. & Bucqueroux, B. (1998).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Cincinnati, Ohio: Anderson Publishing Company.
- Walker, S. (1992).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 Webb, V. J. & Marshall, C. E. (1995). The Relative importance of Race and Ethnicity on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4(2): 45-66.
- Yarwood, R. & Edwards, B. (1995). Voluntary Action in Rural Areas: the Case of Neighborhood Watch. *Journal of Rural Studies*, 11: 447-459.
- Yates, D. L. & Pillai, V. K. (1996). Attitudes toward Community Policing: A Causal Analysis. *The Social Science Journal*, 33: 193-209.
- 守山正(譯). (1993). 1990年代が直面する犯罪豫防. *警察學論集*, 46(12): 96-121.

[부 록 : 설문지]

1. 경찰관 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치안연구소에서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우리나라 지역경찰제의 정착화에 활용될 것이오니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치안연구소

(449-70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88번지 전화 : 031-285-2616)

※ 문 의 :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최 응 렬 교수 (chr134@kmu.ac.kr)

주 소 :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학부

연락처 : (집) 053-267-7800, (연구실) 053-580-5134, (HP) 011-9577-5134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곳을 골라 V표 해 주십시오.

(특별한 말이 없는 한 각 문항에 대해서 한 곳에만 V표 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파출소체제가 지역경찰제로 바뀌었는데, 의도한 취지에 맞게 지역경찰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 (1) 파출소의 소규모·획일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 소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 맞게 지역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2) 행정구역별 파출소 운영으로 인한 경찰력 분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 맞게 지역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3) 경찰서의 일제단속이나 경호경비행사시 파출소 경력에 의존하여 파출소 본연의 예방순찰활동상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의도에 맞게 지역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4) 각종 문서처리와 보고 등 행정업무수행에 과중한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 맞게 지역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5) 파출소에서 규제와 봉사업무의 동시수행에 따른 대 국민 신뢰도 저하를 개선하려는 의도에 맞게 지역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6) 지역경찰제로 바뀐 후 관할지역 내의 범죄예방효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③ 별 차이가 없다
 - ④ 대체로 효과적이다 ⑤ 매우 효과적이다

(7) 지역경찰제로 운영된 후 112신고 출동이 더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다음은 순찰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1) 기존 파출소 때보다 지역경찰제 운영으로 인해 경찰의 업무관련요인들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지역경찰제로 변경된 후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행정업무량의 감소 ② 근무시간 및 휴무일 보장 ③ 지역사정 파악의 용이
④ 경찰관상호간 협조체제 증대 ⑤ 순찰활동의 강화

(3) 지역경찰제로 변경된 후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광범위한 관할구역으로 인해 치안정보수집의 어려움
② 112순찰차 위주의 순찰로 인한 지역사회 파악의 곤란
③ 타 기능 협조 및 지원으로 인한 경찰관 개개인의 책임감 결여
④ 과도한 근무시간 및 휴무일 보장의 미흡
⑤ 경찰서와 순찰지구대간의 업무 불확실성
⑥ 경찰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용

4. 다음은 순찰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1) 경찰관의 근무교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완전히 개선되어야 한다 ② 다소 개선되어야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문제는 있으나 개선할 필요까지는 없다 ⑤ 매우 만족한다

(2) 근무교대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A형(주간·야간·비번 순서로 3개조 1일 2교대 방식)
② B형(주간 5일 고정근무, 야간 당·비번제)

- ③ 변형 B형(주간 3일 고정근무, 야간 당·비번제)
- ④ C형(당번-비번-일근-당번-비번-휴무)
- ⑤ 기타

(3) 경찰관의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로 과중하다 ② 다른 보직의 업무보다 많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4) 근무교대시간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9:00 ~ 09:00(14시간 근무) ② 20:00 ~ 09:00(13시간 근무)
- ③ 21:00 ~ 09:00(12시간 근무) ④ 기타

5. 다음은 순찰지구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1) 기존 파출소 때보다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시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순찰지구대의 시설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1)-1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순찰지구대 시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확충되어야 할 시설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휴게시설 ② 샤워실 및 탈의실 ③ 직원용 캐비닛 ④ 체력단련실
- ⑤ 기타

(2)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데 현재의 순찰지구대에 구비된 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②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순찰지구대의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2)-1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 순찰지구대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더 갖추어져야 할 장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순찰차 증차 ② 범죄자 완전제압이 가능한 무기(예, 그물총) ③ 호신용 장비
④ 최첨단 무전기 ⑤ 기타

(3) 파출소를 통폐합시켜 순찰지구대로 되면서 남은 일부 파출소와 방범초소 등의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파출소가 통폐합된 후 사용되지 않는 파출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 공부방 ② 노인들의 사랑방 ③ 자율방범대초소
④ 반상회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회의장 ⑤ 기타

6. 다음은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께서는 경찰관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께서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치안서비스가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다음은 순찰지구대에 소속된 치안센터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께서는 치안센터의 존속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치 않다 ② 필요치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2) 귀하께서는 치안센터를 심야시간에 폐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폐쇄해서는 안 된다 ② 폐쇄하여도 괜찮다

(3) 현재 치안센터의 근무인원으로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3명 ② 4-6명 ③ 6-8명 ④ 8-10명 ⑤ 10명 이상

(4) 현재 치안센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소재수사 및 통고서 등 민원처리 ② 방법요령 교육 ③ 협력단체 관리
 ④ 관내 행사 참석 ⑤ 경찰활동 홍보 ⑥ 범죄정보 수집 ⑦ 주민 불편사항 파악
 ⑧ 기타(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지역경찰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인력 충원 ② 시설 및 장비의 확충 ③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마련
 ④ 범죄예방활동(특히, 도보순찰)의 강화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은 지역경찰제로 변경된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께서는 기존 파출소제도 때보다 지역경찰제로 변경된 후 대민접촉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께서는 기존 파출소제도 때보다 지역경찰제로 변경된 후 지역주민이 경찰기관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귀하께서는 기존 파출소제도 때보다 지역경찰제로 변경된 후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②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③ 보통이다
 ④ 긍정적인 바뀌었다 ⑤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10. 귀하께서는 지역경찰제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합하지 않다 ② 적합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합한 편이다 ⑤ 매우 적합하다

11. 지역경찰제로 변경된 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므로 기존 파출소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11-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사항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대재) ④ 대학원졸(대학원 재학)

(4) 귀하의 직급은?

-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⑦ 총경

(5) 귀하의 근무경력은?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6) 순찰지구대에서 귀하의 역할은?

- ① 지구대장 ② 사무소장 ③ 민원담당관 ④ 순찰요원 ⑤ 행정관리요원

⑥ 경찰서장 ⑦ 생활안전과장

(7) 귀하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높다 ⑤ 매우 높다

13. 지역경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뒷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주민 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치안연구소에서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우리나라 지역경찰제의 정착화에 활용될 것이오니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치안연구소

(449-70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88번지 전화 : 031-285-2616)

※ 문 의 :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최 응 렬 교수 (chr134@kmu.ac.kr)

주 소 :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범경대학 경찰학부

연락처 : (집) 053-267-7800, (연구실) 053-580-5134, (HP) 011-9577-5134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곳을 골라 V표 해 주십시오.

(특별한 말이 없는 한 각 문항에 대해서 한 곳에만 V표 해 주십시오)

1. 다음은 순찰지구대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께서는 기존 파출소가 폐지되고 새롭게 순찰지구대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것 같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2)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의 순찰지구대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② 알고 있다

(3) 파출소를 폐지하고 민원담당관이라는 봉사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폐지된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변경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② 알고 있다

2.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치안여건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1) 기존 파출소 때보다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의 치안여건은 어떠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더 불안하다 ② 불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양호하다 ⑤ 매우 양호하다

(2) 귀하께서는 기존 파출소 때보다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경찰관의 순찰활동을 얼마나 자주 목격하십니까?

① 전혀 목격하지 못한다 ② 목격하지 못한다 ③ 예전과 같다

④ 목격한다 ⑤ 자주 목격한다

(3) 순찰지구대로 바뀐 후 관할지역 내의 범죄예방효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③ 별 차이가 없다

④ 대체로 효과적이다 ⑤ 매우 효과적이다

3. 다음은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효과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1) 순찰지구대로 운영된 후 112순찰신고 출동이 더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께서는 기존 파출소 때보다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사건·사고발생 후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감소되었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다음은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서비스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께서는 경찰관의 치안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께서는 경찰관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치안서비스가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다음은 귀하의 범죄두려움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께서는 기존 파출소 때보다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평소 거리를 다닐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느끼십니까?

① 매우 두렵다 ② 두렵다 ③ 보통이다 ④ 두렵지 않다 ⑤ 전혀 두렵지 않다

6. 다음은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께서는 기존 파출소 때보다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동네에서 순찰활동을 하는 경찰관과의 접촉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께서는 기존 파출소 때보다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경찰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반드시 그렇다

(3) 귀하께서는 기존 파출소 때보다 순찰지구대로 변경된 후 경찰의 이미지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귀하께서는 현재의 순찰지구대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합하지 않다 ②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적합한 편이다 ⑤ 매우 적합하다

8.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사항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공무원 ④ 자영업(서비스직) ⑤ 농어민
⑥ 생산직 ⑦ 주부 ⑧ 학생 ⑨ 기타

(4)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대재) ⑤ 대학원졸

(5) 귀하의 월수입은?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150만원
③ 150만원~200만원 ④ 200~250만원 ⑤ 250만원 이상

9. 순찰지구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2005-08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

2005년 8월 발행

2005년 8월 인쇄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88번지

인쇄처 : (주) 대한 피앤디

(TEL : (02)2268-0458)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